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북한 내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탄압
중대 사례 증언록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05년 11월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 명단

Michael Cromartie

의장

Felice D. Gaer

Nina Shea

부의장

Preeta D. Bansal

Khaled M. Abou El Fadl 박사

Charles J. Chaput 대주교(Archibishop)

Richard Land 박사

Elizabeth H. Prodromou 박사

Ricardo Ramirez 주교(Bishop)

John V. Hanford III, 대사, 직권 위원

Amb. John V. Hanford, III, *ex officio*

위원

Joseph R. Crapa

사무총장

북한 연구팀

데이빗 호크(David Hawk)

저자 및 선임연구원

원재천, 책임연구원

김병로, 공동연구원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직원

Dwight N. Bashir (정책 분석관)

Robert Blitt (법률 정책 분석관)

Patricia Carley (정책 부국장)

Catherine Cosman (수석 정책 분석관)

David Dettoni (연대사업 부국장)

Deborah DuCre (안내 담당)

Scott Flipse (동아시아 프로그램 수석 정책 분석관)

Mark Hetfield (국제 난민 문제 국장)

Carmelita Hines (행정 국장)

Anne Johnson (연락 국장)

Christy Klaassen (정부 협력 국장)

Mindy Larmore (정책 분석관)

Jacqueline A. Mitchell (사무총장 비서)

Tina Ramirez (연구 비서)

Allison Salyer (정부 협력국 비서)

Tad Stahnke (정책 부국장)

Stephen R. Snow (수석 정책 분석관)

감사의 글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 겪었던 경험과 견해를 증언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는 또 한국, 유럽, 미국의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인들과 종교 관련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오늘날 북한 내의 종교 정책과 현실을 진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 한동대학교 국제법률 대학원과 아신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언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는 말은 북한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도록 지시받는 문장이다. 북한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대한 수령’과 그의 아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말에 거의 완전히 둘러 쌓여 살고 있다. 김씨 왕조는 단순 독재가 아니다. 김씨 세습 정권은 최고 권력이자 북한 주민들의 사상, 영적 가치, 진리의 최종 판단자이다. 다른 견해와 반대 의견은 신속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탄압된다. 당사자뿐 아니라 3대에 이르는 자신의 가족까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정부의 공식 방침과 어긋나는 독립적인 종교가 살아남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서 자료들은 많지 않다. 최근에는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의 결과 북한 내의 참혹한 실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정책 담당자, 국제 사회, 그리고 인권 운동가들에게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발의로 이루어졌다. 본 위원회는 유엔 인권 선언 등 국제 규범에 확립된 종교, 신념의 자유를 감독하는 미국 정부의 독립적이고 초당적 기관으로서 대통령, 국무부, 의회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한의 종교, 신념의 자유 문제에 대해 40 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 되었다. 본 연구는 인권 전문가이자 북한 인권에 대한 획기적 저서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인 데이빗 호크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저명한 학자인 원재천 교수, 김병로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는 북한의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에 대한 준 종교적 개인 숭배 확립 과정, 현재 북한 내의 종교 활동 탄압 실상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현 김정일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신앙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북한 정부의 잔인한 인권 탄압과 공포 통치 사례에 대해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다. 강철환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평양의 어항」은 광대한 정치범수용소, 3, 4대에 걸친 가족들의 임의 구금, 강제 낙태, 상습적인 구타, 세뇌, 폭력 등에 대해 잘 증언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라는 은둔 왕국을 가리고 있었던 철의 장막은 이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점점 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광범위한 증언으로 인해 이제 그런 정보들은 과장되었으며 단지 반복한 선전 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¹

이 보고서는 탈북자의 다양한 경험을 담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난 50년 동안 종교 자유 탄압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역사적이며 비교분석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북한 정권은 그 출범 초기부터 종교 활동과 여타 사상, 신념 체계를 극렬히 탄압했다. 과거 20세기 초 북한은 다양한 종교 활동이 꽃 피었던 곳이다. 사실 종교 조직들은 반일 투쟁에 있어서 핵심 조직적 역할을 했었다. 따라서 종교 그룹들이 김일성의 노동당에 대한 주요 정치적 경쟁자로 인식되었던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김일성 집권 이후 종교인들과 그들 가족들은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혀 탄압을 받았다. 북한 내의 종교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회고하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 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당을 1958년에 모조리 잡아들여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죽어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²

김일성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뒤 북한 정부는 가족 성분과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사회를 계층화했다. 북한에 남은 종교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51개 계급 성분 중 최하층으로 분류되어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았다. 2003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층 계급 주민들은 때로 외딴 지역에 강제 추방되어 식량 지원도 받지 못하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고 한다. 그들은 반혁명적 분자로 규정되어 잔혹한 탄압과 착취를 당해야 했다.³

따라서 아주 일부의 탈북자만이 북한 내에서 종교 활동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평양 내의 일부 종교 기관들과 아주 소규모의 지하 종교 활동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 교회 활동에 대한 진술은 대체로 서로 의심하고, 탄압의 공포에 시달리고, 처형 당해 죽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독특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일성 가족의 절대적인 숭배와 주체사상의 종교화이다. 인터뷰에 응한 다수 탈북자들은 태어나서부터 김일성을

¹ 강철환, 피에르 리굴로, *The Aquariums of Pyongyang: Ten Years in the North Korean Gulag* (평양의 어항: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10년), Basic Books, 2005.

² 고태우, 「북한의 종교 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9년), pp. 79-80.

³ 이항구, “북한의 종교 탄압과 신앙 생활,” 「현실초점」 (1990년 여름호), p. 111.

송배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때문에 북한에 다른 신앙 활동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김씨 부자에 대한 개인 송배는 북한의 어떤 개인, 어떤 지역이든 예외가 없다. 학생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 대원칙’을 암기해야 하며 모든 북한 주민들은 전국에 45 만개가 될 정도로 퍼져 있는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을 매주 한번 이상 방문하여 교시를 전달받고 학습을 하며 자기 비판을 해야 한다.⁴ 강철환의 책에서는 그 악명 높은 요덕 수용소에도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이 있으며 재소자들은 누더기 옷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한 곳에 들어갈 때는 새 양말을 착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가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만약 그 초상화가 잘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훈계를 들어야 한다. 모든 정부 건물과 지하철에는 두 초상화를 걸어야 하며 모든 성인들은 김일성 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영화와 선전물에는 김씨 부자의 은덕에 의해 주민들이 잘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주시시킨다.⁵ 이 송배 정도는 너무나 철저해서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북한에 종교 활동이 허용되었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다른 종교 활동은 북한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허가한 몇 군데 종교 기관이든 아니면 지하 교회 활동이든 간에 북한 내에 종교 활동은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북한 정부는 해외 종교 단체와의 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몇몇 종교 단체를 결성했다. 두 개의 기독교회와 하나의 카톨릭 교회가 1988 년과 1992 년 사이 평양에서 문을 열었다. 아주 몇몇 탈북자들만이 이 교회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들도 이 교회들은 단지 전시용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교류를 하는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이 교회들은 북한의 신도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는 정식 카톨릭 신부는 없다. 때문에 미사가 집전될 수 없으며 성찬식도 이루어질 수 없다. 2003 년 이후 러시아 정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두 명의 북한인들이 모스크바에 보내져서 정교회 성직자로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세 개의 불교 사찰과 하나의 천도교 교당이 평양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탈북자들이 북한의 불교 사찰을 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종교 의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본 보고서는 일부 북한 주민들이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금지 정책을 어기고 있다는 흥미로운 증언을 담고 있다. 또 북한에서 전통 무속신앙의 잔재인 점을 보는 행위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몇몇 탈북자들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대규모 기아 사태 이전과 같지 않다고 한다. 북한의 기아와 경제 위기로

⁴ 김병로, “New Religious Policy and the State of Religious Freedom in North Korea,” (북한의 신종교 정책과 종교 자유의 실태, 2004 년 2 월 29 일~ 3 월 1 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북한인권시민연합 제 5 회 국제 회의 발표 논문).

⁵ Bradley K. Martin, *Under the Loving Care of the Fatherly Leader: North Korea and the Kim Dynasty*(아버이 수령의 사랑의 보살핌 안에서: 북한과 김씨 왕조), St. Martins Press, 2004 년.

인해 충성심이 많이 약화되었다. 김정일은 외국과의 접촉은 북한의 김씨 왕조의 ‘신격화’를 지탱해주고 있는 정보 통제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의 은덕과 전지전능함을 훼손하는 어떤 것이라도 억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북한 정부는 중국에서 돌아온 탈북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나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주체사상이 기독교에 의해 전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우려로 인해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성경을 소유하거나 반입하는 사람 또는 지하 교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공개 처형하는 증언을 담고 있다. 본 위원회는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일성 대학 종교학과 학생들이 국경 보위부 경비병들에게 진짜 기독교 신자와 단순 교회 예배 참가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질문지들을 만들어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탈북자들은 중국을 통하여 북한을 탈출했다. 그들이 탈북한 사유는 탄압, 기아, 빈곤에 시달렸거나 북한의 환상에서 깨어난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국경을 통한 탈북자들은 무수히 많았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아 사태가 진정되었음에도 30,000~100,000 정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의 조약에 의거하여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들을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탈북 행위를 불법이라고 간주하여 그들을 체포, 구금, 심지어 고문하고 있다. 북한에 새로 개정된 법은 단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아니면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문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다. 만약 심문 도중 외부 기독교인들과 접촉했다고 대답했을 때는 장기 강제 노동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탈북자들은 모두 경제 이주민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북한에 계속 체류할 경우 탄압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탄압 때문에 탈북하지 않았어도 이후 송환될 경우에는 바로 처벌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의 지속적인 강제 송환은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⁶ 게다가 중국의 정책은 1995년 유엔-중국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 협정은 “UNHCR 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항상 난민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⁶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는 “어떤 가맹국도 난민의 생명이나 자유가 그의 인종, 종교, 국적, 사회 단체 가입, 정견 등에 의하여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북한인권법 301조 관련 미 국무부 인구, 난민, 이민국이 발간한 보고서, 탈북 난민의 현실과 그들에 대한 미국 정부 정책(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m) 참조 (P.L. 108-333), 2005년 3월 11일.

⁷ 중국 정부와 UNHCR 간의 중국 내 UNHCR 임무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와 UNHCR 간의 협정, 1995년 12월 1일, (UN 조약 시리즈 Vol. 1899-1-32371).

본 보고서는 기본 인권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광범위한 탄압과 중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 하려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합동 대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초래한 인권 침해, 인도주의적 재앙이 한반도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핵 확산을 막기 위한 협상은 이산 가족 재결합, 납북자, 법치주의, 시장 개혁, 필요에 기초한 식량 분배, 경제 개발과 종교 자유 및 다른 인권 보장 등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핵 안보와 인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기실 이러한 인권-안보 동시 협상 외교 사례는 소련-미국 및 중국-미국 관계에서도 있어 왔다.

북한 주민들은 50 여 년 동안 사회, 경제, 정치의 실패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 동시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 고통의 정도는 아주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에 대한 조직적인 침해와 북한의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사례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 보고서는 종교 자유 문제가 어떻게 다른 인권 문제,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복잡해 보이는 북한 현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동시에 북한 내의 참혹한 인권 침해 현실을 잘 알려주고 있다.

마이클 크로마티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

목 차

PART I

조사결과	11
1. 들어가며	16
2.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	20
3. 탈북자 40 명의 체험과 의견	24
4. 탄압: 목격자 증언	44

PART II

5. 김일성 집권 이전 한국의 사상, 가치, 신념의 체계	49
6. 탄압의 시기: 세 단계에 걸친 북한 정부의 철저한 종교 탄압	61
7.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그리고 유일사상체계로의 대체	70

PART III

8. 북한의 현대 종교 정책 및 실태	78
----------------------	----

PART IV

9. 결론 및 정책 권고	90
---------------	----

부록

1. 국제 인권 기준: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국제 조약 발취	95
2. 북한 공식 문헌	103

3. 연구 자료 :	및	113
4.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대해		115

조사결과

종교 자유를 금지하는 북한의 법과 실태

-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국제 인권 조약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심각한 인권을 유린을 자행해 왔고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 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정부가 종교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68조에는 “종교는 외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 조항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헌법 67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종교 신념의 자유’ 조항과 마찬가지로, 다른 헌법 조항 가령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되고 제한 받을 수 있다.
-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사람들은 북한의 종교 자유 부재에 대한 네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 네 가지 이유들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 정부주도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종교 선전
 - 종교 활동의 금지, 때문에 면담자들 중 아무도 북한 사회 내에서 허가 받은 종교 활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 종교 활동에 연루되어 잡힌 사람들에게 대한 심각한 박해, 이는 대부분의 면담자들이 들었거나 겪은 적이 있다.
 - 주체사상, 즉 공식 국가 이념인 김일성 혁명사상 만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사상과 신념 체계라는 사실

주체사상의 제도화: 반종교 선전과 김정일 일가의 우상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3 조는 공식 사상, 신념 체계로써 주체사상의 지도적 역할을 명기해 두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승계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통합시켰다. 이 통합된 사상은 국가 유일 사상 체계로서 개인숭배의 기초이며 1945년 이전 일제 시대 천황 숭배와 비슷한 김일성에 대한 준신격화이다.

- 인터뷰 응답자들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종교를 ‘아편’에 비유하여 선전하고 있다. ‘아편’이란 단어는 인터뷰 대상자 전원이 실제로 사용한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정기적으로 종교를 혈뜯는다. 북한 사람들은 의무 출석이 강요되는 청년 모임, 정치 교육 모임 그리고 지역 사회나 직장 단위의 학습소조에서 이 반종교적 선전문구를 보고 들어야 한다. 이런 모임들은 다른 종교적 신념들이나 활동들을 배척한다. 대신 하나의 종교로써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의 원리에 대한 교양 작업을 진행한다.
-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실제로 사상 교육과 세뇌가 평생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 했다. 세뇌는 어린이가 말을 처음 익힐 때 “김일성 수령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김일성혁명사상연구소’, ‘학습당’, 또는 ‘연구실’에서 성인 의무 교육은 계속 이어진다. 이런 기관들은 김일성 일가와 그들의 정치 철학에 대한 교육과 숭배를 위한 학습 기관이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남한의 교회보다 더 ‘장엄하고’, ‘종교적이며’, ‘신성’하다고 묘사했다. 이들은 또한 공식적 ‘학습’ 이외에도 노동당이 주도하는 주간 의무 소조 학습 토론 등이 직장이나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증언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인식 또는 참여

- 대부분 응답자들은 중국으로 탈북하기 전 어떠한 종교적 활동이나 예배 장소, 종교 경전 또는 성직자들을 본 적도 없고 접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문화 유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산 속의 불교 사찰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찰에는 스님도 없었고 종교적 행사도 없었다고 한다. 몇 명의 응답자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신자였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학교에서 배운 반종교 선전이나 북한 관제 언론을 통해서 종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그 외에는 종교로 인해 공개처형 당했던 종교인들을 목격했거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종교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대안 사상 혹은 신념 체계

- 옛 무속신앙의 잔재인 ‘점 보기’ 즉,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듯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나 다른 자연 현상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북한 전역에 다시 등장했다. 점을 보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무속신앙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북한 당국이 그것을 없애기는 어렵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 고위 당국자들도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한다. 많은 탈북자들은 1990년대 중반 기아와 사회 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무속신앙의 재등장의 원인이라고 한다.

- 인터뷰 응답자 중 단지 극히 일부만이 평양에서 운영되는 세 개(곧 4 개가 된다)의 교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외 아무도 500 개의 ‘가정 교회’나 가정 예배 활동에 대해서 들었던 바도 접했던 바도 없었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이 가정 교회들이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유엔에 보고한 바 있다. 응답자 중 한 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그런 활동들이 허가되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내에 지하교회가 실재하는지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응답자들에게 북한의 지하교회나 비공식적 종교 활동을 보거나 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들 중 절반이 ‘아니오’라고 단정적으로 답했다. 그 외에 사람들도 ‘아니오’라고 답했으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종교인들 그리고 성경을 소지하는 등의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형 등의 사례를 증언했다. 단지 2 명의 응답자만이 비공개 지하 교회 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

- 두 명의 응답자는 지하 종교 활동이 발각되어 체포된 사람들의 즉결 공개처형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제공했다. 다른 응답자는 그녀의 오빠가 종교 활동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한 명의 응답자는 인민 보안성 요원으로서, 지하 종교 활동에 연루된 사람의 공개처형에 대해 들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그는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총 11 명이 체포된 두 사건과 연루되었던 적이 있다. 체포된 11 명 중 두 명은 심문과정에 죽었고, 나머지 아홉 명은 처형당한 것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외 사람들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공개 처형에 대해서 들었던 적은 있다고 언급했다.
- 수 명의 응답자는 성경이나 여타 종교 서적 소지는 구금 또는 처형당할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했다. 한 응답자는 북한으로 송환되어 감금되었을 때 자기 집에서 성경이 발견되어 잡혀 온 한 수감자를 보았다고 했다.

북-중 국경지역의 종교 박해

- 국제 인권 조약들은 ‘자국을 떠날 수 있는 자유(the freedom to leave one’s country of origin)’를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북한 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유엔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정기적으로 많은 탈북자들을 체포해서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 이는 1951 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 33 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 북송된 탈북자들은 보안원에 의해 극도로 잔인한 심문을 받은 이후에 경범죄 수준의 지방 구금 시설인 집결소로 보내진다. 그 후 소규모의 지방 단기 노동단련대로 보내진다.
- 응답자들은 종교의 접촉 여부는 탈북 조사 과정과 형벌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 응답자는 감옥에 있을 때 다른 6명의 수감자가 ‘기독교 신자’였다고 자백한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다른 응답자는 중국에서 북송된 후 계속되는 심문으로 조선족 교회에서 공부한 것을 시인했고 그래서 심하게 맞았다고 이야기했다.
- 면담에 응한 탈북자들 중 2/3 가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 된 적이 있었다. 그들 모두는 조사 과정에서 탈북 사유, 국경 탈출 경로, 중국에서의 행선지, 중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사전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 그 다음 1) 조선족 교회에 다녔는지 그리고 2) 중국에서 남한사람들(북중 국경지역에서 선행을 베풀며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 단체 활동가들)과 접촉을 했었는지를 자세하게 질문 받았다. 조선족 종교인, 특히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정치적 범죄로 간주된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중국에서 교회와 접촉한 이유로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북한 내 존재하는 종교 생활

- 1960년대까지 김일성 정권은 북한 내에서 주체사상/김일성주의를 체계화하면서 사실상 여타 모든 공식 종교 의식을 억압하고 폐지했다. 1970년대에는 변화된 국제환경 때문에, 북한 정부는 고도로 제한되고 통제된 조건 하에서 공식 종교 활동을 재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불교,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최근에는 그리스 정교까지 포함된 일련의 종교 ‘연맹(또는 협의회)’을 통해서 고도로 감시 통제된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 오늘날 북한 내 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개의 범주 안에 속해있다. 1) 공식적으로 인가된 종교 연맹에 참여하는 ‘해방 이전 구세대’ 종교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손들, 2) 공식적으로 허가된 종교 연맹에 속하지 않고 외부에서 비밀리에 예배하는 해방 이전 구종교인과 그들의 자녀들, 3) 스스로 국경을 넘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과 왕래를 통해서 종교를 받아들여 비밀리에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 이번 조사에 의하면, 비록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긴 하지만, 평양에 두 개의 기독교 교회와 하나의 천주교 성당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해방 이전 구 기독교인이거나 그들의 자식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외부에 드러내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배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 교회는

최소한 1995년부터는, 비록 정부의 감시 하에 있지만, 정기적으로 예배 활동을 해왔다. 평양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과 예배 참석자들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대기자 명단이 상당히 길다고 한다.

- 이번에 면담한 남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평양의 다섯 곳, 개성에 한 곳, 성천에 한 곳 그리고 황해남도에 한 곳을 포함해서 북한 내에 여덟 개의 공식 허가된 ‘가정 교회’를 방문했다고 한다. 이 가정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기 위해 모인 구세대 기독교인과 그들의 자녀들인 것이 확인되었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가정 교회의 숫자와 규모에 관해서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
- 북한에 로마 천주교 신부들은 없으며 성당이 하나 있지만 바티칸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도 없다.
- 남한의 천도교의 대표들은 김일성 대학교에서 종교를 연구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서 천도교의 신앙을 전파할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천도교 신자들과 ‘교당’의 수는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 많은 응답자들이 북한의 유명한 산에 있는 몇 개의 절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절들은 ‘문화 유적지’로만 보존되고 있다고 했다. 아무도 이 절이 공개적 종교행사를 위해 개방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또한 그 곳에 기거하는 스님들도 본 적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절에서 진행되는 예불, 설법, 명상 등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제 종교 연맹의 비호 하에 진행되는 종교 활동은 북한 당과 정권의 선전 기관에 불과하다. 허가 받은 종교 활동은 당국과 종교 연맹의 통제 하에서 진행된다. 종교 연맹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되어 통제를 받는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정권의 지도기관인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통제 받고 있다. 연맹 조직 안에는 연맹이 관할하지 않는 다른 신앙과 예배 활동을 허가해주는 절차나 담당 부서가 없다.
- 북한 연맹의 교회들과 남한의 교회들 간의 교류는 남북 화해를 위한 활동의 매개로 이용된다. 그러나 종교 연맹의 감독 밖에서 진행되는 북한 외부의 종교인들과 북한 사람들 간의 종교적 교류는 허가되지 않는다.

제 1 장

들어가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상당히 부족하다. 북한 안에 들어가 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인권단체들과 유엔 그리고 미국정부에 의해서도 언급되어 왔다.

북한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역자 주, 유엔 인권상설위원회는 ICCPR에 의거하여 각 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ssion)와는 다른 기구이다. 2006 년 5 월에 재구성된 UN Human Rights Council은 유엔인권이사회로 번역한다.)는 2002 년 북한은 ‘ICCPR 18 조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북한 스스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인권상설위원회는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음을 언급하면서 특정 권고사항을 집행할 것을 북한에게 통지했다.⁸

유엔의 북한인권특사는 2004 년 의사 표현 그리고 집회의 자유와 함께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북한의 6 대 ‘인권 문제’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북한인권특사는 또한 북한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과 모순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종교 자유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할만한 정보들을 입수했다고 했다.⁹

미 국무부의 2005 년 ‘국제 종교자유에 대한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정부는 언론 기자들과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게마저도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 내 종교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가 ‘최근 정보의 부족’으로 10 년에 걸쳐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그것도 “세밀한 내용은 부족하다”고 밝혔다.¹⁰

김정일 정권이 학자들과 기자들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통해 탈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북한의 여러 분야에 대한

⁸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의 최종 입장(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1 년 8 월 27 일 UN Doc. CCPR/CO/72/PRK. Para. 22.

⁹ Vitit Munta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2005/34, 2005 년 1 월 10 일, p.16, para. 58.

¹⁰ 미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에 대한 2005 년 연간보고서 북한 부분(2005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North Korea”) (www.state.gov/g/drl/rls/irf/2005/51515.htm). 1999 년 이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특별 감시 국가’로 지목했다. 이는 북한정부의 심각한 종교자유 유린 때문이다.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많은 탈북자들이 1990년대 중후반의 식량난 동안 중국으로 탈출해 남한으로 들어 왔다. 남한은 탈북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남한에는 현재 많은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본 보고서는 최근 탈북자 4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 과거의 자료들에 비해 더 의미 있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제 감시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정보와 분석 내용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더 상세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면담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정부의 대외 공식 입장과 북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관한 북한의 공식 정책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극도로 적은 수의 종교 활동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북한 인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번 증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역설하고 있다.¹¹ 그러나 사상, 양심,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정책과 실상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유엔 인권상설위원회는 “회의적이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그 평가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 인권규약에 가입하여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 취합한 정보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종교 자유 정책과 그 집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끌어올리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히 밝히고 있다.

북한 당국은 어떠한 인권 유린도 그리고 어떠한 인권 문제도 북한 내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인권 문제가 없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경 쓰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발언, 고발 등은 북한을 고립, 압박, 파괴하기 위한 선전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 활동: 개괄

유사이래 천여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사상 신념 체계를 경험해왔다. 사실 한국은 철학과 종교 사상의 고유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한국 사회와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외국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강하다.

¹¹ ICCPR의 이행에 대한 북한의 2 번째 정기 보고서. 유엔 문서(UN Doc. No. CCPR/C/prk/2000/2. para. 111)

한국에서 유지되어 온 많은 사상과 종교는 오늘날 북한의 종교와 역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물신 숭배적 무속신앙인 ‘샤머니즘’, 도교, 불교, 유교, 신유교 그리고 천주교와 중국에서 유입된 다수의 종교와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나중에 한국의 북쪽 지역은 기독교의 가장 성공적인 선교 사례가 되었다. 19세기 말경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필리핀을 제외하고 가장 기독교화된 나라였다.

한국 역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종교로서 ‘동학’ 즉 천도교가 있다. 동쪽의 학문을 뜻하는 동학은 융합 토착 종교로 ‘천상의 도’를 믿는 종교이다. 천도교는 1870년대와 1880년대에 한국 농민들을 격앙으로 몰고 갔으며 한국 현대사를 바꾼¹² 세력들을 움직였던 종교이다. 세계 1차대전이 끝난 직후 천도교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 거대한 범민족적 집회인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이 집회는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였다.

한국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다양한 사상과 종교는 평화롭게 공존했거나 심지어는 서로 다른 종교들과 합쳐지기도 했다. 불교는 천년 동안 확실한 국가 종교였으며 단일 정치 단위와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통일에 기여했다. 그에 반해 유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남편과 아내, 아이와 부모, 친구와 친구,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이론을 뒷받침 해주고 있었다.

한국은 17세기와 18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교화’된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거의 모든 한국사람들은 종교적 혹은 반종교적 신념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관계에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관습을 따르고 있다. 이런 유교적 전통은 남과 북의 공식적인 상징물에서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고대 도교와 유교의 두 철학적 상징물로서 국기를 장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보면 3개의 효(爻)¹³로 이루어진 4괘(卦)가 음과 양¹⁴을 둘러싸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은 사회주의권 국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도 공산주의 상징인 망치와 낫에 학자의 집필 붓을 더해 놓았다. 이는 북한이 철학 사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거기에다 김일성은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인 모택동과는 달리 유교의 요소를 북한의 국가 사상이자 종교인 주체사상에 접목시켰다. 반면 모택동은 문화혁명기간 중 홍위병들에 의해 분쇄되었던 ‘네 가지의 구습’들 중 하나로 유교를 공격했다.

¹² 조선 왕정은 ‘동학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 들였다. 중국의 개입은 일본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으로 군대를 보내 중국과 싸워 패배시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했다. 1910년 일본은 완전히 한국을 합병했다.

¹³ ‘괘’는 네 개의 우주적 요소 즉 하늘(왼쪽 상단), 땅(우측 하단), 불(좌측 하단), 그리고 물(우측 상단)을 상징한다.

¹⁴ 음양은 일반적으로 상반된 우주적 기운의 조화로운 균형을 일컫는다.

한국 역사의 여러 시기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상은 ‘정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을 과감하게 억압했다. 대표적 시기가 14세기 말경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조선시대였다. 이 기간 동안 성리학의 ‘정통성’을 옹호하던 사람들은 불교를 거의 완벽하게 억압했다. 불교 승려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몰수하고 절을 산 속으로 내쫓았으며, 승려의 숫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승려 학교를 폐지하며, 수도 서울에는 승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했다. 조선 말기 북경 명나라 황실에 갔던 한국사절단이 천주교로 개종해서 새로운 천주교 교리를 가지고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조선왕조의 성리학 교조주의자들은 천주교 신자들을 몇 차례에 걸쳐 대학살 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동학을 발전시킨 학자들 또한 박해하고 처형했다.

20세기 한반도에 중요하게 자리잡았던 비종교적 철학 체계 중에는 맑스-레닌주의가 있다. 이는 일본에서 유학하던 한국 학생들과 중국이나 소련에서 살았던 한국인들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맑스-레닌주의는 북한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으며, 현 북한 정권의 기본적인 정치담론을 제공하고 있다.¹⁵

김일성의 집권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은 그의 지도 하에서 고유의 사상과 신념 체계를 발전시켰다. 주체사상 혹은 김일성 혁명 사상(이 보고서에서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라고 언급했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상은 북한의 고유 사상이면서 동시에 전세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전되었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주체사상은 수년에 걸쳐서 고도로 종교화 되었고 심지어 사이비 종교적 성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면담한 몇 명의 한국 학자들은 북한은 진정한 신권체제로서 국민들에게 주체라는 ‘종교’를 강력하게 강요하는 정권이라고 묘사했다.

김일성 정권은 집권 기간 동안 주체사상/김일성주의 이외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잔혹하게 억압했다. 1960년대까지 모든 종교 활동을 폐지하고 금지한 나라로는 전세계에서 북한과 알바니아 오직 두 나라 밖에 없었다.¹⁶ 1980년대 말 수도 평양에 세 개의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도 북한은 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처형했다. 물론 국가의 지원을 받는 종교단체들은 상관 없었다. 이번에 면담했던 탈북자들 중에는 1990년대 후반기 동안 종교인들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38도선 이북의 종교 자유 실태는 이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남북한 종교인의 숫자 또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남한 인구의 대략 50%가 여러 종교들 중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 제출한 북한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인가 받은’ 5개 종교의 신자 숫자는 전체 인구의 단지 0.2%에 불과하다. 이

¹⁵ 최근 2004년 유엔의 일반 회의 장소에서도 북한 고위 외교관들은 그들의 ‘신성한 사회주의’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¹⁶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 “North Korea’s Missionary Position,” *Asia Times Online.*, 2005년 3월 16일

보고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 하에서 공식 허가된 종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극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제 2 장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기 전에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살펴 보겠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와 헌법을 통해 알 수 있다.

유엔에 제출한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ICCPR)’의 가맹국으로서 북한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 년에 북한은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 68 조에 따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인민들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 건물을 지을 자유도 있고 사적, 공적 또는 공개, 비공개로 종교 의식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종교 단체를 조직할 자유도 있고 종교를 가르칠 자유도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 단체를 조직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도 없다.....

국가는 종교 생활과 종교인들의 의식을 존중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 건물과 시설들을 건축할 수 있다. 자신들의 종교적 규범에 따라 종교 생활과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의 종교는 국가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있고,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어떤 종교도 차별 받거나 간섭 받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떤 종교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현재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회 등의 종교 단체가 존재한다.¹⁷

¹⁷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이행에 대한 북한의 2 차 정기보고서. 유엔 문서 번호CCPR/C/prk/2000/2, 2000 년 5 월 4 일, paras. 111-12, 114-15. 유엔 인권상설위원회는 ICCPR에 의거하여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추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국가 공식 종교 기관의 신자, 종교 건물, 목사와 신부의 숫자를 제시했다.¹⁸ 북한은 2천2백만 인구 중 40,000명의 신자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¹⁹ 전체 인구에 비해 왜 신자의 숫자가 작으냐는 질문에 북한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한국 전쟁 당시 죽었다. 종교를 가진 노인들은 죽어가고 있고 젊은 세대는 종교에 별 관심이 없다.....²⁰

북한 외교관은 이어 “종교는 국가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국가는 종교를 절대로 차별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²¹

이런 북한의 주장과 종교 신자 공식 통계에 대해서는 8장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

북한 헌법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북한 헌법의 다른 조항들을 보게 되면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이해된다. 실제로 이 조항들은 본 보고서에 기재된 북한의 종교에 대한 제약과 탄압이 왜 일어나는지 분명히 설명해준다.

북한이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인용한 1998년 헌법 68조에는 핵심적 구절이 빠져 있다. 5장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의 68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강조는 필자가 함)

북한은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종교 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 68조의 세 번째 문장 즉,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헌법의 ‘종교 신념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임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게다가 ‘외세’ 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등의 내용은 ICCPR

¹⁸ 북한이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의 우려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한 답변서, 유엔 문서 번호# CCPR/CO/PRK/Add.1, 2002년 8월 5일.

¹⁹ 전체 인구 대비 종교 신자의 숫자가 너무 작은 데다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보고된 다른 자료를 기초로 인권상설위원회는 북한에서 ICCPR의 종교 및 신앙 자유에 대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ICCPR/CO/72/PRK/Add.1, 2002년 5월 5일 para. 22).

²⁰ 인권상설위원회 1946차 회의 요약 보고서: DPRK, 30/10/2001. CCPR/C/SR.1946 (Summary Record).

²¹ Ibid.

아래서 종교를 제약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근거들이 아니다.²² 뿐만 아니라 68조에 명시된 자유의 범위는 국제 규범에 명시된 것에 비해 훨씬 협소하다.

한반도의 과거 역사를 생각한다면 남과 북 모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수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²³ 그러나 이 조항은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헌법에서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특히 불교, 기독교, 유교, 성리학, 심지어 맑시즘까지 한반도 내의 주요한 종교 사상은 모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동시에 68조에서 누락된 이 부분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종교 박해가 왜 일어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종교 자유에 대한 이와 같은 광범위한 헌법적 제약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의 범위 자체도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협소하다.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존중은 ‘종교 건물을 짓고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북한 헌법에 규정된 이 자유의 범위는 종교, 신앙, 예배, 설법, 교리 강의 등을 모두 허용하는 ICCPR 등 국제적 기준에 비해 상당히 협소한 것이다.²⁴

또 종교 자유에 대한 북한 헌법 조문은 인권 보장에 대한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68조에는 이 종교의 자유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granted)’된다고 되어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는 국가의 ‘허용’에 의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인정되고(recognized) 존중(respected)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북한 1998년 헌법 67조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도 상당 부분 다른 법 조항에 의해 제약 받고 있다. 가령 다음과 같다.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인민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헌법 12 조)

²² ICCPR의 18 조 3 항은 종교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오직 공공 안전, 질서, 건강, 도덕 및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한에서만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에 의한 종교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18 조 사상, 양심,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총평 22 호 (General Comment No. 22) 참조, UN Doc. CCPR/C/21/Rev.1/Add.4, 1993년 7월 30일, para. 8.

²³ 제 5 장 참조.

²⁴ 해당 국제 규범 및 기준에 대해서는 부록 1 참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헌법 41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 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헌법 42조)

이 보고서에서 면담한 탈북자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런 헌법상의 제약은 북한 헌법에 규정된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들을 사실상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제 3장

탈북자 40명의 체험과 의견

I. 인터뷰 대상자들과 연구 배경

이 보고서에는 40 명의 탈북자 인터뷰가 담겨 있다. 인터뷰 내용은 북한 내의 종교 활동, 북한 정부의 공식 이념 집행 실상 등 종교, 신념의 자유 문제에 대한 것이다.²⁵

인터뷰 대상자 중 남, 여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성별과 응답 사이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과거 직업은 가정 주부, 상인, 교사, 학생, 공장 노동자, 군인, 경찰, 건설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하급 정부 관리 등 다양하다. 그러나 직업과 응답 상의 특정 상관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73 세 1 인, 60 대 4 인, 20 대 1 인이고 대부분의 응답자는 30 대 초, 중반이었다. 탈북한 시기는 1989 년 1 인, 1996 년 2 인, 1997 년 3 인, 2003 년 3 인, 나머지는 1998 년과 2001 년 사이에 탈북한 사람이다. 하지만 탈북 시기와 응답 상의 특정 상관 관계는 없었다.²⁶

여기 기록된 증언들은 2003 년 이전의 북한 상황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그 이후에도 상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2002 년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고²⁷ 2004 년 형법 개정을 했지만 사상, 양심, 종교,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또 북한 정부도 지난 10 년간 북한의 종교 자유와 종교 활동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즉 동일한 주장과 동일한 수치들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응답한 40 명 탈북자들의 경험과 의견은, 북한 당국의 현 종교 정책이 동일하게 집행되어 온 시기 동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특이한 사실은 응답자가 평양에 거주했는지 여부가 대답의 차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²⁸ 평양에 세 개의 공식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외국인들만의 교회일 것이라 대답했고, 또 한 사람은 그 교회들은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²⁵ 이 보고서 연구 방법 관련해서는 부록 참조

²⁶ 한번 이상 탈북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다. 이들은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강제 송환된 이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4 장에 서술되어 있다. 시기별 탈북 통계는 서울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탈북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²⁷ 경제 개혁 조치는 다양한 상품 시장을 인정하고 식량 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게 현실화 시킨 것이다.

²⁸ 북한 내 여행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평양 거주는 정치 엘리트들과 고급 노동자들의 특권이다.

것이라 했으며, 다른 사람은 자신이 교회를 다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와 같은 ‘진짜 교회’는 아닐 것이라고 대답했다.

인터뷰 질문 문항

질문 문항은 북한의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의 여러 측면들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명한 개방형 질문이었다: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른 질문들은 (1) 공식 허가된 종교 의식과 활동을 본 적이 있는지 (2) 불교 경전, 성경 같은 종교 경전을 본 적이 있는지 (3) 신부, 목사, 스님 같은 종교인들을 본 적이 있는지 등이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같은 종교 기념일을 알고 있는지와 탈북하기 전 종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것이 있었는지도 질문에 포함되었다.

북한 헌법은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가 북한의 공식 국가 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주체사상은 종교에 가깝다. 때문에 공식 ‘신념 체계’로서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의 전파와 실행에 관한 질문들도 몇 있다.

다른 사상, 신념 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포함되었다. ‘지하’ 교회, 불법 비밀 종교 활동을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물어 보았다.²⁹

마지막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에 체류할 당시 종교 체험이 있는지의 질문도 있었다. 중국 당국에 체포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을 때 그런 종교 관련 경험에 대해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질의되었다.

II. 종교 자유에 대한 체험

개괄

첫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응답자들이 북한에는 종교 및 신념의 자유가 없다는 대답을 했다. 그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우선 모두 북한의 광범위한 반종교 선전에 대해 증언했다. 둘째, 아무도 북한 주민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평양의 세 교회를 알고 있는 세 탈북자들은 그 교회가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³⁰ 셋째, 모든 응답자들은 종교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형 또는 구속이라는 중벌에

²⁹ 공식 국가 종교나 사상은 국제 규범상 금지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런 국가 종교, 사상이 다른 종교를 금지 또는 차별하는가 하는 것이다.

³⁰ 한 탈북자는 봉수 교회를 알고 있었다. 그는 평양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당의 지시에 의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그 교회 예배에 나가면서 성경은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처해진다는 사실을 목격했거나 들은 적이 있었다. 넷째, 모든 탈북자들은 주체사상만이 북한 내의 유일 사상이며 공식 종교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학교, 당 뿐만 아니라, 소년단, 청년동맹 같은 국가가 조직한 청년 단체나, 학습반³¹과 같은 마을이나 공장의 성인 정치 교육 모임에서는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 가르친다. 실제 모든 응답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은 맑스의 표현이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은 그것이 김일성의 말이라고 믿고 있었다.³²

또한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 TV 에 방영된 몇몇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화 「성황당」은 종교를 ‘사악한 미신’으로 규정했다. 「최학신 일가」라는 드라마도 있다. 최씨는 가공 인물로서 일제 시대 안수를 받은 기독교 목사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고수했다. 그의 아들은 남한으로 공부하러 가서 한국 전쟁 때 미 제국주의의 스파이가 된 것으로 묘사된다. 최씨 어머니는 전쟁 중에 살해 되었고 그의 아내는 미쳐 버린다. 그의 딸은 미군에게 강간당한다. 이 드라마는 최씨가 그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그의 가족이 고통을 받는지 묘사하고 있다. 다른 반기독교적 TV 드라마로는 「어머니의 소원」이 있다.

종교에 대한 비방은 일반 언어에서도 만연해 있다. 가령 ‘예수쟁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신자를 일컫는 비속어이다. ‘중대加里’는 불교 스님에 대한 비속어이다.

응답 내용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다. “사상,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북한에 존재하는가”였다.³³ 두 가지의 약간 다른 표현을 쓴 대답이 있었지만 실제로 40 명의 탈북자는 모두 ‘없다’ 또는 더 강한 어조로 ‘불가능하다’, 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표현이 다른 두 답변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종교 자유가 없지만 사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와 “주체사상이나 김일성주의 이외의 믿음을 비밀리에 가질 수 있다.” 였다. 그러나 이 두 응답자는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상은 오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밖에 없다. 종교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종교를 믿게 되면 정치적으로 매장 당한다.”고 답변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 외부에 표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노동당을 강력 옹위하게 하기 위해 결가지들은 잘라야 한다고 말한다.”

³¹ 이 학습 모임들은 참가하는 날에 따라서 명명되었다. 가령 수요 학습, 목요 학습 등으로 말이다.

³² 이 말은 「김일성전집」 5권, 174 쪽에 나와 있다.

³³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모두 종교의 자유를 경험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질문 답변에 대한 설명 즉 북한에는 왜 종교의 자유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다양한 답변들을 통해 우리는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응답자 1: “종교는 아편으로 간주된다.”

응답자 2: “김일성사상 이외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응답자 3: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응답자 4: “김정일 독재정권이 유지되는 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신앙을 갖는 자에게는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응답자 5: “북한의 사상체계 자체가 수령유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상의 중심이 되는 철학이 주체철학인데, 그것은 김일성 중심주의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김일성이 중심이므로 그 외의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응답자 6: “북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 했었고 중국에 와서 깨달은 내용이다. 북한에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되면 김일성 신격화가 폭로되어 신격화가 무너질까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되면 지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응답자 7: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김일성의 교시에 ‘종교는 아편과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8: “북한체제 하에서 종교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탈북하기 전까지 종교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거나 들어본 바가 전혀 없다.”

응답자 9: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데, 구역마다 있는 인민반장이나 조장들로 인해 더 이상의 숨길 수 있는 것(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없다.”

응답자 10: “말을 배우면서부터 ‘김일성 원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 완전히 막혀진 틀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응답자 11: “헌법에는 허용한다고 하지만 김일성 자체가 김일성주의라는 종교이론을 내세우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10 대원칙 등으로 종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³⁴

응답자 12: “아예 종교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다.”

³⁴ 11 번 응답자는 전 국가보위부 간부이다. 부록의 ‘당의유일사상체계 10 대 원칙’ 참조

응답자 13: “북한주민은 무식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말하는 대로 순진하게 그대로 믿는다.”³⁵

응답자 14: “종교의 개념 자체가 ‘아편과 같다’, ‘인민의 사상을 마비시킨다’ 등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종교는 이미 58년 제 4차 당대회 때부터 뿌리를 뽑았기 때문이다.” (역자주: 당대회는 3차가 56년 4월, 4차가 61년 9월로 응답자는 58년 종교인에 대한 대박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응답자 15: “그 이유는 법적으로 당조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지하교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종교를 전파하는 단체나 선교사를 만나면 국가보위부에 의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응답자 16: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특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얼빠진 사람이라고 국민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응답자 17: “학교 학급시간에 반종교선전을 교육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조차 없다.”

응답자 18: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고문 등을 당한다. 사상교육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그 장벽 안에서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고 총살을 당한다.”

응답자 19: “북한전체가 하나의 종교이다. 커다란 종교의 틀이다.”

응답자 20: “김일성이 신격화되어 있고 신이 김일성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신격화한다는 의미는 김일성을 절대화 하기 위함이다.”

응답자 21: “북한에서는 종교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응답자 22: “부처나 스님도 모르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응답자 28: “종교탄압이다. 주체사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로 인하여 주체사상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응답자 29: “초등학교 때부터 김일성 사상교육을 받는다. 위에서 내려오는 각본 같은 기본 틀에서 유지된다. 자유 의사나 행동을 할 수 없다. 철두철미하게 조직되어 있고 체계적인 틀 안에서 움직인다.”³⁶

³⁵ 13번 응답자의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이다. 자기 딸에게 은밀히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다.

³⁶ 29번 응답자도 전직 국가보위부 간부이다.

응답자 30: “김일성 체제이기에 오직 혁명 사상에 대해서만 배운다. 어릴 때부터 교육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응답자 31: “법 조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나오는 항목이 있지만, 그 다음의 항목에는 탄압의 자유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종교로 인해 핍박을 당할 경우 고소할 곳이 없다.”³⁷

응답자 32: “학교 다닐 때 중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데 종교를 나쁘게 받아들이게끔 가르친다.”

응답자 34: “이 곳에서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서 교회에는 십자가를 걸어 놓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그게 없다. 공산주의, 주체사상밖에 없다. 그곳에서는 종교를 믿는 것이 최고의 범죄이며 제일 큰 제재 조치를 당한다. 종교를 믿으면 정치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응답자 35: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 민족이라 한다. 사상은 김일성 사상밖에 없으며 주체사상 외에는 허용 되지 않는다.”

응답자 36: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총알 먹는다.”

응답자 37: “정권 자체가 아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말하자면 종교는 한 개 신을 선전하는 것이다. 없는 신을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서 공산주의를 말살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교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한 조직이라고 배웠다. 군대 있을 때 종교를 믿으면 돈의 유혹에 빠지고 종교는 순진한 사람들을 꼬여내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다.”

응답자 38: “종교는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아편, 마약과 같다고 말하며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한다.”

III. 종교 활동에 대한 인지 및 참여

요약

두 번째 질문은 응답자들이 본인이 성장하거나 일한 도시나 마을에서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을 본 적이 있는지, 또 스님, 목사, 신부 또는 천도교 법사 등을 만난 적이

³⁷ 이 내용은 북한 헌법에 대한 약간의 혼동을 줄 수 있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반종교 선전을 종교 탄압과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종교 탄압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는 최근 북한 헌법에서는 제외되었다.

있는지, 또 성경, 불경 등을 본 적이 있는지,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등을 알고 있는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 질문의 대답이 ‘아니오’ 일 경우, 추가 질문으로 중국에 가기 전 종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어 보았다. 대부분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조선족이나 한국인 종교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응답은 ‘아니오’ 였다. 탈북자들은 종교 활동이나 예배 장소, 종교 관련 서적, 성직자들을 북한 내에서는 본 적이 없었다. 몇몇은 산에 문화 유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사찰이나 사당을 본 적이 있다고 했으나 스님이나 종교 의식이 거행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몇몇 탈북자들은 종교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종교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학교나 국영 매체에서 본 반종교 선전을 통해 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종교를 인지하게 된 계기가 종교 문제로 공개 처형된 사례를 목격하거나 전해 들음으로써 였다. (공개 처형을 목격한 두 사람과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의 증언은 4 장에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은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종교 활동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적이 없었다. 북한 정부가 주장하듯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산하에 존재한다는 500 여 개의 가정 예배 처소를 목격하거나 심지어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응답 내용

1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어떤 종교 활동도 본 적이 없었다.

2 번 응답자는 회령에서 어떤 교회나 절도 본 적이 없었다. 회령시 영화관이 한 때 교회 건물이었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 평양 력포구역에 살 때 무진리에 있는 절에 가본 적은 있었으나 스님은 없었고 할아버지 내외가 빈집과 우물만 남아 있는 절 터에서 청소하며 지내고 있었다.

3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무산에서도 불교, 기독교, 천도교 관련 건물이나 종교 의식을 본 적이 없다.

4 번 응답자는 할머니로부터 기독교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할머니는 크리스마스를 특별히 챙기셨다고 한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 온 초기 기독교 선교사인데 북한에서는 반기독교 선전을 위해 그를 미제의 스파이라고 비난한다.) 그녀는 또 김일성 부모가 기독교 신도라고 알고 있었다. 그녀는 종교인을 만나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소지한 죄로 처형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다.³⁸

5 번 응답자는 부모가 일본 출신이어서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1986 년 방영된 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어머니의 소원」 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북한에서 스님, 목사, 신부 등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문익환

³⁸ 자세한 내용은 4 장 참조.

목사를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³⁹ 함경남도 함흥 성천강 구역에는 천도교 예배당, 절, 교회 등은 없었다. 그는 평양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당시 존재하였던 봉수, 칠골 교회와 장충 성당 이름은 알고 있었다.⁴⁰

6 번 응답자는 1980 년대 중반 외국 영화를 통해 기독교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함경북도 온성에서는 어떤 종교 관련 시설도 보지 못했다.

7 번 응답자도 무산에는 교회나 절이 없다고 했다. 그가 종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영화 「성황당」을 통해서였다. 이 영화는 기독교를 미신이며 침략의 도구이고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는 간첩이라고 묘사했다. 북한에 있을 때 그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 사진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는 평양에 있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주교연맹, 조선기독교연맹 등을 알고 있었으나 이들은 단지 대외 활동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다.⁴¹

9 번 응답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6 살 때인 1947 년까지 교회에 다녔다. 그녀의 오빠는 목사였다. 평안북도 철산에 살았고 결혼 후 평양에 잠깐 살기도 했다. 목사인 오빠가 체포되어 함흥의 오로수용소로 갔다. 그 뒤 그녀는 평양에서 추방되어 함경북도 경성의 북창 노동 지구의 공장에서 일했다. 그녀는 한국 전쟁 전 유년 시절을 제외하고는 평양 철산이나 북창 노동 지구에서 어떤 교회나 종교 건물도 보지 못했다.

10 번 응답자는 청진 근처 문화 유적으로 지정된 절을 알고 있었다. 거기에 스님은 없었다. 교회나 목사에 대해 아는 바는 전혀 없었다.

14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온성에는 어떠한 종교 관련 시설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반종교 영화인 「성황당」과 「최학신 일가」에서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15 번 응답자는 국가보위부 간부였다. 그는 “물론 평안남도 남포나 평원군에서 목사, 신부 등 성직자나 예배당을 본 적은 없다. 법에 따르면 노동당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고 대답했다.

16 번 응답자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어떤 종교 시설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함흥에서 종교 신자들이 체포된 사실을 들은 적은 있다.

17 번 응답자는 평안북도 피현군 출신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65 세 여성이다. 1947 년까지 교회에 다녔다. 최근에 피현군에는 어떤 종교 관련 건물이나 성직자는

³⁹ 문익환 목사는 유명한 한국의 목사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1989 년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났다. 한국에 돌아온 뒤 문 목사는 한국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하에 구속되었다. 문 목사와 김일성과의 만남은 북한 TV에서 자주 방영되었고 응답자 중 여러 사람이 이를 보았다.

⁴⁰ 이 교회들에 대한 사진과 설명은 8 장 참조.

⁴¹ 실제 종교 관련 단체들의 목적은 대외 활동이다. 8 장 참조할 것.

없다고 한다. 그녀는 ‘선전실’이 과거 붉은 벽돌 교회 건물이었다고 알고 있었다. 한 때 피현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나 한국 전쟁 이후 다수가 월남했다. 남아 있던 사람들은 차별 받아서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대학에 다닐 수도 없었다.

18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무산이나 혜산에서 종교 관련 건물을 본 적이 없다. TV 를 통해 묘향산에 역사 유적으로 남아 있는 절을 본 적은 있다. 1999 년 5 월 성경을 반입한 죄로 잡힌 사람들의 처형소식을 들을 적은 있다. 그러나 직접 보지는 못했다.

19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셋별군에 살았다. 강원도 회양군에서 5 년간 군 복무를 했다. 그리고 2 년간 평양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 그는 그 어떤 곳에서도 종교 시설을 본 적이 없다. 군에 있을 때 지하 교회 연루된 혐의로 5 명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⁴²

21 번 응답자는 함경남도 고원군에서 어떤 절, 교회, 천도교 예배당을 본 적이 없다.

22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어떤 절, 교회, 천도교 예배당을 본 적이 없다.

23 번 응답자는 평안남도 선천, 개천과 강원남도 원산에서 어떤 절, 교회, 천도교 예배당을 본 적이 없다. 영화 「성황당」을 통해 종교에 대해 알았다. 성황당은 기독교, 불교를 나쁘게 묘사하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선전한 영화이다. 기독교에 목사가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을 만날 때 알게 되었다. 당시 문목사가 김일성을 만나는 것을 보고 “종교인은 우매하고 나약한 사람의 대표인데 왜 저런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9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은덕군에 절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1960 년대 초반 이후 스님은 없었기 때문에 그 곳에 불교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에 지하 교인들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30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 온성에 어떤 절, 교회, 천도교 예배당을 본 적이 없다.

34 번 응답자는 함경북도에 어떤 종교 관련 시설도 없다고 했다. 그녀는 함경북도 경성 가까운 산에서 절을 본 적이 있지만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칠보산의 검불사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37 번 응답자는 ‘문화재 형식으로 남아 있는’ 강원남도 원산의 절에 몰래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노인네들은 꽤 알고 있다. 그곳에서는 믿음이 있어도 표현 못한다.”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1987 년 군대 있을 때 황해도 강령에서 늘 지나다니던 길에 있던 집이 어느 날 헐리고 그 집 사람들은 사라졌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 사람 아버지가 기독교였다는 것이 밝혀져 온 집안이 관리소로

⁴² 자세한 내용은 4 장 참조.

갔다고 했다.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다. 탈북자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나가다가 잡혔지만 주웠다고 하면 봐주는 일도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바로 죽였다.”

IV. 국가 공식 이념

요약

북한 헌법 3 조에는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1 조에는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를 언급하고 있다. 김정일은 그의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주체사상과 ‘김일성혁명사상’이라고 알려진 김일성주의를 통합했다. 북한은 이 통합 이념을 유일 사상 체계로 선전했다.⁴³ 탈북자들은 이 이념을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사상신념 체계이자, 1945년 이전 일본의 ‘천황 숭배’와 비슷한 김일성에 대한 준신격화로 이해하고 있다.⁴⁴

인터뷰에는 응답자의 주체사상/김일성주의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실제 모든 응답자들은 평생에 걸쳐 사상 교육과 세뇌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세뇌는 아이들이 말을 깨치기 시작할 때 “아버지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는 말을 배움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직장이나 김일성혁명사상연구소, 학습당, 또는 연구실 같은 준종교적 기관에서 강제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응답자들 답변 중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응답자들이 이념 교육 모임에 서로 다른 요일에 참가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연구실을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⁴⁵ 또 꼭 참가해야 되는 날짜 수에도 차이가 좀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공통적인 것은 이 장소들이 일반적인 사회 교육 목적을 넘어 신격화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또 공식적인 학습은 여러 형태의 노동당 통제가 수반되었고 교육 활동 특히 노동당이 지도하는 소모임 토론은 직장이나 마을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런 모임은 ‘생활 총화’ 그리고 ‘호상 비판’이라 불렀으며 이 모임을 통해 혁명 사상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줬다.

응답 내용

다음 답변은 주체사상/김일성주의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응답자 2: “‘김일성혁명 학습관’은 종교시설과 같은 분위기이다. 의무적으로 가야만 한다..... 여기 빠지면 안 된다. 화요일 학습 모임, 수요일 강연회, 금요일 생활 총화가 있다. 주체사상을 문답식으로 시험을 보기도 한다.”

⁴³ 자세한 사항은 7장 참조.

⁴⁴ 김일성 신격화에 대한 일례로서 이 보고서 부록에 있는 북한 헌법 전문을 참조할 것.

⁴⁵ 사상연구소, 학습당 같은 용어도 있다.

응답자 3: “주체사상과 김일성 혁명 사상에 대해 학습당(김일성혁명사상 연구실)에서 이뤄진 화요 학습, 직장에서의 목요 강연회, 매주 금요일 직장의 작업반에서 이루어진 생활총화를 통해 배웠다.”

응답자 5: “각 구역에서 수요일마다 ‘김일성 혁명역사 사상연구실’에 가서 주체사상에 대해 배웠다(수요학습)...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면 이 때부터 인사말로 ‘김일성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자란다. 김일성 부자 외에는 듣는 바가 없는 시스템 하에서 성장하기에 그 외의 것은 들어올 여지가 없다.”

응답자 6: “가정주부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낮 시간에 참석하였다... 그 시간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참가한다. 장소는 온성군 주원탄광의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이다. 그곳의 분위기는 도서관은 아니며 매우 숭엄하고 신성한 곳으로 종교적 전당이다. 떠들어서도 안되며 엄숙한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 아침 새벽에 일찍 김일성동상이나 구호판, 유화(그림) 등을 청소하러 나가고 꽃다발을 가져다 놓기도 한다.

김일성동지혁명사상 학습실에도 꽃다발을 가져다 놓는다. 또 혁명사상연구실을 청소하기 위한 걸레를 만들어 바치기도 한다. 또 김일성 초상화를 닦거나 책, 사진 등을 깨끗하게 닦는 일도 충성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김일성주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주의한다. 불만을 표시했다가는 아무도 모르게 없어진다.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앞에 세워 놓고 사상비판을 제기한다...

또 왕재산 혁명 사적관이란 곳이 있다. 온성읍에서 3-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명절 때마다 그 곳을 방문해야 한다. 설, 2.16, 4.15, 7.8(김일성 서거일), 9.9, 10.10 등 1년에 6번 참가해야 한다.”

응답자 11: “김일성 자체가 김일성주의라는 종교이론을 내세우면서 당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 등으로 종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무산에는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연구실’이 있다. 종교적인 전당과 같다. 들어갈 때부터 엄숙하게 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 갈 때는 정장차림의 깨끗한 옷을 입고 신발에 흙이 묻어서는 안 되고 안에 들어가 떠들어서도 안 된다... 초상화를 닦는 걸레, 비누 등을 보관하는 청소 도구함을 ‘정성함’이라고 부르며 연구실 정면 벽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있고 앞 단상에는 석고상이 놓여있다. 또한 삼면 벽에는 김일성의 어린 시절부터의 사진과 그림들이 걸려있다. 주 1회 정도 모여 주로 강연을 듣고 때로 토론을 할 때도 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김일성만을 생각하고 김일성에게만 충성해야 한다. 새벽마다 말씀단(돌비), 만수 무강탑, 동상 등을 닦고 김일성 사망 시에는 온밤을 동상 옆에서 추모하기도 했다.”

응답자 14: “농촌에는 농민들이 학습하는 ‘혁명사상연구실’이 있다. 철도 노동자와 광산 노동자를 위한 철도혁명사상연구실, 광산혁명사상연구실 등은 따로 있다. 일 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공부하는데 시간은 화, 목 저녁 5:30-7:00이다. 학습내용은 주로 ‘주체사상에 대해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청년들은 주체혁명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자’ 등 김일성, 김정일 문집 등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답을 불러주고 베껴 쓰게 한다. 그리고 두 주나 한 달에 한번 정도 작업반, 초급단체 등에서 문답식 경연을 한다. 당 규약 1 조 1 항에 위대한 김일성 수령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충성으로 우러러 모셔야 한다는 내용은 죽을 때까지, 살아도 죽어도 모셔야 된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석고상, 동상, 초상화를 정중히 모셔야 된다고 되어 있다.”

“나는 주체사상이 폐쇄적이다, 억압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해봤다. 그것이 응당하다고 믿은 것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것을 수령님이 창시했다라고 믿으면서 진짜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1년 동안 의무교육 받으며 철 따라 추울 때면 옷을 주시는 배려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김일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정말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큼 슬펐다. 아마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도 다 그럴 것이다.

자랄 때부터 세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김일성으로 인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다고 배웠고 부모와 환경을 통해 그렇게 믿게 되었다. 갓난 아이 때에도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배웠다. 또 앉았다 일어나도, 어디를 가도 김일성 원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응답자 18: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 연구실에 자주 갔다. 가기 싫어도 일 주일 또는 이 주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간다. 혼자서는 자유롭게 갈 수 없다. 종교적인 전당처럼 정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가야 한다. 경배하는 자세로 의상도 단정히 하고 신발 벗고 덧버선을 신고 ‘김일성 동지 학습론’이란 책을 들고 간다. 벽마다 김일성 혁명 내용의 액자를 붙여 놓았고, 앞에 있는 김일성 동상과 초상화에 돌아가면서 먼저 인사한다. 학교, 공장마다 다 있고 규모는 다 다르다.”

“김일성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무조건 복종하고 의무적으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반동으로 몰리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비판 대상이 된다. 참가 안 했을 때, ‘왜 안 나왔습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라며 질문한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은 1) 강연회시 질문 할 때 대답을 잘하고, 2)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3) 장군을 흠모하는 노래를 부르고, 잘 나서서 동원하고, 4) 새벽에 사적지를 참배하고 청소한다.

집에서 혁명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중/고)다닐 때 그 지역 제지공장에 김일성 부자의 현지도 사적비가 세워져 동네 친구들까지 ‘장군님 가셨던 길’을 쓸고 사적비에 꽃다발도 드리고 비오면 닦았다.

응답자 19: “각 리마다 김일성주의 관련 공부하는 곳이 하나씩 있다. 전국적으로 약 3 만개 정도는 될 것이다. 학습실, 연구실, 선전실이 있다. 학습실은 월요학습과 화요학습을 하고, 연구실은 수요일과 금요일 모이며, 주간총화를 한다.”

“주체사상은 중 2 부터 배운다. ‘주체철학’이라는 과목이다. 주체가 문제가 되어서 북조선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당 간부들의 부패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의 어려움이 생겼다. 나는 탈북하기 전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단지 당간부들의 비리가 문제가 되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욕 먹인다고 생각했다.”

응답자 20: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 연구실이 있다. 예배당 같은 느낌이다. 김일성 훈시실도 있다. 그 곳은 시와 군에서 김일성이 태어난 것 등 김일성에 관한 일체를 가르친다. 종교적인 장소같이 엄숙한 분위기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정당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이며 자기가 개척한다라는 것을 들어보면 당연하다고 믿는다. 다른 사상은 전하지 않으므로 철학도 김일성 사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김일성주의는 종교적인 시스템을 대신한 것 같다. 김일성주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주체사상회의나 수요일 총화 등에 열심히 참석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반감을 가진 성분은 있을 수가 없다. 북한의 기아와 빈곤의 문제는 이념 문제를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다. 북한사람들은 이념을 걸어로 이야기는 하지 못해도 지금은 반감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다.”

응답자 21: “김일성 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허용된 적은 없다. 모두 따라야 했다.”

응답자 23: “수시로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는 곳마다 김일성 주의를 가르쳤다. 인민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씩 주체사상에 대해서 배운다. 중학교 때 김일성 혁명역사를 배우고 대학 때 집중적으로 자세히 배운다. 우리는 말꼭지 뿔 때부터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배운다. 이것을 잘 하도록 부모들이 가르친다.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매일 닦고 초상화를 보며 위대한 수령이라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세뇌되었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김일성이고, 김정일이며, 당이었다.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음을 배웠다. 첫째는 육체적 생명이고, 둘째는 정치적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은 부모에게서, 정치적 생명은 수령과 당과 더불어 영원하다고 배웠다. 그래서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나의 참다운 삶을 믿었다.”

“해당기관마다 김일성 연구실이 있는데 원래 출근 시간은 8시 30 분이지만 빨리 가는 사람은 매일 아침 6 시까지 가서 연구실 청소를 하곤 했다. 이것을 ‘정성사업’이라고 부르는데 부서, 과마다 매일 돌아가면서 담당이 맡겨진 사람들이 가서 청소를 했다. 방, 책상, 사진을 닦고 했는데 당번이 아니지만 스스로 찾아가서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때는 부서에서 할당이 안 된 연구실 주변이나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눈이 오면 먼저 와서 치우고 일찍 출근해서 사진(초상화)을 닦고 했다.”

응답자 30: “‘김일성 연구실’이라고 공장, 기업소마다 있다...도서관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깨끗하게 입고 들어가야 했고 떠들면 안 된다. 특히 일하는 곳에서 여자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했다. 공장, 기업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는데 무조건 가야 했다. 공장 바로 옆에 있었기에 1-2시간 정도 배우고 바로 일하러 가곤 했다. 학교에도 있었는데 5-6 살 유치원 다닐 때 집 안에 걸려있던 사진(초상화)을 보고 부모님 앞에서 설명했던 기억도 난다... 보통의 북한 사람들은 집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걸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사진은 김일성이 ‘신’이고 그 분을 의지하자는 목적으로 걸어놓는다.”

응답자 31: “‘혁명역사연구실’이라는 곳이 있었다. 북한의 학교와 직장 안에도 이러한 장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남한의 교회보다도 더 거룩하다...”

응답자 34: “우리 기업소에는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이 있다.’ 단체로 간다. 기업소에서 학습하러 가는 날이 있다. 그때는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서는 떠들어서는 안 된다. 강의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받아 쓰기도 한다.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이다.”

응답자 35: “매 군, 도, 시, 리까지 ‘김일성동지 연구실’ ‘김일성혁명사상 연구실’ 등으로 불리는 곳이 다 있다. 강요되어 의무적으로 가게 된다. 날짜 시간을 정해놓고 주 1회 이상 가는데 안 가면 안 된다... 그 곳은 엄숙한 분위기이다, 정숙해야 하고 교회에 가면 기도하는 시간처럼 조용해야 한다. 옷차림도 단정해야 되고 여자는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하며 남자는 양복을 입어야 한다. 또한 왼쪽 가슴에는 김일성 초상화를 모시고 가야 한다.”

“김일성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마음 속으로는 가능하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들은 결가지는 처야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조선노동당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결가지를 처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상이 싹을 내지 못하게 해야 조선노동당이 굳건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사진을 걸어야 한다. 가정이라고 생기면 다 걸어야 한다. 세대가 생기면 당에서 알아서 내준다. 초상화만 있어야 하며 가장 바른 벽에 걸어야 하고 제일 정숙한 곳에 모셔야 한다... 충성심이 높은 집에서는 초상화에 대고 개인 집에서도 인사한다.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데도 인사한다...

동상에 꽃을 들고 간다거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러 간다. 초상화는 잘 닦아야 하는데 초상화를 닦는 걸레 등이 담겨있는 보유함이라는 것이 있다. 그 보유함에는 벨벳으로 만든 걸레, 향수, 세수비누, 솔 등이 들어 있는데 향수는 검열 나올 때 정도만 사용한다...”

응답자 36: “송림은 제철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몇 백 차례 방문하여 사적관이 많았다. 그곳은 사상교육, 암송, 통달하는 곳이다... 주체사상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강제법이다. 대형 초상화 앞에서는 설날이나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꽃다발을 바치고 인사를 한다. 눈이 오면 쓸고, 꽃다발을 가져다 놓는다. 유화로 된 초상화 옆구리가 퇴색되면, 자발적으로 칠도 하고 역사관 앞 잔디밭의 풀을 뽑기도 한다.”

응답자 37: “강원도 원산에는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이 있다. 의무적이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간다. 성당 같은 느낌이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가야 하며, 몸가짐도 단정해야 하고, 그 안에서는 담배도 못 피운다. 들어 갈 때는 반드시 신발도 벗어야 하고 그곳에서는 농담도 하면 안 된다. 성당보다 더한 경건한 느낌이다. 당책임자가 김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찬송가 부르듯이 노래도 부르는데 처음에 부르는 노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이다. 또 끝날 때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끝난다.”

“주체사상 외의 다른 어떤 사상도 허용 될 수 없다. 말하자면 주체사상이 종교인 것이다.”

V. 사상 및 신앙의 대안 체제

샤머니즘 잔재의 광범위한 재출현

요약

이 문항에서의 질문들은 주체사상/김일성주의 이외 다른 비공식적 사상 및 신앙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응답자들이 샤머니즘의 잔재인 고대 아시아의 무속신앙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다.⁴⁶ 여러 탈북자들은 점 보는 행위가 다시 성행하고 있음을 증언했다. 점을 본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운명은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별들이나 다른 자연 현상에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사람의 운명은 특정한 힘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알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몇몇 탈북자들은 궁합을 포함하여 점 보는 것을 무당과 연관시켜 이해했다. 점 보는 것은 북한에서는 심심풀이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또 값이 싸지도 않다. 점 치는 것은 대개 아무 가구도 없는 빈 방에 물 한 사발 떠놓고 행해진다. 점쟁이는 점 보는 사람과 가족들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몸을 흔들기도 한다. 점 케를 내오기 전에 말이다. 점쟁이는 복채로 가축이나 쌀, 또는 현금을 받는데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도 한다.

⁴⁶ 한국의 무속신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5장 참조.

이런 점 보는 행위는 불법이다.⁴⁷ 그러나 모든 탈북자들은 점 보는 행위가 만연해 있어서 북한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 정부 관리들도 점을 본다고 한다. 많은 탈북자들은 점집이 성행한 것은 90년대 중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사회 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진 이후라고 한다. 응답자들 중 다수가 점집을 직접 가본 적이 있으며 점 보는 행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했다.

응답 내용

응답자 3: “12살 때 점쟁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가본 적이 있는데... 방 안에 아무 것도 없이 사람만 있었다. 점집을 차려서 발각이 되면 처벌을 받으므로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고위급 간부들이 자기 앞날에 대해 알고자 점집에 자주 간다고 들었다.”

응답자 5: “점집을 직접 다녀본 적은 없으나 어머니가 다녀오신 적은 있다. 북한 간부 계층의 안주인들이 점을 보러 갔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렸다. 사회 형편이 악화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 같다.”

응답자 6: “함경북도 경성(옛 주을)에 ‘신 업었다’고 하는 24살 된 여자가 있었다. 19살 때 신이 내렸다고 하는데, 내가 장사하다가 잡히게 될 것을 신기하게도 맞추었다. 또 온성읍에 사는 40대 남자도 ‘신 업었다’는 사람이 있었다. 중국으로 탈출하기 전, 이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았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여 탈북했다... 궁합이나 점보는 행위가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묵인된다. 국가보위부 사람들도 수사를 진행하다가 막히게 되면 이 ‘신 업은 사람’을 써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한다.”

응답자 7: “사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따라서 손금, 운세 등 미신을 많이 믿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응답자 8: “북한의 점집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본인이 살던 곳은 1000가호 정도가 있었는데 점집이 두 집정도 있었다.”

응답자 9: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사람들이 점을 보러 많이 갔다. 점집에는 한국에서 온 사주팔자 책이 놓여 있었다.”

응답자 10: “합법적으로 허용은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간다. 언니가 미신을 믿어서 점을 치러 다니곤 했다.”

⁴⁷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자는 한 탈북 여성을 인터뷰했다. 그 여성은 점 본 것 때문에 처벌, 수감된 적이 있었다. 그녀의 주된 처벌 사유는 한국 노래를 불러 ‘사회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고 점을 본 것은 추가 처벌 사유였다.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영문, pp 46-48. 참조

응답자 12: “자유롭게 허용되지는 않지만 엄격하지도 않다. 동네에도 점치는 할머니가 한 분계셨다.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뜸도 뜨고 침도 놓으면서 치료도 해주었다.”

응답자 13: “무당과 점집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합법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그냥 혼만 나고 나온다.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

응답자 15: “점 치는 행위는 성행하고 있다. 물론 몰래 몰래 한다. 점을 치다가 들키면 욕을 먹고 잡혀가기도 한다. 자신도 생활이 어려울 때 가 본 적이 있고 호기심에서 간 적도 있다.”

응답자 19: “우리 동네에 점쟁이가 있었다. 나이는 50 대로 여자였다. 점쟁이한테 갈 때 돈 300 원이나 쌀 등을 가지고 간다. 점쟁이 집에 들어서니 그 여자는 조그마한 상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왜 왔냐고 묻고 가족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다수 맞았다.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 여자가 풍을 만난 것처럼 막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이트 목소리였다. 그리고는 손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면서 쌀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쌀을 던지는 데 그 쌀이 종자 같은 곳에 꽂히기도 하였다. 15-20 분 정도 지난 후 깨어나더니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다. 자기 손이 아닌 것 같았다. 붓에 물을 찍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붓이 지나는 자리에 색깔이 나오더니 색이 있는 글이 적혀 나왔다. 내 생각에는 97-98 년까지 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점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응답자 28: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검열이 완화되었다.”

응답자 32: “점집은 불법이다. 걸리면 처벌을 받긴 하지만 미신사상 정도로 취급을 받고 기독교보다는 처벌의 수준이 낮다.”

응답자 34: “국가에서는 점집을 못하게 한다. 하지만 다 한다. 간부들까지도 다 점집에 다닌다.”

응답자 35: “관상은 많이 본다. 이곳에서는 무당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신을 업었다’라고도 말한다.”

응답자 36: “법적으로는 잡아간다고 하지만, 당 기관이나 군인, 경찰들도 다 차 타고 찾아간다. 2Km 정도만 움직이면 점집을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이 20 대 때 점을 보러 간 일이 있는데 타향에서 성공할 관상이라고 했다.”

비공식 지하 교회의 재출현: 엇갈리는 반응

요약

지하 기독교인 출현에 대한 응답자들의 정보는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다. 외부의 사람들은 북한 내 광범위한 지하 교회 운동이 있다고 한다. 북-중 국경 지대의 한국인 그리고 조선족 선교사들이 적극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기독교로 개종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에게 자신들이 북한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떤 종류이든 간에 지하 교회 활동을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이 주어졌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평양에 있는 세 교회(조만간 네 교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중 아무도 북한 정부가 인가한 500 개의 ‘가정 예배 처소’를 본 사람은 없다.⁴⁸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그런 가정 예배 처소를 정부가 허용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본 연구 기간 동안 획득한 정보만으로는 북한에 광범위한 지하교회가 존재하는지 입증하기는 어렵다. 탈북자의 반 이상은 북한의 지하교회나 비밀리에 진행되는 비공식 종교활동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탈북자들도 “없다”고 대답했으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종교신자들에 대한 처형 혹은 성경소지와 같은 종교활동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비공식 지하 교회를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사람은 탈북 후 중국에서 기독교를 영접한 뒤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전 국가보위부 간부로서 불법 종교인들을 색출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이다. 이런 응답은 비공식 종교 활동이 존재하며 동시에 북한 당국이 그것을 탄압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다음 내용은 “지하교회” 종교 활동에 대해 “본적 없다”고 대답했으나 허가받지 않은 종교 행위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한 답변이다.

응답 내용

4 번 응답자는 지하 교회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1997 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두 사람이 공개 처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⁴⁹

9 번 응답자는 어린 시절 1947 년까지 교회를 다녔고 오빠가 목사였다. 1998 년 한 때 회령의 지하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일은 조선족 선교사가 사업차 회령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지하 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10 번 응답자는 또 다른 북-중 국경 도시인 무산 출신이다. 어떤 지하 교회나 비공식적 교회 활동을 알고 있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경을 중국에서 가지고

⁴⁸ 8 장 참조.

⁴⁹ 이 공개 처형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은 4 장 참조

들어왔고 그 성경을 자기 집 이불 밑에서 몰래 읽었다. 그녀는 한국의 기독교 방송을 들었고 언니와 언니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다.

11 번 응답자는 전 국가 보위부 간부였다. 그는 ‘북한에 기독교 선교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만나본 적은 없다고 했다.

13 번 응답자는 한국 전쟁 전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은 함흥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보았다. 함흥은 전쟁 후 한국으로 넘어 간 기독교 집안들이 많았다.

15 번 응답자는 전직 군인이다. 지하 교회를 알지 못했으나 국가보위부의 친구로부터 1997 년 기독교 신도들에 대한 공개 처형이 있었음을 들었다.

16 번 응답자는 60 대의 여성이고 함흥 출신이다. 그 지역에는 8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다 모이지는 못하고 3-4 명씩 모여 예배를 드리곤 했다고 한다.

17 번 응답자는 평안남도 남포 출신이다. 어머니가 기독교인으로 1947 년까지 교회에 다녔다. 성경책도 있었다. 그의 친구는 신의주 부근 피현군에 살고 있었는데 소형라디오를 가지고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와서 설교내용과 찬송을 알려주곤 했다.

18 번 응답자는 무산군 출신으로 전쟁 전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녔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가져다 준 성경으로 친척 두 사람과 함께 몰래 예배를 보았다. 이 응답자는 압록강 근처 도시인 혜산에서도 살았는데 1999 년 5 월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된 두 사람을 알고 있었다.

19 번 응답자는 군 복무 중 우연히 지하 교회 신자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조사 후 25 명이 체포되었고 5 명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1996 년 12 월 20 일 남포 북쪽 지역에서 공개 처형 당했다.⁵⁰

22 번 응답자는 탈북한 뒤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어 2002 년 함흥에 수용되었다. 중국에 있는 동안 미화 700 달러에 조선족 남자에게 인신 매매 되었다. 그녀는 조직적인 예배활동을 본 적은 없지만 감옥에서 한 60 대의 ‘미친 여자’가 살려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온성군 남양 출신의 또 다른 죄수는 집에서 성경이 발견되는 바람에 일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32 번 응답자는 무산 출신으로 12 명과 함께 지하 교회에 참석했다. 모두 친척들이었는데 중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함께 하곤 했다.

VI. 결론

⁵⁰ 이 공개 처형에 대한 증언 내용은 4 장 참조

북한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탈북자 40 명의 증언은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개인적, 집단적, 사적, 공적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활동을 불허하고 엄격히 탄압한다. 또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종교와 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음을 증언했다. 동시에 북한은 유일한 사상이자, 종교로써 주체사상/김일성주의에 충실할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히 요구해 왔다.

제 4 장

탄압: 목격자 증언

이 장은 (1) 국가 공인 종교 연맹의 범위 밖에 있는 비공식 종교 활동으로 인한 처벌 또는 처형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⁵¹ (2) 중국에 있는 동안 종교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

I. 기독교인에 대한 공개 처형

이 보고서 인터뷰 중에 북한의 종교 탄압에 여러 증언들이 나왔다. 두 탈북자는 처음에는 자세히 설명을 안했지만 종교 때문에 공개 처형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다른 한 여성 탈북자는 자기 오빠가 처형되었다고 했다. 네 번째 응답자는 신앙 때문에 공개 처형된 두 사람의 이름을 증언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종교 관련 공개 처형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도 있다.

관리소나 교화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아느냐는 질문에 4 번째 응답자는 “모른다. 하지만 딸이 옷을 빨다가 성경을 흘리는 바람에 그 딸과 아버지가 공개 처형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목사, 신부, 천도교 법사 등 성직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9 번 응답자는 말했다. “아니오, 성직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 한 사람, 전도사 두 사람, 장로 두 사람이 공개 처형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을 다시 방문한 길에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탈북자들을 재 인터뷰 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성경 소지죄로 인한 공개 처형, 함경북도 무산 1997 년 여름

공개 처형에 대한 증언은 아주 생생했다.⁵² 20 대의 젊은 여성이 빨래를 하다가 품속에서 작은 성경책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주위에 있던 아줌마 한 분이 보고 신고를 해서 바로 잡혀갔다. 4 번 응답자에 따르면 그 신고한 사람은 그 책이 성경이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의심스런 행동은 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젊은 여성과 60 대 정도된 그녀의 아버지는 국가 보위부에 의해 체포되어 3 개월 동안 구금 되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조사, 심문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공개처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1997 년 어느 여름 아침 두만강 지류인 성천강 가로 끌려 갔다. 두 사람의 죄목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과 국가와 수령에 대한 반역이었다. 증언자는 약식

⁵¹ 북한 정부가 만든 종교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 장 참조.

⁵² 네 번째 응답자는 종교와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두 공개처형을 목격했다. 하나는 1995 년인 데 유독 끔찍했다. 다른 하나는 1999 년이다. 그녀는 처형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97 년에 공개 처형된 아버지와 딸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다.

인민 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의 판결 내용과 죄명 이외의 재판 절차는 없었다고 한다. 약식 재판은 죄명 낭독과 판결이 간단히 이루어지고 바로 처형이 집행된다.

초(4학년 이상), 중, 고등학교 학생, 교사들, 주변 시장 상인들이 처형장에 모였다. 7명의 사격수가 처형장 말뚝에 묶여 있는 두 사람에게 각각 세 발씩 발사한다. 15미터 전방에서 발사된 총알의 위력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튀고 뇌가 튀어져 나온다. 증인은 다섯째 줄에 있었다. 그녀는 처형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해 냈다.

기독교인 5명 공개 처형, 평안남도 용강군(남포 근처) 1996년 11월 20일

이 처형은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성이 아니라 군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특이하다. 19번 응답자가 보위사령부에 있을 때 사령부 내의 하전사들이 평양-남포 사이의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투입되었다. 포크레인으로 8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였다. 용강군 용강읍의 집들을 헐고 가로수들을 칠 때였는데, 어느 한 건물의 지하실을 부수는 과정에서 벽돌사이에 감추어 놓은 성경책과 작은 노트 한권이 발견되었다. 그 노트에는 목사 1명, 전도사 2명, 장로 2명과 20명의 신도를 포함하여 25명의 지하교회 교인의 이름과 직업이 적혀 있었다.

군인들은 그 성경과 노트를 노동당 15호실 현지 분소로 넘겼다. 그러나 당에서는 이 문제는 보위사령부 기관원에서 조사하라고 맡겼다. 노트에 있던 25명은 영장 없이 군 보위부에 의해 잡혀왔다. 증언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정당한 사법 절차도 없이 잡혀 왔다고 했다.

1996년 11월 이 25명은 도로 건설 현장으로 끌려 왔다. 이들을 죽일 때 네 겹으로 주위를 쌓아서 외부인들은 보지 못하게 하였다. 처형된 목사, 전도사, 장로 5명 모두는 손과 발이 묶여 로울러 앞에 누워 있게 했다. 이 로울러는 일제인데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20명은 옆에서 보게 하였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스파이와 체제 전복에 가담한 죄명이 붙었다. 그럼에도 보위부 사람이 엮드린 5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수령님을 따르겠느냐? 수령님을 따르겠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5명 모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총을 머리에 대고 사살하고 옆에 있던 로울러 기계로 다섯 명을 깔아뭉갠다. 몇몇 신도들은 뼈가 튀는 소리가 나고 그 다섯 명이 압사되는 장면을 보면서 소리 내어 울고 기절하였다.

19번 응답자는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을 보며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오직 종교에 대해서는 아편이라고 생각했고, 제 목숨이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중에 20명을 압송한 동료 군인들로부터 그들은 함남 요덕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1999-2000년 은성군 탄압 사건

전 국가보위부 요원은 1999년 함경북도에서 종교인들을 소탕한 일들을 증언했다. 그는 온성에서 세 사람의 여성을 체포한 적이 있다. 그 중 두 사람은 심문 중에 죽었고 다른 사람은 비공개리에 처형되었다. 그는 동관 탄광에서 8명을 체포한 적도 있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경찰 기록과 성분⁵³분류 상 종교 신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들 8명은 체제 불평 불만 죄로 기소되었다. 이 국가보위부 요원에 따르면 8명에 대한 증거는 무척 빈약했다고 했다. 국가보위부가 그들의 범죄 사실을 과장한 것이다. 그들은 지방 안전부에 의해 처형당했다.

II.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종교 탄압

국제 인권 관련 협정 등에는 자국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북한 형법 위반이다.⁵⁴ 중국에서 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 내의 탈북자는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북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난민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북한에 남아 있을 경우 박해를 받을 상당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후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서 처음에는 박해 때문에 도주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경찰은 정기적으로 탈북자를 대거 검거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는 ‘난민지위에 대한 1951년 협정 33조’ 위반이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을 탈출하는 것 자체가 남한으로의 망명을 의도한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는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나 중범 교도소인 교화소에 수감되었다. 기아가 절정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도주해 나와 식량과 일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가족들을 기아에서 구하기 위해 돈을 벌어서 송금을 했다. 중국의 탈북자들은 동북 3성에 살고 있는 2백만 조선족 사회에서 조용히 살고자 했다. 그러나 체포와 송환은 계속 증가했다. 송환된 탈북자들은 심한 취조를 받은 뒤 경범죄 수용 시설인 집결소나 단기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해지는 노동 단련대에 수용되었다.⁵⁵

북으로 송환된 이후 취조, 수감 과정을 겪은 탈북자들은 말한다. 그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낙인”이 찍혀서 북한에서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말이다. 그들은 북한을 두 번 세 번 탈출하여 종종 한국으로 향하기도 한다.

⁵³ 성분이란 북한의 대를 이어 내려오는 계급 제도이다.

⁵⁴ ‘세계인권선언 13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CPR) 12조 2항’.

⁵⁵ 중국의 북한 난민 실상과 송환된 뒤의 처벌에 대해서는 휴먼 라이츠 와치(Human Rights Watch), 「보이지 않는 탈출: 중국내의 탈북자」(*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uman Rights Watch, 2002)와 「감춰진 수용소」(미국 북한인권위원회, 2003) 참조; 가장 최근 자료로는 *Acts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in China* (Refugees International, 2005) 참조.

여기 인터뷰한 탈북자 중 2/3 는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공안에 붙잡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경험이 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 문제는 취조와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모든 탈북자는 처음엔 어떻게 탈출했느냐, 어디서 국경을 건넜느냐, 중국에서는 어디를 갔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서 (1) 조선족 교회에 가본 적이 있는지,⁵⁶ (2) 중국에서 남한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중국에 있는 남한 사람들 중 일부는 종교 단체에서 파견하여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⁵⁷

조선족 기독교인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정치 범죄로 간주된다. 이제 탈북자들 중 조선족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국경의 몇몇 지역에서는 이를 더 이상 추가 처벌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말하는 탈북자들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응답자들은 중국에서 교회에 간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증언했다.

응답 내용

14 번 응답자는 2001 년 온성 보위부에서 심문 받은 과정을 진술했다. “보위부 반탐국장(방첩과)은 나와 거기 있던 68 명에게 ‘하나님의 사도들은 일어나라’고 했다. 68 명이 다 일어나야 하는데 8 명 정도가 일어났다. 그 사람들은 엄격하게 취급하여 바로 끌려가 관리소에 갔다. 계호원이 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아까 그 놈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저기 가서 총 맞았어 총’이라고 해서 다 총살된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성 장생관리소에 갔다고 한다.”⁵⁸ 14 번 응답자 본인은 잠도 안 채우고 밥도 안 주면서 7 일 취조 받았다. “손이 떨릴 정도로 계속 자술서를 썼다. 그는 종교를 포기하고 당에 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나서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

19 번 응답자가 두 번째 강제 송환되었을 때 그는 오랜 심문 끝에 조선족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것을 시인하였다. 당시 조사 요원들은 그의 손을 족쇄로 채우고 쇠 봉이 있는 창살에 족쇄를 걸고 오랫동안 있도록 했고, 밥을 굶겼으며, 쇠 갈구리로

⁵⁶ 중국 동북 3 성에는 조선족들의 종교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조선족 교회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탈북자들은 이 교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⁵⁷ 동북 3 성에는 많은 한국의 사업가, 학생, 관광객들이 있다. 또 종교 관련 NGO들도 동북 3 성에 가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도 이 지역에 가서 조선족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한다.

⁵⁸ 「감춰진 수용소」에서 인터뷰했던 북송되어 수감된 적이 있는 탈북자는 죄수들이 끌려 나가 공개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수용소 경비병들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를 사실로 알고 있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다.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이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기아와 강제 노동에 의해 사망한다. 종교 활동으로 처형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다는 현재로서는 이를 증언할 만한 증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손등을 때렸다. 그리고 구덩이에 앉히고 목에 칼을 찌우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발 전체에 동상이 걸려서 걷지 못한 적도 있다.

22 번 응답자는 2002 년 송환된 뒤 회령 보위부 감옥에 있었다. 거기 60 세 정도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였다. 그는 그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그 할머니가 아무 일없이 감옥을 나가는 것을 보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더 조사를 받기 위해 함흥으로 갔다. 그 때 한 사람이 잡혀왔는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 성경책이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는 가족이 뇌물을 써서 1 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다.

29 번 응답자는 전 국가보위부 간부 출신으로 북한의 환상에서 깨어나 중국으로, 또 다시 남한으로 도망쳐 왔다. 북한 관리들은 ‘기독교가 주체사상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여 기독교인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의 경험으로 보면 잡혀 온 탈북자가 교회에 간 적이 있다고 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만약 남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한다고 한다.

32 번 응답자는 22 살 여성으로 중국에 나와 복음을 듣고 2000 년 성경을 들고 북한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녀는 2002 년 체포되었으나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녀는 간수들에게 자신은 북한과 인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설득했다. 간수들은 그녀에게 “당신은 종교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나 장군님이 용서해 주셔서 석방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35 번 응답자의 동료 죄수는 중국에 있을 때 교회 간 일을 시인함으로써 1998 년 무산 안전부에 강제로 송환되었다. 그가 안전부에서 다른 데로 옮겨진 뒤 어떻게 되었는지의 소식은 알려져 있지 않다.

제 5 장 김일성 집권 이전 한국의 사상, 가치, 신념의 체계

5 장에서는 인터뷰 응답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들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김일성 집권 이전 북한 지역의 사상과 신념 체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유력한 종교 - 기독교와 동학(또는 ‘천도교’) -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과거 이들은 공산당보다 더 잘 조직되어 있었고, 더 많이 알려졌으며 규모도 더 컸다. 공산당은 1945 년 이전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북한에는 4 개의 다른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역사가 형성되면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무속신앙과 불교, 유교/성리학, 그리고 천주교이다.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 치하에서 종교 자유의 쇠퇴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건립되던 시기의 종교 활동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I. 무속신앙

무속신앙(샤머니즘)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일종으로 아시아 지역의 물신 숭배 민속 신앙이다. 무속신앙에서는 모든 사물(생물이나 무생물), 존재 또는 자연 현상이 실질적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가신(家神)’, ‘마을 신’ 혹은 ‘산신(山神)’과 같이 많은 것들을 신으로 여긴다. 특히 사회가 불안할수록 자연과 초자연적 현상에 존재하는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다.⁵⁹ 태양이나 별자리의 모양 그리고 지형이나 특정 장소의 형상 등의 자연 현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읽어 낸다.

무당(샤만)이라고 불리는 신 내린 사람들, 주로 신 내린 여성들은 신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북이나 노래 또는 감정적인 호소로 신들을 불러들인다. 무당은 특별한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있을 사건을 예언 해주거나 숨겨진 사실들을 들춰내기도 한다. 여러 신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가령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알려준다거나,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일, 개인이나 가족, 마을의 재산이나 행운을 증대시키는 일 등의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무속신앙은 성문화된 경전이나 공식적인 교리문답서 같은 것은 없으나 무당의 구술 전통 의례인 굿이 있다. 굿은 주로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의 문제들을 다룬다. 무속신앙은 오늘날 남한에서는 하나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봄철 나무를 심거나 가을 추수와 같은 연례 행사의 의례적인 축하연에서 볼 수 있다. 또는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행해지는 마을 축제에서도 굿을 볼 수 있다. 어떤 무당의 집들은 흰색 깃발로 표시해둔다.

⁵⁹ 문화관광부, *한국의 종교문화(Religious Culture in Korea)*, Hollym, Seoul and Elizabeth NJ, 1996, p. 45.

한국전쟁 이전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무속신앙을 신봉했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무속 신앙의 일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묘사했다.

고대의 원시 종교[무속신앙]는 4 세기 불교가 출현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속신앙은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등 한국으로 유입된 모든 종교와 철학들의 기초가 되어버렸다.⁶⁰

II. 불교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뒤 백여 년이 지난 4 세기경 한반도로 들어왔다.⁶¹ 당시 한국은 삼국시대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씨족사회에서 중앙 집권 정치체제로 진화되고 있었다.

무속신앙과는 반대로 불교는 좀 더 보편적인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 같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운명이 자연 혹은 초자연적 질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명상이나 근본 원리의 깨우침을 통해 충분한 각성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운명은 인간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리고 불교는 내재된 잠재력을 깨우려는 인간의 의식적인 능력 또한 운명을 좌우한다고 본다. 불교는 원인과 결과의 윤리적 법칙(인과응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불교는 ‘내세’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자신의 조건과 운명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관념을 강조하고 있다.⁶²

668 년 불교는 통일 왕국인 ‘통일신라’의 초기 형태를 규정 짓는 국가 종교가 되었다. 불교는 ‘국가의 통합을 위한 사회 정치 사상’⁶³으로 자리 잡아, 이후 한국 최초의 통일과 예술, 건축, 문학의 초기 번성기를 이루어 냈다.⁶⁴

불교는 천년 동안 인기 있는 국가 종교로 존재했다. 대를 이어 왕실 혹은 귀족 가문의 지원을 받았던 절과 종단은 부자가 되었다. 노비들이 경작하는 넓은 논, 밭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생산물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천여 년 동안 국교의 위치에 있었던 불교는 교리의 교조화와 성직자의 부패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고려시대(918~1392)가 끝나가던 14 세기 말경, 불교는 개혁적 지식인과 성리학 교리를 접한 사대부들의 사상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⁶⁰ James Grayson, *한국: 종교의 역사(Korea: A Religious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89 년, p. 270.

⁶¹ 중국을 통해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퍼져간 불교의 형태는 대승불교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도를 통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비얀마로 퍼져간 소승 불교와 차이를 두고 있다.

⁶² 참조 정병조, “불교,” 한국 종교와 평화에 대한 회의,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 문화관광부, 서울, 2003 년, pp. 37-38.

⁶³ 한국의 종교 문화(*Religious Culture in Korea*), op. cit., p. 40.

⁶⁴ 668 년부터 1945 년 일본 제국의 패배와 한반도의 ‘일시적인’ 분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단일한 정치적 단위 즉 통일 국가를 유지했다.

유교사상은 불교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들어왔다. 종교 철학으로써의 불교와, 사회 질서와 선정(善政) 이론으로써의 유교는 천여 년 간 공존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유교는 초기 중국에서 처럼 엄격한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교리와 원칙을 받아들였다. 성리학은 인간과 자연에 관한 원리로서 왕조의 쇠퇴와 사회 정치 개혁에 대한 지식을 제공했고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이었다.

1392년 조선왕조(이씨 조선⁶⁵)가 300년 역사의 고려를 대체했을 때 성리학을 신봉하는 관료들은 불교에 대한 억압을 점진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실행했다. 승려들에게 지급되는 왕실의 보조금은 끝이 났다. ‘국사’라 불리던 왕실 불교의 직위들 그리고 왕을 가르치던 스승의 직위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고급 불교 교육을 위해 고안된 불교 연구 제도도 폐지되었고 주요 불교 사찰들도 폐쇄되었다.⁶⁶

승려가 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은 효성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는 것을 막는 칙령이 1659년 공포되었다. 불교 승려가 되려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칙령이 완전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승려의 지위는 조선시대 계층 체계에서 백정, 기생, 노비와 같은 지위까지 하락했다. 심지어 스님들이 서울에 출입하는 것마저 차단했다. 절들은 도시나 마을의 중심에서 산 속으로 쫓겨나 242 곳으로 줄어들었고 이후에는 36 개로 축소되었다.

한 역사학자는, “백여 년 전 조선시대가 끝날 때 즈음 당대 관찰자들에 의하면, 한국 불교는 기진맥진하는 세력이었고 단기간 안에 사라질 것 같았다”라고 했다.⁶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1886년 한-불조약으로 공식적 종교 자유를 획득하면서 19세기에는 회복세를 타고 있었다. 불교학당은 다시 열렸고 승려들은 다시 수도 서울로 들어갈 수 있었다. 승려들은 종단과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 책을 써내고 출판했다.

일본 식민지 기간(1910-1945) 동안 불교 교단은 일본 당국에 의해 재조직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한국 승려들은 일본 당국에 반대하는 조직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은 일본식 대처승의 관례를 도입하기도 했다. 대처승은 고기를 먹어도 되고 현대적 옷과 머리 스타일을 할 수도 있다. 이 기간 일부 일본 불교도들은 한국인의 불교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하는 600,000 만 일본인에게 불교를 전파하려고 노력했다. 일본 식민지 당국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불교의 부흥을 반겼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당국이

⁶⁵ 이 이름은 왕조의 창립자, 이성계의 성에서 따왔다. (한국의 성 ‘이’씨는 현재 Lee 또는 Rhee라고 바꾸어서 쓰고 있다.)

⁶⁶ Grayson, op. cit., p. 153.

⁶⁷ Grayson, 같은 책, p. 221.

한국 국민들에 강요하려고 한 것은 실제로는 신토(Shinto) 황제 숭배였지 불교가 아니었다.⁶⁸

20세기 초까지 심각하게 위축된 한국 불교의 현실은 한국 현대사의 의미 있는 한 사건이었던 3.1 운동에 불교인들이 미미하게 참여한 데 있어서도 잘 나타난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선언에 서명한 33인 중 기독교신자가 16명, 천도교신자가 15명인데 비해 불교인은 단 2명만이 서명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북한 지역에서는 불교가 조선 왕조 500년의 송유억불 시대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⁶⁹ 20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종교 자유와 물질적 번영을 구가함으로써 불교는—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서--조선시대의 억압으로부터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⁰

III. 유교/신유교(성리학)

유교는 불교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지도자와 백성, 연장자와 손아랫사람,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이론에 가까웠다. 사회 질서와 국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교는 계몽과 이해를 추구하는 불교 정신과 공존했다.

12세기 중국의 송 왕조가 몽골에 의해 무너져 갈 때, 한 유학자 그룹은 송의 쇠퇴가 불교에 대한 과도한 애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주희(1130-1200)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 사상가들은 소위 고대 정신의 회복을 통해 재부흥과 개혁을 추구했다.

사회 질서와 통치에 대한 공자의 윤리학은 인간 본성과 물질에 대한 다른 이론들과 같이 형이상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신유교 또는 성리학’이라고 알려졌다. 한국 종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주희는 우주, 도덕성 그리고 개별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광범한 개념을 연결시킨 형이상학적 우주 체계를 유교에 전했다.”⁷¹ 주희는 사회 윤리와 궁극적 종교/철학적 관심에 깊이 심취했다. 도덕 철학에 있어서 ‘진실성’은 ‘원리’(理, 사물의 실재와 보편성)와 ‘물질적 힘’(氣, 생성 또는 보편적 변형과 변화)의 균형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기초가 되며 선과 악을 식별하는 수단이 되었다. 신유교주의자들은 마음, 감정 그리고 물질적 힘의 다양한 상황들 간의 관계와 균형에 대한 복잡한 도식과 도표를 만들고 상세히 설명했다.

⁶⁸ 강위조, *일본 통치 하에서의 한국 종교와 정치(Religion and Politics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Edwin Mellen Press, New York, 1987, pp. 45-59. 참조

⁶⁹ 8장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북한의 주장으로는 단지 60개의 절이 있다. 절을 관리하거나 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200~300명이고 그들 중 일부가 스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2천2백만 명의 인구 중 1만 명의 불교 신자가 있다.

⁷⁰ 대한민국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 남한에는 1만2천 개의 절이 있고 2만5천명의 스님과 여승이 각각 36개의 다른 종단에 속해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한 인구의 23%가 스스로 불교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⁷¹ Grayson, op. cit., p. 102.

신유교,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이 학문은 1392년에 개국한 조선왕조의 국가 철학이 되었다. “조선의 창건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신유교를 충실하게 실행했고 한국을 유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열중했다. 조선 초기의 학자와 관료들에게는 성리학이 모든 정치 철학의 상위에 존재했다. 성리학은 국가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믿을만하고 효과적인 규범을 학자들에게 제공했다.”⁷²

성리학은 효를 상당히 강조했다. 부자(父子)윤리, 가부장제, 조상 숭배를 강조했고 이것은 일종의 가족-국가 정치 이론으로 전환되었다. “성리학의 정치 윤리는 통치자와 백성의 상호 관계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가르침은 거부하는 배타적 이론이기도 했다.”⁷³ 19세기 성리학 관료들은 ‘위정척사’를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배타성을 옹호했다. 성리학 관료들은 초기에는 불교 승려 집단의 부와 타락을 비판했다. 이후에는 불교의 교리와 신념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또 조선 왕조의 관료들은 불교 사찰을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더 나아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불교를 탄압했다. 다른 종교들 또한 가혹하게 억압했다.

국가를 등에 업은 성리학 관료들은 마침내 ‘조선의 유교화’를 이루어냈다.⁷⁴ 이것은 젊은 관료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제, 사상의 경쟁 체계에 대한 억압과 유교적 의식의 전 사회적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 낸 것이다. 이런 광범위한 유교 의식의 일상화를 통해 사회적 관례, 질서와 관계들은 유교 이론에 맞게 재구성되고 전일화되었으며 다른 종교, 사상은 억압되었다. 수 세기가 흐른 뒤 조선 외교관들이 베이징에서 천주교를 도입했을 때에도 천주교 개종자들은 처형당했다. 그 후 다음 세기 조선시대 말엽 이상주의적 학자들은 ‘동쪽의 학문’ 즉 동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철학을 발전시켰는데 이들 또한 처형당했다.

많은 한국 학자들은 성리학은 현대의 북한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유교는 오늘날 북한에서 종교로써⁷⁵ 인정되지도 않고 정형화된 유교 의례나 의식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한 남한 학자는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다.

북한에서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보면, 북한이 새로운 유교주의 사회나 가족 국가의 형태로 전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도자에 대한 강한 충과 효의 정신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⁷² 최용호, Peter Lee., William de Bary (eds.), *한국전통의 기원(Sources of Korean Tradition)* Vol 1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7년, p. 279.

⁷³ 이기백, *한국의 새로운 역사(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7년, p. 166.

⁷⁴ *조선의 유교적 전환(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은 Marine Deuchler의 사회와 사상에 대한 유명한 연구의 제목이다.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2년.

⁷⁵ 실제로 유학자들은 북한의 엄격한 세습 계층 구조(성분)에서 ‘적대계층’으로 37 번째 하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Kongdan Oh and Ralph Hassig,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2000년, p. 134.

의미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주희가 꿈꾸었던 사회가 실현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⁶

한국전쟁(1950-1953) 이후, 김일성은 소련에서 수입된 사회, 정치, 경제 체제를 ‘북한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희의 성리학 교리에서 볼 수 있던 조선시대 관료주의에 스탈린주의의 여러 요소들을 접목시킨 것이다. 조선왕조의 신유교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모든 사상, 신념과 가치 체계들의 경쟁을 막았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의례와 의식을 만들었다.

IV. 천주교

불교나 유교와 같이 천주교도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명나라 궁중의 명예 사절로 북경에 주재했었다. 예수회 학자들은 중국말을 완전히 배웠고 불교, 유교 그리고 신유교의 전통에도 정통했다. “그들은 고대 중국어로 수백여 개의 과학적 업적을 발표했고 천문학 기구, 시계, 프리즘, 세계 지도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을 소개했다.”⁷⁷ 중국의 음력체계의 단점을 극복한 근대 달력은 중국에서 환영 받았다. 예수회는 서구가 가진 특정 분야의 기술적 우월성이 다른 분야로 전파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예수회 선교사들은 유교 학자들이 서구인들이 우주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도 전문가일 것이라고 믿어주기를 바랐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천상의 학문(Heavenly Learning)’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들은 신학을 천문학과 연결시켰다. 별들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영혼의 왕국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⁷⁸

예수회는 유교를 초기 천주교 신학자들이 로마 천주교에 융합시켰던 그리스-로마의 자연법과 같이 다루었다. 그들은 유교는 인간의 신성(神性)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리학은 인간의 신성을 부정함으로써 초기 유교의 가치와 가르침을 배신했다”고 예수교 학자들은 주장했다. 그리고 “천주교는 근본적인 유교의 정신의 회복이다.”⁷⁹고 주장했다. 또 조선에서 예수교는 유교적 장례의식을 조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써 해석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조선의 일단의 학자들은 신유교의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깨어나 실학(실재적인 학문)이라는 학문을 도입하게 된다. “그들이 주안점을 둔 것은 형식 원리(이, 理)와 추진 동력(기, 氣)의 중요성에 대한 주희의 이론이 아니라, 사회

⁷⁶ 이문웅, *공산주의 하의 북한의 지방(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Rice University Special Studies, 1976년, p. 120, 브루스 커밍스, *북한: 또 다른 나라(North Korea: Another Country)*에서 인용, The New Press, 2004년, p. 134.

⁷⁷ Eric O. Hanson, *중국과 한국의 카톨릭 정치학(Catholic Politics in China and Korea)*, Orbis Books, Maryknoll, NY, 1980년, p. 15.

⁷⁸ *한국 전통의 근원(Sources of Korean Tradition)*, op. cit., vol. 2, p. 124.

⁷⁹ 같은 책.

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이었다.”⁸⁰ 남부지역 거점의 정치적 당파인 남인 실학파들은 예수회가 베이징에서 가지고 온 중국어로 된 저작물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이후에 서학(서양 학문)이라고 알려진다. 1777년 실학의 후원자가 왕위에 즉위를 했을 때 남인 유교 학자들은 베이징 예수회의 저작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서 멀리 산 속의 절로 칩거한다. 이 학자들은 토론을 거친 후 “그들이 찾고 있었던 진리는 천주교에 있다”라고 결론 지었다.⁸¹

이 학자들은 명나라 베이징으로 가는 몇몇 외교 사신들에게 천주교 신부들을 접촉하고 세례를 받도록 설득했다. 세례를 받아 개종한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그를 설득했던 학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천주교 교리는 특히 시파라 불리는 양반 남인 학파들과 교육받은 중간 계층인 중인들에게 매력이 있었다. “그들은 천주교에서 정치적 권력이 몇몇 집안에만 집중되어 왜곡된 사회 정치적 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을 찾았다. 천주교의 수용은 양반 사회의 과도정치적 현실과 신유교적 교조주의의 지적인 경직성에 대한 도전이었다.”⁸²

1795년에는 4천여 명의 조선인 천주교 신자가 있었으며, 1800년까지는 만 명의 신자가 있었다.⁸³ 이들은 남서부 지역인 오늘날의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예수회 선교사의 뒤를 이어 도미니크회와 프란체스코회의 선교사들이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건너 왔다. 이들 카톨릭 선교사들은 조상을 섬기는 유교 장례 의식을 유일신 숭배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간주했다. 바티칸은 유교 의식을 존중하는 예수회에 반대해 프란시스코회와 도미니크회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유교의 조상에 대한 장례의식은 천주교 교리와는 모순된다는 로마교황의 회칙, ‘그 날로부터(*Ex Illa Die; Since that time*)’를 발표했다. 한국 천주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자 1790년 베이징 주교는 교황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전통적인 유교의식인 제사를 금지했다는 것을 알렸다. 그 후 전라북도의 한 양반 출신인 천주교 신자가 그의 어머니 제사를 거부했다. 그는 체포되었고 유교 도덕과 제례의 의무를 어긴 이유로 처형당했다.

정통 신유교는 천주교라는 새로운 이질적 종교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다. 그리고 실학 학자의 후원자인 왕이 1800년에 죽자 남인들은 천주교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천주교를 고수했던 이들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처형당했다. 신유박해는 19세기 한국 천주교의 네 차례의 광폭한 탄압 사례들 중의 첫 번째 박해 사건이다.

신유박해는 한국 천주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천주교를 믿는 양반 학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버리고 산골(주로 현재의 대구와 원주 사이)에 들어가 숨었다. 그들은 도자기공 또는 떠들이 상인으로 꾸며서 이 마을 저 마을

⁸⁰ 이기백, *한국의 새로운 역사(A New History of Korea)*, op. cit., p. 232.

⁸¹ Hanson, op. cit., p. 26.

⁸² 이기백, op. cit., p. 239.

⁸³ Hanson, op. cit., p. 27.

떠돌아 다니기도 했다. ‘농부, 기능공, 여성, 고아, 추방당한 사람’ 등 하급 집단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왔다.⁸⁴ 1815년 산 속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박해의 물결이 닥쳤으며, 1827년에는 정해 박해가 있었다.

1839년 한국 땅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발견된 이후 기해박해가 일어났으며, 1846년에도 박해가 이어졌다. 1866년 유교 정통과는 1866년부터 1871년에 이르는 ‘대 박해’를 통해 천주교를 뿌리째 뽑으려고 시도했다. ‘은둔의 왕국’의 쇄국 정책이 끝나갈 무렵 연이은 박해를 통해 조선인 천주교도 8천명이 살해된 것이다.⁸⁵

1876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최초의 현대 교역협정이 체결되었다. 1886년에는 종교의 자유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정이 프랑스와 체결되었다. 천주교는 지하로 숨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 들어온 프랑스, 독일 등 다른 교파들의 후원으로 다시 확장되기 시작했다. 1890년대에는 명동 성당이 서울에 건립되었고 천주교 신부를 교육시키는 신학교가 열렸다. 1910년 일본의 조선 합병이 있기 전까지 한국 전역에 73,517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존재했다.⁸⁶

20세기의 조선의 천주교는 여전히 그 전 세기의 박해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때문에 반일 독립 운동에도 관여하기를 기피했다. 1919년 3월 1일 천도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독립선언에 천주교인 서명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대규모 저항에도 아주 적은 수의 천주교인들만이 참석했다.⁸⁷ 일본 점령을 반대하는 이 시위들로 일본 식민지 당국은 대규모 사람들을 처형하고 체포했다. 바티칸의 규율을 따라 일본 당국이 명령한 신도 숭배를 거부하는 천주교인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계에 혼합주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 천주교 역사학자는, “공식적 차원에서는 천주 교회는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⁸⁸

해방 후 5만 2천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북한에 존재했다.⁸⁹ 북한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는 단 800명의 천주교도들이 있다고 한다.⁹⁰

⁸⁴ Hanson, op. cit., p. 27; 이기백 참조 op. cit., p. 256(이기백은 천주교는 시골의 주요 종교는 아니었다고 언급한다.)

⁸⁵ Grayson, p. 184. ‘은둔의 왕국’은 서양인들에 의해 한국에 주어진 하나의 별명이지 한국인 스스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

⁸⁶ 숫자는 “Hanson”에서 인용, op.cit., p. 27.

⁸⁷ 1919년 6월까지 1,461명의 장로교회 교인, 465명의 감리교회 교인, 207명의 다른 기독교 교단의 교인들과 57명의 로마 천주교인들이 체포되었다. 강위조, *일본 점령 하에서의 한국 종교와 정치(Religion and Politics in Korea under Japanese Occupation)*, op. cit., p. 25.

⁸⁸ 염성(Seong Youm), “천주교”, 문화관광부/KCRP,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 서울, op. cit, 2003년, p. 70.

⁸⁹ 이 외 한국 천주교구 산하로 17,000명의 천주교인이 두만강변 중국지역과 연길 주변에 살고 있었다.

V. 천도교

원래 동학이라고 알려진 천도교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융합 종교이며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의 한국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종교이다.

천도교는 전라도 지방의 한 유학자의 아들 최제우(1834-1864)에 의해 창립되었다. 그는 재혼한 과부의 아들로 서출이었으므로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⁹¹ 그 후 최제우는 다양한 철학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떠돌아 다녔다. 그는 주로 유교에 기반을 두면서도 도교, 무속신앙, 불교 그리고 천주교의 복합적인 요소들에 기초한 새로운 종교 교리를 설교하고 다니면서 영적인 체험들을 했다고 한다. 그는 새로운 융합 종교를 동학이라고 발표했다. 동학은 서학(천주교)에 반대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동학은 신은 인간 안에 있으며, 천국은 속세에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역사는 양반 귀족에 맞선 평민들에 의해서 주도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동학은 천주교의 ‘성찬식’ 같은 정화수 의식과 무속 신앙과 흡사한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의식도 포함하고 있다.

최제우는 1864년 그의 이단적 설법으로 인해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그의 첫 번째 제자였던 최시흥은 30년 뒤에 처형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의 천년왕국 신봉자들은 만민 평등주의 믿음을 빠르게 키워나갔고, 특히 한국의 남서지역에서 소외된 시골 농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성장하였다.

동학 신자들은 지도자의 처형을 적극 반대했고 그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을 시도했다.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들과 서구 및 일본의 침입에 반대하는 시위는 그 세력이 점점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거절되었다. 1893-94년에 전라도 지역의 부패한 지방 관료와 동학 신도들 사이의 충돌은 거대한 농민 봉기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동학 반란군이 지방의 관군을 격퇴했다. 이러한 상황은 동학 반란군이 도청 소재지인 청주를 장악하고 서울로 진군하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서울의 중앙 정부는 중국에게 동학혁명을 진압할 군대를 파견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내 중국 군대의 주둔을 용인할 수 없었다. 1894년 일본은 중국을 무찌르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는 중일전쟁으로 비화되었다. 동학 농민군대는 현대식 장비로 무장한 일본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곧바로 패배했다. 일부 동학인들은 비교적 인구가 적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반도의 북동쪽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 이후에는 만주로 가서 일본 식민지 세력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싸워나갔다.

⁹⁰ 한국불교와 유사하게, 한국 천주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1995년 현재 약 300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 오늘날 천주교는 조선시대의 억압과 식민지 시기의 사회 정치적 침묵에서 극복하여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⁹¹ 신유교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 남편이 죽었다 하더라도 재가하는 것은 그 남편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1905년 동학 지도자들은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1919년 천도교 지도자들은 서울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3월 1일 조선 독립선언을 조직하기 위한 초안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15명의 천도교 대표자, 16명의 기독교 성직자, 두 명의 불교 승려들이 서명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조선 독립을 지지하는 군중 집회를 거행했고 여기에는 2백만 여 명이 가담하게 된다. 이들은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대를 통해 조직된 사람들이었다. 조선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발이 된 이 군중 집회는 바로 일본 식민지 당국에 의해 진압되었다. 일본 정부의 기록에 의하면 46,948 명이 체포되고, 7,509 명이 살해되었으며, 15,961 명이 부상을 입었고, 715 채의 가구와 47 개의 교회 그리고 두 개의 학교가 불에 타고 파괴되었다.⁹²

해방 이후 기독교와 같이 천도교도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의 반종교 정책에 대항했다. 해방 이후 한반도와 만주지역에 있던 한민족 중에 3백만 명이 천도교 신자였다고 천도교 지도자들은 주장한다.

VI. 기독교

기독교는 천주교보다 한 세기 뒤 19세기 말경 한반도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들어왔다. 19세기 말 ‘은둔의 왕국’ 조선은 일본, 유럽, 미국의 통상압력과 군사적 강요에 의해 개방되었다. 이 때가 바로 5백 년의 조선 왕조 후기의 혼란기이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개종한 자들이다. 그 후 한국은 대영제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서 온 장로회,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기독교 지역이 되었다.

첫 선교사들⁹³ 중 한 사람은 호레이스 알렌(Horace Allen)이라는 의사였다. 그는 조선 왕조 전복을 노린 쿠데타로 인해 부상을 입은 명성황후의 조카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알렌은 왕실의 주치의가 되었으며 동시에 일반 백성을 치료하는 병원도 운영할 수 있게 허가되었다. 이는 나중에 한국 최초의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병원이자 학교로 성장하게 된다. 당시만 해도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주로 학교를 건립했다. 당시

⁹² 이기백, *op. cit.*, p. 334.

⁹³ 1832년 한 기독교 선교사가 조선의 몇몇 서해안 항구 도시를 방문한 것 같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상주하지는 않았다. 스코틀랜드 성경협회(Bible Society of Scotland) 소속 로버트 토마스 목사는 불운의 제너럴 셔먼호에 있었다.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왕조가 항구로 들어오지 말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1866년 대동강으로 올라온 무장한 미국 상선이다. 그 배는 폭파되었고 모든 승객들과 선원들은 죽었다. 북한당국의 조선전사에는 이 사건을 김일성의 할아버지 김응우에 의해 주도되어 미 제국주의에 대항한 세기의 투쟁 중에서 첫 번째의 승리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한다. (Charles Armstrong, “우리 식의 사회주의: 후기 공산주의 시기의 북한의 사상”(A Socialism of our Style: North Korean Ideology in Post-Communist Era), (A Socialism of our Style: North Korean Ideology in Post-Communist Era,” Samuel S. Kim (ed.), *탈냉전기 북한 외교관계(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Oxford University Press, 1999년, p. 32.)

조선의 교육은 대개 한자로 된 유교 고전을 외우는 것이었으며 양반 가문의 자제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기독교 미션스쿨들은 수학과 과학 같은 현대적인 과목을 조선어로 교육하였다. 기독교 미션스쿨들은 또한 여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예를 들어, 감리교회 전도사들은 서울에 이화학당을 건설했다. 이화학당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권위 있는 여자대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로 성장했다. ‘한국의 선교사’들은 현대 교육을 시작했고⁹⁴ 도시의 신흥 중산층들은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냈다. 여기에는 김일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의 새로운 기독교도들은 많은 학교들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갔다.

선교 활동의 경쟁적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들은 한반도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활동했다. 한국 기독교 교회들은 중국의 한 선교사 존 네비우스(John Nevius)의 이름을 딴 네비우스 교육 방법론을 받아들였다. 네비우스 교육 방법론은 ‘삼자(三自)원리(자치(自治) 자립(自立) 자전(自傳)) 로 요약된다. 50년 뒤 이 삼자 원리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삼자 운동’을 중국의 기독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통합된 선교 방법, 즉 지역 분담 정책과 삼자 원리 교육 방법은 한국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 오게 했다.

18 세기 말과 19 세기 초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Great Revival)’에 견줄만한 한반도의 ‘대각성(Great Awakenings)’의 거대한 물결이 1907년 한반도 전역, 특히 북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부흥은 당시의 불안정한 정치 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부흥으로 형성된 세력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한 힘이 되었다.”⁹⁵ 기독교 선교 첫 세대의 노력의 결과 한반도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서 거대한 기독교 인구가 탄생했다. 이들은 대다수가 현대화된 중산 계층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 대부흥의 중심지였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으로 왔던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반노예, 금주, 참정권 그리고 이주민 정착 운동에 기여했던 세대들이었다. 기독교는 조선봉건왕조 말기 엄격한 계급제도 및 가부장제와는 상반되는 가치들을 도입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역사학자 이기백은 “기독교는 종교의 교리로써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사상 활동에 있어서도 열렬히 환영 받았다.”⁹⁶ 라고 했다. 다른 역사가들은 “선교사들은 서구 자유 사상을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인들에게 민족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⁹⁷

그리고 기독교로 인해 고무된 한국인들의 ‘민족 의식’은 한국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켰다. 19 세기 말경 서구 제국주의가 아시아 전역을 식민지로 합병하고 있을 동안 조선의 주권과 자립은 서구가 아니라 한반도 부근의 신흥 강대국 일본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의 상태로 점령하고 이후 합병했을

⁹⁴ 이정배, “기독교,”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 op. cit., p. 97.

⁹⁵ Grayson, op. cit., p. 198.

⁹⁶ 이기백(Ki-baik Lee), op. cit., p. 335.

⁹⁷ Carter Eckert, Ki-baik Lee, Young Ick Lew, Michael Robinson, Edward W. Wagner. *한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Korea Old and New: A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0년, p. 249.

때, 조선의 기독교 신자들은 대거 민족주의자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의 33인 서명자들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⁹⁸ 3.1 독립선언이 있는 후 4개월 안에 3,800명의 장로회 신자들이 구금되었고 45명의 장로회 지도자들이 처형 또는 구타 당해 죽었다.⁹⁹

한국 기독교 교회는 반일 운동의 주도 세력이었다. 일본 식민지 당국이 한국인 기독교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신토(Shinto) 의식 시간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던 1930년대 중반에는 한국 기독교와 일본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졌다. 많은 기독교 학교들은 우상숭배인 신토 의례를 받아들여느니 아예 학교 문을 닫아버렸다. 2차 세계대전 동안 한국인 기독교 신자들은 한국의 교단과 관계를 끊고 일본이 통제하는 일본 그리스도교 산하 조선 교단에 가입하도록 명령 받았으나 많은 한국인들은 이를 거절했다. 3천여 명의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체포 당했고 그들 중 50명은 감옥에서 사망했다.¹⁰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38선 이북에 대략 2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존재 했다. 김일성 전기를 쓴 학자에 의하면, “국가를 건설한 이후, 김일성의 가장 힘겨운 일 중의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다루는 것이었다”¹⁰¹ 고 한다. 기독교와 공산당 정권 사이의 충돌로 해방 후 1960년대까지 북한 내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탄압되었다.¹⁰²

⁹⁸ 강위조,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와 시저: 기독교와 정치의 역사(Christ and Caesar in Modern Korea: A History of Christianity and Politics)*, SUNY Press, Albany, 1997년, p. 52.

⁹⁹ 같은 책, p. 53.

¹⁰⁰ 강위조, *일본 지배하의 한국의 종교와 정치(Religion and Politics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op. cit., p. 43.

¹⁰¹ 서대숙(Dae Sook Suh), *김일성: 북한의 지도자(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8년, p. 399.

¹⁰² 상세한 내용은 6장 참조.

제 6 장

탄압의 시기(1945 - 1960): 세 단계에 걸친 북한 정부의 철저한 종교 탄압

평양에 친소 정권을 조직하기 위해 소련이 김일성을 선택했을 당시 한국에 공산주의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¹⁰³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반해도 기독교와 천도교는 상당 수의 신자들을 모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¹⁰⁴ 특히 기독교는 아주 잘 조직화되어 있었다. 두 종교 집단은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종교 교리에 맞는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1945 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 년 사이에 김일성은 정치적인 경쟁자들을 자기 측근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억압했다. 일부 정치적 지도자들은 체포되었고 또 일부는 처형당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38 도선 남쪽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전역에 잔혹한 파괴와 인명 손실을 가져온 한국전쟁(1950 -1953)으로 인해 종교인들의 남한으로의 탈출은 극도로 가속화되었다. 1953 년 종전과 스탈린 사후 김일성은 노동당 내에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한다. 그리고는 스탈린 사후 소련의 수정주의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들을 수립하게 된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민족적 스탈린주의’라고 명명한다. 이 정책들 중 북한 내 모든 공식적인 종교 활동을 없애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던 교회, 절 그리고 천도교의 예배 장소도 1960 년대에는 사라지게 되었다.¹⁰⁵ 이로써 북한은 전 세계에서 종교가 완벽하게 금지된 단 두 개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다른 한 나라는 알바니아였다).¹⁰⁶ 이와 같은 완벽한 종교 탄압은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I. 제 1 단계(1945 - 1950): ‘인민민주주의’로서의 북한

해방과 한국 전쟁 사이 소련 치하의 북쪽 지역은 소련군이 나치를 패배시킨 중동부 유럽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 성숙되기 위해서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몇 년은 ‘인민민주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946 년 초 북한은 소련을 따라 일본 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한국 관료들의 땅도 몰수하는 광범위한

¹⁰³ 중국과 러시아에는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 공산당의 당원이었다. 한국에는 한반도 남반부에 주로 맑스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흩어져 있었고 일본 점령기 동안 체포, 구금의 위협을 피해 은둔하고 있었다.

¹⁰⁴ 기독교와 천도교의 도입과 성장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5 장을 참조.

¹⁰⁵ 서대숙(Suh), *김일성(Kim Il Sung)*, op cit, p. 399.

¹⁰⁶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Asia Online*, op. cit., March 2005.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이 토지개혁은 “수십 세기 동안 한국에 존재하던 토지 재산의 근간을 허물었다.”¹⁰⁷ 하지만 시골 농민들 사이에는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인기 있는 다른 조치들도 실시되었다. 하루 8시간 근무, 사회보장보험, 임금 인상, 동일노동에 동일보수와 등과 같은 노동개혁 등이 그것이다. 거기에다 축첩제, 매춘과 유아살해를 금지하는 법도 공포되었다.

108

기독교와 천도교 신자들에 반대한 소련과 김일성

북한에 대한 소련의 청사진은 조선노동당이 모든 사회 정치적 세력들과 조직들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동안 다양한 공산주의자들은 노동당에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이 중에는 소련과 한국인(일찍이 시베리아와 소련연안 지역으로 이주해 갔던 민족주의자들), 중국에서 돌아온 좌파들(연안파), 1945년 이후 북으로 갔던 좌파들(남로당 계열)도 있었다. 이후 일본의 만주 점령을 피해 소련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과거 만주를 기점으로 항일운동을 펼치던 김일성을 포함한 게릴라 전사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노동당은 소련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천도교 신봉자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에는 친공산 좌파 세력에 비해 기독교, 천도교의 세력이 훨씬 강했고 잘 조직되어 있었다.

세계 2 차대전 말기 일본의 패배가 명확해지면서 한국의 좌, 우, 중도 세력들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약칭, 건준)라는 대통일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 ‘인민위원회’라고 불리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지부들은 빠른 속도로 전국에 조직되기 시작했고 지방 행정 단위를 장악하게 된다.”¹⁰⁹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야심 찬 정부기구로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초창기 우파와 중도 세력들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과 협력했다. 하지만 이 협력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일본 패전을 위한 미-소 합의에 따라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협력한 것이었다. 이후 미군이 38 도선 이남으로 진주해 들어옴에 따라 보수, 중도 세력은 건준에서 탈퇴하고 건준에는 좌파들만이 남게 되었다. 함경도 지역을 제외한 38 도선 이북의 건준 소속 모든 인민위원회는 기독교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평양 일대를 총괄했던 가장 중요한 위원회는 조만식이라는 기독교 교육자에 의해 지도되었다. 남쪽에는 미군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미군정을 직접 설치했다. 북쪽에서는 소련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했다. 때문에 소련은 조선의 가장 주목 받던 민족주의자이자 장로교회의 장로인 조만식과 함께 일했다.

¹⁰⁷ Eckert, et al, *Korea Old and New*, op. cit., p. 336.

¹⁰⁸ 같은 책, p. 336.

¹⁰⁹ 같은 책, p. 330.

조만식 장로는 한국의 간디로도 불린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 수입품보다 국산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만식은 서구의 복장보다 한복을 즐겨 입었다. 2 차 세계대전 말엽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창시개명을 강요했을 때에도 조만식은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를 거부했다. 조만식은 한국의 해방 문제에 대해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법론을 택했다. 그리고 그는 소련과 김일성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도 온건하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조만식은 기독교 교회 조직을 통해서 조선민주당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기독교 조직으로는 두 장로교 목사들이 조선민주당 창당 몇 개월 전 신의주에서 조직한 기독교사회민주당이 있었다.¹¹⁰ 조만식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38 도선 이북 대표로서 소련 점령 당국과 협력하는 일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소련 당국은 조만식에게 그의 과거 제자였던 최용건을 조선민주당의 부대표로 임명하도록 압박했다. 최용건은 만주에서 김일성의 게릴라 투쟁에 합세했던 인물이다.¹¹¹ 그리고 1946년 1월에 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체포되었고 조선민주당은 공산주의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일성의 조선노동당과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은 2 차 세계대전 직후 조직되었던 반면 천도교 신봉자들은 1923년부터 정치 정당인 천도교청우당을 만들었다.¹¹² 1925년까지 청우당은 120개의 지부 조직에 3만 명의 당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당은 1934년 일본의 탄압으로 지하로 숨어들어갔으나 1945년 다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1947년에는 지방 농민들을 중심으로 백오십만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청우당은, 과거 동학혁명으로 세간에 알려진 급진적 평등주의, 민중주의 정치색을 띄고 있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946년의 조선노동당의 토지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 토지개혁의 결과, 토지가 없었던 농민들과 천도교 신봉자들 사이에서 조선노동당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청우당은 또 민족주의와 독립, 통일을 열렬히 지지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의해 점령당했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KDUF, the North Korean Democratic United Front)이라는 ‘통일전선’이 건설되었다. 이것은 ‘정당, 여성, 청년, 노동자 그리고 종교, 문화, 학술 단체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중들을 공산당의 지도하에 포섭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구였다.¹¹³

해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 천도교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1945년에 신의주의 기독교 학생들이 소련 점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조직했으나

¹¹⁰ 장위조,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와 시제(Christ and Caesar in Modern Korea)*, op. cit., p. 156.

¹¹¹ 훨씬 더 보수적인 남쪽의 한국민주당은 영어로는 조만식의 조선민주당과 동일하게 ‘Korean Democratic Party’라고 번역되지만 둘은 전혀 관계가 없다.

¹¹² 청우당을 영어로 직역하면 ‘Pure Friends Party’로도 된다. *Chondokyo*, op. cit., p. 138.

¹¹³ Charles Armstrong, *북한 혁명: 1945-1950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Y, 2003년, p. 112.

이는 곧 진압되었다. 1946년 토지개혁안의 일환으로 교회의 사유지가 몰수되었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을 함께 조직했던 천도교 지도자들과 기독교도들은 소련 점령에 대항해 ‘제 2의 3.1 운동’을 조직하려고 시도했다. 이 운동은 친소 김일성 정권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맞대응 집회를 불러왔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선거 날짜를 일요일에 잡아 기독교도들은 주일이라는 이유로 선거를 보이콧한 일도 있었다.

노동당은 기독교 예배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하기 시작했다.¹¹⁴ 김일성은 평양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장로교 목사로 임명된 그의 외삼촌에게 기독교교도연맹을 설립하여 기독교 교구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했다. 한 한국 교회 역사학자는, “북한 당국은 기독교교도연맹에 합류하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감금했다. 그 결과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탈출했고 일부는 지하로 숨어들었다”라고 한다.¹¹⁵

기독교와 친소 평양 정권 사이의 가장 큰 대립은 미국과 소련의 ‘조선 신탁 통치’¹¹⁶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알타회담, 포츠담 회담에 뒤이어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렸다.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 하에서 통일된 임시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조선을 5년간 신탁통치 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제시대 때부터 민족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조만식과 기독교인들은 신탁통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물론 북한에서 소련의 정책에 대한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조만식과 기독교 동료들은 체포되었다. 체포 후 조만식에 대한 소식은 다시는 들을 수 없었고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한국 역사학자에 의하면, “기독교 교회는 한국전쟁 때까지도 남아 있었고 예배도 허용되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정치 활동은 근절되었다.”¹¹⁷

천도교 지도자들 또한 미-소의 ‘신탁통치’ 계획에 반대했다. 따라서 천도교도 공산당 정권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주도 하에 유엔은 38도선 이남과 이북 양쪽의 선거 관리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유엔이 북한 지역에서 선거를 감시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다. 천도교 지도자들은 소련의 조치가 나라를 분열로 몰고 갈 수도 있음을 알았기에 유엔의 선거를 지지했고 또 지지 집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소련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17,000명의 천도교 교인들이

¹¹⁴ 이 정책은 국가가 감독하는 예배가 재허가된 1970년대에 다시 등장했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¹¹⁵ 장위조,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와 시저(Christ and Caesar in Modern Korea)*, op. cit., p. 158.

¹¹⁶ 다국의 ‘신탁통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제국을 대체하려고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상적인 개념이었다. 자국의 식민지를 보유하고 싶어하던 영국과 프랑스는 ‘신탁통치’와는 인연이 멀었다. 하지만 소련은 한국에서 신탁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었다. 물론 한국에서 미-소 협력 하에 신탁통치가 실시되었다고 해도 냉전의 도래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¹¹⁷ Bruce Cumings,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319.

체포되었다고 천도교의 자료는 전하고 있다.¹¹⁸ 이 일이 있는 후 북쪽의 천도교 교인들은 김일성과 소련 당국에 반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노동당을 지지하는 노선을 취하게 된다.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나 천도교 신자들과는 달리 천주교와 불교는 북한 내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두 종교는 1946 년의 토지개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토지개혁으로 인해 천주교와 불교는 소유 재산을 박탈 당했다. 천주교는 동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냉전 기간 동안 반공주의, 반소련주의로 간주되었다.

바티칸은 중국 동북 지역의 연길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족의 천주교를 한국 교구에 속하는 것으로 이미 인정했었다. 그러나 소련은 1946 년 만주 연길의 천주교 독일인 주교와 26 명의 독일 신부와 수도사, 2 명의 독일 수녀와 1 명의 이탈리아 수녀를 체포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6 개월 전 북한 천주교의 중심지인 덕원 수도원이 폐쇄되었고 독일과 한국인 신부들이 체포되었다. 함흥교구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신부들이 체포되었고 원산과 사리원에 있던 신학교도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해산되었다. 남한으로 도주한 많은 천주교인들이 천주교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평양의 주교와 신부들 그리고 신의주의 신부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한 교구에는 20 여 명의 천주교 신부들만이 남아 있었다.¹¹⁹

1946 년 토지개혁으로 북한의 불교 사찰과 재산은 몰수되었다. 북한은 불교 승려들에게는 식량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활발하지 않았던 북한의 불교는 더욱 더 쇠약해 갔다.¹²⁰

II. 탄압의 제 2 단계: 한국전쟁(1950- 1953)

1950 년 6 월 남과 북의 전쟁이 시작되고 대규모 공중폭격이 진행되었다. 한국 전쟁은 신념, 소속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무고한 한국인들과 한국 땅을 거대한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북쪽에서 체포되어 있던 많은 종교인들은 처형당했다. “나머지 모든 천주교 신부들은 감금되었다.”¹²¹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북한은 ‘부산 한계선’까지 남진했다. 그 때 북한 군은 그들이 점령한 서울과 여러 도시에서 여러

¹¹⁸ 천도교 중앙본부, *천도교: 우주의 종교(Chondokyo: Religion of the Cosmos)*, 서울, 2002 년, p. 138.

¹¹⁹ 조셉 김 신부와 존 정(Father Joseph Kim and John Chung), *한국 천주교: 어제와 오늘(Catholic Korea: Yesterday and Today)*, Catholic Korea Publishing, 서울, 1964 년, pp. 341-342.

¹²⁰ 1945 년에서 1950 년 사이에 38 도선 이북 지역에서 종교인들이 포섭되고 억압받는 동안, 38 도선 이남, 특히 남서지역(전라도)과 제주도에서 맑스주의자와 다른 좌파들이 대거 억압받았고 상당한 폭력적 유린을 당했다.

¹²¹ Kim and Chang, *천주교 한국(Catholic Korea)*, op. cit., p. 343.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거기에는 감리교 감독인 양주삼, 천주교 주교인 제임스 번(James Byrne) 그리고 다른 95 명의 외국인과 52 명의 한국인 천주교 신부들이 있었다.¹²² 미군 장군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극적인 인천 상륙이 이어지고 미국과 남한 군이 북진할 때 북한군은 퇴각하면서 남한에서 체포했던 기독교와 천주교 지도자들을 북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많은 사람들이 북송 도중 혹은 그 이후에 죽었다.¹²³

그 후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38 도선을 넘어 평양을 탈환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연합군을 환영했다고 한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미군과 한국군이 38 도선 이남으로 다시 후퇴했을 때 다수의 종교인들을 포함한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서 그리고 북한의 동쪽 해안의 항구도시를 통해서 남으로 피난했다.¹²⁴ 한 한국의 학자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10%에서 14%의 사람들이 1945 년과 1953 년 사이에 남한으로 탈출했거나 피난했다고 한다.¹²⁵

그리고는 50 여 년이 지난 뒤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서 “북한 내의 종교인이 왜 그렇게 적으나”는 질문에(유엔에 제출한 북한의 통계에 따르면 종교인은 인구의 0.2%)대해 유엔 북한 외교관들은 이렇게 답변했다. “종교인들 중 많은 숫자가 한국전쟁 도중에 죽었다. 구세대 종교인들은 죽어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종교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¹²⁶

III. 제 3 단계: 완벽한 억압(1953 년부터 1960 년대 초기까지)

1960 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종교와 신앙은 철저히 억압되었다. 이런 완벽한 억압은 사회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관계, 경제, 문화,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의 철저한 동원과 변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¹²⁷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선택했으며,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한국전쟁을 재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었다.¹²⁸ 북한이 비록 한국전쟁 전에는 아직 사회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인민 민주주의’라고 간주되었지만, 전쟁 이후 그리고 스탈린의 사망 이후에는 소련의 ‘수정주의’의 길을 따르지 않고¹²⁹

¹²² 장위조,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와 시저(Christ and Caesar in Modern Korea)*, op. cit., p. 158.

¹²³ 천주교 한국: *어제와 오늘(Catholic Korea: Yesterday and Today)*에는 번 주교를 포함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로마 천주교의 운명에 대해 충실한 수치 보고가 있다. pp. 341-560 참조

¹²⁴ 필자와 탈북자의 인터뷰, Fort Lee, 뉴저지(NJ), 2005 년 4 월.

¹²⁵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북한에서의 위기(Crisis in North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 214.

¹²⁶ 김홍일(Kim Hong Il), UN Doc. DRPK, 30/10/2001, CCPR/C/SR. 1946, Summary Record.

¹²⁷ 암스트롱(Armstrong), *북한혁명(North Korean Revolution)*, op. cit., p. 243

¹²⁸ Alexander Gonsharov, John Lewis and Xue Litai,, *불확실한 파트너: 스탈린, 마오 그리고 한국전쟁(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참조할 것,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년, p. 213.

¹²⁹ 소련의 ‘수정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서구와의 평화적 공존, ‘개인 우상화’의 폐기, ‘사회주의적 합법성(임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완곡 표현)에서의 탈피’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간주된다.

오히려 루마니아나 알바니아, 중국과 같이 ‘민족적 스탈린주의’의 길을 가게 되었다.¹³⁰

‘민족적 스탈린주의’는 북한에서 수십 년이 아니라 4-5년 안에 강제 동원을 통해 중공업을 이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사상 캠페인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는 북한판 중국의 ‘대약진 운동’으로서 개인 상업의 억압과 농업의 사실상의 협동 농장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¹³¹ 동시에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내에서 그의 잠재적 반대파를 숙청했다.¹³² 초기에는 조선노동당 내에 실제 반대세력이든 아니면 반대세력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든, 혹은 심지어 김일성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조작해가면서 공개 재판을 통해 숙청했다. 사형은 아주 빈번하게 집행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평생 공산주의 혁명가로 살아온 사람들도 미국과 남한의 간첩이었다고 자백하거나 간첩으로 고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후로 공개 재판은 중단되었으며, 대신 정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납치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의 전체인구를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 계층 51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북한의 악명 높은 ‘성분’ 제도가 1957년에 시작되었다.¹³³ 이 ‘성분’ 제도를 완성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이 성분 제도는 현대에 존재하는 가장 강압적인 사회공학적 성공작’이었다.¹³⁴ 이 세습적인 성분 제도 속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주거, 고용, 교육, 여행, 건강 그리고 식량배급 등의 기회가 결정되었다. 이 성분 제도는 1945년 당시 가족 출신 배경이나 개인의 당성에 기초한 것이다. 종교인들 - 기독교인, 불교신자, 천주교인 그리고 유교도인 - 은 ‘적대계층’으로 각각 34, 35, 36 그리고 37 분류에 지정되었다.

1958년에는 “5호담당제”에 이어 ‘인민반 제도’를 설치했다. 인민반은 사상교육과 바른 정치 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역 마을 모임으로 모든 북한 인민들이 소속되어야 한다.¹³⁵ 인민반제도는 다양한 동원 홍보활동을 위한 망조직으로도 활용되었다. 이 보고서를 위해 증언한 탈북자들에 의하면 ‘인민반’의 임무 중

¹³⁰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북한에서의 위기(Crisis in North Korea)*, op. cit.

¹³¹ 1957년의 “결의안 102호”는 사적인 곡물 거래를 막고 농산물은 모두 국가에서 사들일 것을 요구했다.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참조, op. cit., p. 101.

¹³² 이들 중 한국 전쟁 전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갔던 토착 좌익인 ‘국내파’가 있었다. 이들은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들어갈 때 남한에서 봉기를 일으키지 못했던 이유로 회생양이 되었다. 2차 대전 동안 모택동의 인민 해방군과 함께 했던 ‘연안파’들은 친중이라고 해서 숙청당했고 ‘소련파’는 소련에 살았었고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민족주의자들로서 이들은 소련 ‘수정주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숙청되었다.

¹³³ 이 성분 제도는 “반혁명 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1958년 5월 30일), 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의 특별 결정으로 생겨났다.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참조, op. cit., p. 181.

¹³⁴ Helen Louise Hunter, *김일성의 북한(Kim Il Song's North Korea)*, Praeger, Westport, Conn., 1999년, p. 5. 성분체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pp. 3-13.

¹³⁵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op. cit., p. 181.

하나가 수상한 사람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예배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어렵다.

북한 내각 149 호 결정으로 인해 ‘적대계층’의 사람들을 여러 지방의 산악지역으로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했다.¹³⁶ 대규모의 숙청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북한역사의 대 마녀 사냥’이라고 명명되었고 1958 년과 59 년 사이 9 개월 동안은 한국전쟁 기간을 포함한 이전의 13년 기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 유린당했다.¹³⁷ 이 과정에서 평양에 있던 종교인 가족들은 동해안의 공업도시로 강제로 이주되었다.¹³⁸ 이후 처형당한 종교인들의 가족들을 포함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15 호 관리소인 요덕수용소 내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용평리 완전통제구역으로 보내졌다.¹³⁹

이 때까지 비프롤레타리아 정당의 지역 조직들(조만식의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철저히 억압받았다. 때문에 이들 정당에는 오직 소규모 ‘중앙위원회’만 남고 이 중앙위원회도 친노동당 세력들이 장악하여 ‘남한에 있는 사회단체들과의 통일 전선 사업에 활용’되었다. 이는 1959 년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부 부장이었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소련 외교관에게 설명한 것이다.¹⁴⁰

김일성 개인 우상화는 1958 년 김일성의 직위가 ‘수상’에서 ‘수령’으로 바뀌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김일성 원수 혁명 활동 연구실이 1959 년 중반까지 거의 모든 정부 기관과 공장, 협동농장 그리고 전 지역의 학교에 건설되었다”고 북한의 공식 역사책에 서술되어 있다.¹⁴¹ 예배 장소와 분위기가 흡사한 연구실에는 이 조사에 인터뷰했던 모든 탈북자들이 실제로 참석했던 경험들이 있었다.

북한을 완전히 전체주의화 하기 위한 노동당 정권의 야망으로 인해 대안 사상,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집중 억압을 받았다.¹⁴² 러시아인 한국학 학자가 최근에 묘사한 바에 의하면:

1950 년대 반기독교 선전은 광적인 단계에 다다랐다. 모든 종교 예배는 금지되었고 특히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악한 가르침’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교회는 1950 년대 중반까지 다 문을 닫았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남아있을 정도로 불운하고 순진하고,

¹³⁶ 같은 책, p. 182.

¹³⁷ 같은 책, p. 182.

¹³⁸ 인터뷰에 응해준 한 저명한 교포 지도자의 가족은 평양에서 함흥으로 이주되었다. 이승만 교수와의 인터뷰, 리치몬드, 2005 년 4 월.

¹³⁹ 요덕수용소 수감자인 김영순 씨와 필자와의 인터뷰, 2005 년 4 월

¹⁴⁰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op. cit., p. 199.

¹⁴¹ 조선 전사(*Chosun Chonsa*), vol. 29, p. 171,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에서 인용, op. cit., p. 200.

¹⁴² Armstrong, *북조선혁명(The North Korean Revolution)*, op. cit., p. 242.

어리석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1950년대 말에 ‘미국의 간첩’으로 몰려 숙청당했다.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마저 곤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북한의 정교한 세습 신분 제도 하에서 기독교인들은 적대계층의 37번째에 속하게 되고 그들의 생이 다할 때까지 그 오명은 남아있었다.

한편 관제 언론은 반기독교 교육을 과대 선전함으로써 북한사람들을 세뇌했다. 초기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미국의 장기적 침략 계획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목사들과 활동가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급을 받는 간첩 혹은 파괴 분자로 묘사되거나 순진무구한 북한사람들을 살해하는 가학성 변태성욕자로 묘사되었다. 북한 소설에서 선교사들은 한국 어린이들의 피, 눈 등 신체의 일부를 팔기 위해(당시는 장기이식 이전 시대로 현실성 없는 이야기였으나 어쨌든 효과적인 선전이였다.) ‘임상치료’에서 어린이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북한 기독교의 이러한 ‘재생’은 1950년대 말의 북한 소설에 또 하나의 흥미 있는 소재였다. 이런 소설의 주인공은 처음에는 음모적인 선교사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에 의해 잘못 인도되어 어리석게도 기독교인이 된다. 하지만 곧 모종의 사고나 개인의 고통스런 체험을 통해 기독교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제국주의자의 사상적 독’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침내 계몽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미국의 잔인성을 다루는 선전 센터인 신천 박물관(대부분이 조작임)에는 1900년 전후로 활동했던 주요 미국 선교사들의 다양한 사진들을 볼 수 있다. 이 사진들에는 “조선으로 기어들어온 미국인 선교사들은 옷 속에 단도를 감추고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다.

195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 제 기능을 하며 남아 있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스탈린보다도 훨씬 폭압적이었다.¹⁴³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모든 탈북자들은 이런 반종교 선전에 대해 언급했다.

다른 한국학 학자는, “1960년대까지 북한의 사상가들은 공산주의를 민족 국가를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1970년대까지 김일성 우상화는 사실상 인민종교가 되었다. 다른 종교적 정치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수령 개인 숭배는 유교나 일본의 신토, 심지어는 기독교의 핵심 상징들을 융합하면서 김일성을 조선의

¹⁴³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Korea Times*, May 16, 2005.

메시아로 만들었다.”¹⁴⁴ 다음 장에서는 이 배타적이고 광적인 인민 종교에 대해 더 살펴볼 것이다.

¹⁴⁴ Stephen Linton, *한국 시민 종교의 패턴*(*Patterns in Korean Civil Religions*), Ph.D. thesi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1989 년, p. 382.

제 7 장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그리고 유일사상체계의 대체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한국의 전통 종교 사상에 대한 억압으로 생겨난 정신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북한 정권은 종교적 우상 숭배의 특징을 지닌 이념체계를 만들었다. 인터뷰에 응해준 탈북자들은 유일사상체계의 의식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탈북자들은 다른 모든 북한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런 의식에 참여해야 했다. 이 사상 체계는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김일성혁명사상, 또는 유일사상체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 용어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상호 교차사용된다.¹⁴⁵

문자 그대로 주체는 ‘지배자, 주인, 소유권자, 통치자, 중심’ 등으로 번역되는 주와, ‘몸, 전체, 핵심, 실체’ 등으로 번역되는 체, 이 두 단어의 조합이다.¹⁴⁶ 주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담당하는 존재, 객체가 아닌 ‘주체’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영어로는 ‘self-reliance’로 번역된다. 이 주체라는 말은 외국으로부터 수입, 투자, 경제 지원을 거부하는 경제적 고립이나 자급자족으로 오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뜻은 그렇지 않다.¹⁴⁷

비종교적 맥락에서 주체사상

세속적 의미에서 자주(自主, self-mastery)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주체는 김일성에게는 조선노동당 내의 친중, 친소파를 공격하거나 한국 정부를 미국의 ‘앞잡이’로 공격하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김일성에게 있어서 주체는 스탈린 사후 소련 ‘수정주의’나 문화혁명 기간의 모택동주의, 즉 중국의 ‘교조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근거를 주었다. 그리고 최악의 중소 분쟁 기간 동안에도 김일성과 북한을 독립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해준 명분이 되었던 것도

¹⁴⁵ 김정일이 쓴 몇 개의 문구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체사상은 우리당의 유일한 사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 이론 그리고 방법을 주체사상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을 수행해 나갈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Pyongyang, 1995년)*, 각각 pp. 149 and 117에서 볼 수 있다.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중요성을 가진 심오한 이해와 함께... 사상이론의 완전한 체계 그리고 주체의 방법론... 이것은 김일성 동지의 위엄 있는 이름과 결합된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 과학 세미나 선언(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Seminar on the Juche Idea)”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Antananarivo, Democratic Republic of Madagascar, September 30, 1976, *주체: 독립의 깃발(Juche: the Banner of Independence,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Pyongyang 1977년)*에서 인용.

¹⁴⁶ 서대숙(Dae Suk Suh), *김일성(Kim Il Sung)*, op. cit., p. 301.

¹⁴⁷ Charles Armstrong,, “우리 식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대 이후의 북한 사상”(A Socialism of Our Style: North Korean Ideology in a Post Communist Era) in Samuel Kim (ed.) *북한의 대외 관계(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op. cit., p. 33.

주체였다. ‘김일성주의’는 김정일이 처음 만들었던 용어로 김일성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에게도 스탈린과 모택동처럼 하나의 ‘주의’를 선사해 주었다. 그 ‘주의’는 이미 자신들의 ‘주의’를 갖고 있었던 스탈린과 모택동에 둘러싸인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작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김일성에게 그들과 경쟁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비종교적 차원에서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이론으로 제시되었으며, 김일성은 맑스, 레닌의 후계자로 자리매김되었다. 김일성에 따르면 맑스는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한 이론가로서 노동자 계급의 혁명 투쟁을 위한 안목과 이론을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레닌은 독점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인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가로서 국가권력의 혁명적 장악을 위한 전략가였다. 하지만 레닌은 ‘사회주의 건설’을 실행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맑스-레닌주의의 깃발’ 아래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강조는 필자가 함)’의 이론가와 전략가가 된 사람은 바로 김일성이었다. 김일성의 이름으로 평양에서 출판된 저술들은 김일성의 정책, 이론, 방법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편집한 것이다. 제 6 장에서 민족적 스탈린주의’라고 정의 내린 이런 내용들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활용되었고 실행된 것이다.¹⁴⁸

좀 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진 주체사상

주체사상에 기반을 한 유일사상체계인 김일성주의는 1960, 70년대 비종교적 사회, 정치 이론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김정일은 대학 졸업 후 조선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맡게 되는데, 여기서 김정일은 소련과 일본에서 철학을 공부한 황장엽의 이론적 도움을 받아 김일성주의를 철학적 수준까지 발전시킨다. 이로써 주체사상은 철학적 보편주의와 민족주의적이며 종교적인 우상 숭배 색채를 강력히 갖추게 되었다.

몇몇 주체 철학 연구자들은 김일성주의가 고전적 맑스주의의 ‘계급의식’을 ‘전투적 혹은 급진적 민족주의로서의 민족의식’¹⁴⁹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한다. 주체라는 말에서 ‘주(主, self)’는 고도로 민족주의적인 의미이며 독립 또는 자존(self-reliance)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이다. 한 주체 철학 연구자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 문명은 한반도에서부터 기원하고, 한국인은 자본주의적 물질주의, 퇴폐적 문화와 도덕적 부패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신성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선택 받은 민족이다. 이 민족중심주의는 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더욱 더 강조되었다. 그래서 북한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질문해보면, 학습의 목적은 제국주의의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한다. 그 믿음은 그들의 선민 의식으로 인해

¹⁴⁸ 주체! 김일성의 연설과 저작(Juche! The speeches and writings of Kim Il Sung), edited by Li Yuk-Sa, Grossman, New York, 1972년

¹⁴⁹ 서대숙(Dae Suk Suh), 김일성(Kim Il Sung), op. cit., p. 304.

강화된다.”¹⁵⁰ 김정일은 주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김일성은 우리 민족을 되살리며 신성한 혁명 투쟁에서 조선 민족을 지도하는 구세주이다.”¹⁵¹ 김정일은 계속해서, “우리는 혁명을 하고 있다. 미래의 인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미제국주의에 대항한] 인류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다.” 고 말한다.¹⁵²

김일성의 전기를 쓴 학자에 의하면, “김일성에게 있어서 주체는 소련으로부터 독립 노선을 취하기 위한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통해 제 3 세계 비동맹국가들의 사상가이자 지도자로서 선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그의 이상숭배가 메시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김일성은 우주의 진리로써 그의 사상을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¹⁵³ 김일성종합대학교의 한 주체 이론가의 설명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영생불멸의 진리’이다. 이 말은 남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학을 설명할 때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할 때에도 사용한다.¹⁵⁴

한 북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일반적인 정치 사상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과 정권의 정통성 옹호를 목적으로 한 가치 체계가 되었다. 인민들에게 그 가치를 주입시키는 방법은 종교 집단이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¹⁵⁵ 다른 전문가의 말로는, “주체사상은 민족주의 통치 사상에서부터 정치 이념과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상화 사상으로 전환되었다” 고 한다.¹⁵⁶ 일반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이상화로 배우는 의례의식은 문건 암기와 낭송, 초상화 청소 등으로서 본 보고서 면담에 응한 탈북자들도 같은 설명을 했다.

더욱더 신성화 되는 김일성주의: 역사 조작과 신화 창작

김일성의 전기를 쓴 한 학자에 의하면 김일성이 1955 년 처음 주체를 언급했고 1963 년까지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의 지시로 조선 역사는 조작된다. 1970 년대에 출판된 김일성 저작에는 1930 년대의 김일성 연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18 살의 나이에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들에게 주체사상에 대해 강의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출판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았던 것이다.

¹⁵⁰ Han S Park, *북한: 비관습적 지혜의 정치(North Korea: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Lynne Rienner, Boulder, 2002 년, p. 47.

¹⁵¹ 김정일, “혁명에 대한 주체의 관점을 세울 데 대하여(On Establishing the Juche Outlook on the Revolution)”, 김정일, *주체사상을 수행해 나갈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Pyongyang, 1995 년, p. 203.

¹⁵² 같은 책, page 211.

¹⁵³ 서대숙(Suh), *김일성(Kim Il Sung)*, op. cit., p. 301.

¹⁵⁴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주체 이론가가 박한식 교수에게 언급한 것이다.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op. cit., p. 16.

¹⁵⁵ Park, *북한: 비관습적 지혜의 정치(North Korea: the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op. cit., p. 41.

¹⁵⁶ Oh and Hassig, op. cit., p. 21.

유교 사회 문화의 성격에 맞게 김일성 가계는 다섯 세대에 걸쳐 신성한 혁명적 소명을 타고난 것으로 묘사된다. 1980년대 초기에 공식 조선전사의 신판이 출판되었는데, 콜럼비아 대학교의 한 한국학 학자는 33권의 절반 이상이 김일성의 생애와 그의 가족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조선시대에서 근대 한국으로의 전환기 역사는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혹은 조선왕조의 몰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19세기의 외국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한 저항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근대 한국 역사는 1866년 대동강을 타고 올라오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성난 군중의 공격으로 시작된다.”¹⁵⁷ 이 공격으로 스코틀랜드 성경 협회(the Scottish Bible Society) 소속 한 영국인을 포함해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해 당했다. 이 조선 전사의 내용에 의하면 성난 군중은 김일성의 증조부인 김응우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콜럼비아 대학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의 근대화와 북한 정권의 등장은 반제국주의 저항과 김일성 가계의 지도력과 불가분의 관계였다”고 한다.¹⁵⁸

북한의 주요신문들은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바다를 진정시키는 선원들 일화를 신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신화에서 한민족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신성한 산인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발표되었다. 나무들에서 글씨가 새겨져 김정일의 출생을 알려주었다고도 하고 하늘에서는 그의 출생을 알리는 쌍무지개가 나타났다고도 한다. 이는 무속신앙과 연관 있는 주술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김정일은 하바로프스크 근처의 소련 밀영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호주의 한 한국 전문가는 좀 더 냉소적인 이야기를 한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1973년부터 김정일은 인간적 카리스마의 부족이나 혁명 또는 국가를 위한 어떠한 업적도 없다는 사실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자신의 아버지를 신격화하고 가족 전체를 신과 같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는 황장엽의 도움을 받아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준 종교적 교리로 만들었다.”¹⁵⁹

북한의 지도적인 한 주체 철학자는 한 재미교포 학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주체는 ‘종교화’되지 않고서는 철학적 체계로서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다.”¹⁶⁰ 한 한국 역사학자에 의하면, 김일성을 ‘우러러 보다’라는 북한 용어는 문자 그대로 종교적으로 ‘그리스도를 존경하여 받아들이다’라고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뜻이다. 이는 현세의 그리스도로서 김일성을 내세우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¹⁵⁷ Charles Armstrong, “우리식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후 시대의 북한 사상”(A Socialism of Our Style: North Korean Ideology in a Post-Communist Era) in Kim (ed)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op. cit., p. 32.

¹⁵⁸ 같은 책, p. 32.

¹⁵⁹ Gavin McCormack, *Target North Korea*, Nation Books, New York, 2004년, p. 68.

¹⁶⁰ Park, op. cit., p. 36.

보여주는 것이다¹⁶¹. 다른 재미 한인 주체사상 연구자에 의하면, “김일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인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주체사상 체계 내에서 영구 불멸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¹⁶²

인간과 사상 교육의 숭고함

북한의 사상과 신념의 유일체계로써 주체사상의 현재적 모습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주의의 몇 가지 다른 측면들을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종교 교리로써 인간의 우월성에 대한 구체화이다. 이런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김일성주의는 노동당의 ‘국가 권력’과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해 인간의 의식성을 ‘재생’, ‘부활’시킨 것이다. 맑스 유물론 이론에서 인간의 의식성은 ‘생산양식’에 종속적인 위치에 불과했다.¹⁶³ 평양에서 출판된 주체 관련 저작물에 김일성을 붙을 발견한 프로메테우스에 비유한 사실이 있는데 김정일은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는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칙을 발견해 내셨다.”¹⁶⁴ 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 저작물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다. 더욱이 김정일에 의하면, 김일성은 “주체 철학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법칙과 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일성은 새로운 과학적 기초 위에 사회주의를 수립하였다”고 한다.¹⁶⁵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내려 주었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그리고 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다.”¹⁶⁶ 어쨌든 인간의 의식이 인간이 처한 환경을 결정한다는 이 ‘인간 중심’ 사상의 새로운 사회주의는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이데올로기 세뇌 작업을 동반한다. 김정일은, “물질적 요새와 함께 반드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해야 하며,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¹⁶⁷ ‘인간의 변화’는 ‘대중의 사상적 개조’를 통해서 성취된다. 면담한 탈북자들은 대중의 사상 개조 활동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진술했다.

주체사상에 있어서 집단주의와 지도 이론

¹⁶¹ Cumings, *태양에서 한국의 위치(Korea's Place in the Sun)*, op. cit., p. 410.

¹⁶² Han S Park, op. cit., p. 46.

¹⁶³ 주체: 독립의 기치(*Juche: the Banner of Independence*), op. cit., p. 314.

¹⁶⁴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주체사상을 수행할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에서 인용, op. cit., p. 388.

¹⁶⁵ 이 새로운 과학적 사회주의 법칙은, “모택동의 외투 속의 주희, 공산주의 병 속의 신유교주의 라는 인상을 한국 학자들에게 남겼다.” ‘리(理)’와 ‘기(氣)’라는 신유교의 범주에서 주체사상을 설명한 내용은, 브루스 커밍스(Cumings), *태양에서 한국의 위치: 근대사(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orton, New York, 1997 년, pp. 404~413 참조. ‘주체사상 안에서 유교’에 대해서는 Park, 북한: 비관습적 지혜의 정치, (*North Korea: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pp. 64-68 참조.

¹⁶⁶ “사회주의는 과학이다.”(Socialism is Science) *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 op. cit., pp. 309-391.

¹⁶⁷ 같은 책., p. 389.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의 내용은 주체의 ‘지도 이론’이다. 이 이론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초인적이고 준신격화된 속성을 부여하였다. 이 이론은 김일성이 이 왕국의 창립자이기에 김일성을 신으로써 숭배하게끔 했다. 그래서 북한 땅 전역에 제단 형식을 갖춘 수천여 개의 김일성 흉상과 초상화가 설치되었다.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는 이미 죽었지만 영원한 북한의 주석이 될 수 있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의와의 ‘담화’에서 김정일은 사람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주인이라는 명제에서 시작하여 ‘사회정치적 생명 또는 유기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가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수령을 친아버이로 모시고 받들며 당의 품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며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다.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 미풍이 차 넘치고 있다.¹⁶⁸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또한 집단주의적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상으로서의 집단주의 사상은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맑스주의의 발생은 집단주의사상의 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새롭게 발전 완성시키심으로써 집단주의 사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⁶⁹

한 한국학 학자는, “정치 이론사에서 집단주의를 이 정도로 명확히 이론화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한다.¹⁷⁰ 다른 한 전문가는 김일성주의식 집단주의의 주목할 만한 실례로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의 정확한 행진과 군무가 있는 아리랑 공연의 장대함과 ‘매스 게임’을 들었다. 경기장의 정면에 줄 맞춰 앉은 이만여 명의 사람들은 ‘인간 픽셀’이 된다. 그들이 시간을 완벽히 맞춰 일제히 지정된 색상의 플래카드를 들어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을 찬양하는 상징들을 만들어 내고 북한군의 용감무쌍한 형상을 만들어낸다.¹⁷¹

¹⁶⁸ 같은 책, p. 409. (한국학자들은 이를 신유교 ‘가족국가’의 현대적인 부활로 본다.)

¹⁶⁹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횡방은 허용될 수 없다(Abuses of Socialism Are Intolerable)” 주체사상을 수행해 나갈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 p. 378.

¹⁷⁰ Han S. Park, *North Korea: The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op. cit., p. 47.

¹⁷¹ McCormack, op. cit., p. 71.

사회적 생명의 고귀한 집단주의 개념으로 지도자는 한 개인의 뇌 혹은 심장에 비유된다. 지도자의 조직 즉, 조선노동당은 인간의 ‘척주’에 해당되고 국민은 ‘몸’에 비유된다. 김정일의 언급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서는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구별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경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단순히 이끌어주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과의 단순한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개별적인 사람은 당 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 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강조는 필자)

조직사상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합니다.¹⁷²

한 한국학 학자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신비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윤리 사상적 요소’와 도덕적이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혈통’을 합성하여 만들어졌다. 이 우수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지도자만이 명확히 정리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고 한다.¹⁷³

‘극한’까지 간 김일성주의 정통성

종교 자유라는 면에서 주체사상/김일성주의를 이해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이 사상이 ‘유일사상체계’라는 것이다. 주체는 국가에 의해 유일사상체제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 현상이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¹⁷⁴ “유일사상체계란 정권이 모든 국민들에게

¹⁷²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On Some Problems of Education in the Juche Idea),” 김정일, *주체사상을 수행해 나갈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 op. cit., pp. 156-157.

¹⁷³ McCormack, op. cit., p. 71. “몇몇 학자들은 김일성주의의 ‘유기체적 지도 이론’을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이론 틀보다는 파시즘의 이론적 변형인 ‘조합주의(corporatism)’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Cumings, , *Korea's Place in the Sun*, op cit, pp. 398-402.

¹⁷⁴ Park, op. cit., p. 171.

절대적 가치를 지니며, 진리 정의의 독점권을 가지고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게 된다.”¹⁷⁵

김정일은 ‘다원주의’는 김일성 유일사상과 대립되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¹⁷⁶ 주체사상의 철저한 일원론적인 접근은 이 보고서의 부록에 있는 두 개의 문서 ‘1998 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서문’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10 대원칙’ 문서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유일사상체계 10 대 원칙은 김정일의 후계자 승계 공식 지명 2 개월 후 1974 년 4 월에 발표되었다. 김일성주의의 유일 체계에 대해서는 면담한 모든 탈북자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유의사항

김일성 왕조가 북한을 지배하는 한 주체사상/김일성주의는 국가의 공식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 신정이론은 이 보고서에서 면담한 탈북자들의 머리속에 반복적으로 주입된 사상 신념체계로, 다른 모든 사상과 신념은 배제하도록 직장과 학교에서 교육된다. 하지만 과거 왕조 유교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행의 발생은 이 왕조가 천명을 어김으로써 정통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징조로 해석되었다. 1990 년대 중반 북한의 홍수와 가뭄, 비참한 기아와 경제적 붕괴는 주체사상/김일성주의, 적어도 김정일의 지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양의 정치적 특권층과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김정일의 주체사상 교시가 얼마나 권위를 잃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주체사상은 1997 년 황장엽의 남한 망명으로 어느 정도 그 빛이 바랬다. 평양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가 그의 망명과 함께 문을 닫았다고 한다.

김일성주의의 유일 교리는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위해 작은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1980 년대 말부터 시작된 종교 영역에 있어서 작은 변화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¹⁷⁵ McCormack, op. cit., p. 67.

¹⁷⁶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The Historical Lesson in Building Socialism),” 김정일, *주체사상을 수행해 나갈 데 대하여(On Carrying Forward the Juche Idea)*, op. cit., p. 299.

제 8 장

북한의 현대 종교 정책 및 실태

김일성 정권은 1960년대까지 대대로 내려오던 조선의 사상, 신념을 억압, 말살하고 그 자리에 주체사상/김일성주의 유일 사상 체계를 심어놓았다. 그럼에도 1970년대 국제 환경의 변화에 영합하기 위해 김일성 정권은 국가가 고도로 통제하는 한에서 종교 활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¹⁷⁷ 그것은 외국의 종교인들 중에 잠재적인 우군과 지원군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이었다. 김일성이 종종 외국 방문객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1960년대 이후 남한과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 조직과 운동이 ‘진보 운동’에서 혁혁한 역할을 했다.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북한에도 종교인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40년대 중반 노동당의 통제 밖에 있던 종교 활동을 선별적으로 활용, 흡수,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종교 ‘연맹’들을 부활시켰다.

북한이 종교 자유를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 종교 ‘연맹’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불교,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정교회 등의 협의회들을 통해 북한은 종교 활동을 감독, 통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에서 최소한의 종교 활동이 국가 통제 속에서 부활한 사실과 정부 감독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I. 기독교

오늘날 북한 기독교의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부류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 번째 부류는 노동당과 북한 정부가 후원하는 조선 종교 협의회와 구성원이거나 인가 받은 교회와 가정 예배 처소의 신자들이다. 가정 교회 또는 가정 예배 처소는 해방 이전 구 기독교인들과 그 후손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두 번째 부류는 해방 이전 기독교 신자였고 현재 공개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전히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가 후원하는 교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이들 중 일부는 국가 후원 교회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부류는 탈북한 뒤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의 영향을 받거나 한국 또는 재미 교포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¹⁷⁷ 1970년대 동남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최대 후견 국가들이었던 중국과는 사실상의 동맹을 맺고 소련과는 데탕트를 추진했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1983년 랭군 폭파 사건 등 몇 번의 한국 대통령 암살 기도가 있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무장 혁명 투쟁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995 년 이후 중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로써 북한 내에서는 처벌 대상이다. 한국으로 망명한 국가보위부 출신 두 간부들은 자신들의 일 중 하나가 이 탈북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것이었음을 고백했다.¹⁷⁸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탈북자들을 색출하는 것이 북송 탈북자들을 심문하는 목표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 부류의 기독교인들, 즉 해방 이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개인적으로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이다. 즉 북한 헌법에 기재된 ‘종교, 신념의 자유’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과 공인 종교들의 실태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아주 제한적이다. 북한은 이런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한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들은 아주 제한된 소수의 종교 기관 관리들과만 접촉할 수 있다.¹⁷⁹ 게다가 본 보고서의 인터뷰에도 나타나지만 많은 북한인들은 공식 허가된 종교 활동을 거의 접해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가정 교회/ 가정 예배 처소

1974 년부터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이 가정 예배 처소에서 회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한다.¹⁸⁰ 물론 예배 중 노동당원이나 경찰들의 입회가 있어야 한다. 가정 교회에 대한 가장 초기의 통계는 1981 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고기준 목사가 재미, 재유럽 교포들에게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다.¹⁸¹ 그는 북한에 500 개의 가정 예배 처소가 있으며 5,000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¹⁸²

1988 년 조그련의 대표들은 캐나다 교회 간부 방문단에게 “기독교인 10,000 명 중 6,000 명은 조그련 구성원이다”고 했다. 조그련의 구성 단위는 ‘가정 예배

¹⁷⁸ 인터뷰는 2005 년 4, 5 월경에 있었다.

¹⁷⁹ 북한의 3 대 교회 중 하나인 봉수 교회에서 설교를 한 외국인 대표단들도 봉수교회 신자들과의 개인적 대화는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목사와 공식 대표들과만 대화가 허용되었다.

¹⁸⁰ 북한의 ‘가정 교회’는 중국의 ‘가정 교회’와 다르다. 중국에서 가정 교회는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다. 북한에서 ‘가정 교회’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공식 조직이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할 밖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활동은 처벌 대상이다.

¹⁸¹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참조.

¹⁸² *Christian Century*, p 48, 1982 년 1 월 20 일, 강위조 p131 에서 인용. 한국 문헌에서 개신교도는 기독교인으로, 카톨릭교도들은 카톨릭으로 명명된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개신교인들을 일컫는다.

처소'이며 그 중 50 여 개는 평양에 있다고 했다.¹⁸³ 2002 년 북한은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500 개의 가정 교회 또는 가정 예배 처소가 있으며 12,000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보고했다.¹⁸⁴ 2002 년 12 월, 조그런은 12,300 명의 등록된 기독교인이 있으며 513 곳의 가정 예배 처소가 있다고 주장했다.¹⁸⁵

북한의 공식 주장에 따르면 1981 년과 2002 년 사이 기독교인의 숫자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 신자가 늘었다기 보다는 신자들의 추정치와 조그런 '구성원' 숫자들에 대한 통계의 부정확성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그런이 말하듯 자신들은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¹⁸⁶ 가정 예배 처소의 숫자는 25 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본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 중 8 군데의 가정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다. 평양에 5 개, 개성, 성천, 황해남도에 각각 1 개씩이었다. 신도들은 일제 시대 때부터 믿음을 유지해온 소위 '구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악보도 없는 찬송가를 기억을 더듬어가며 찬양했다.

본 보고서에서 인터뷰를 한 탈북자들의 숫자가 어떤 단정적 결론을 내릴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가정 교회나 조그런의 중앙, 지역 조직에 대해 접해보거나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70 년대 이후 가정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웠다. 북한을 자주 방문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한 전문가는 북한에 500 개의 가정 예배 처소가 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4 대 교회

1950 년대 후반과 1988 년 이전 북한에는 개신교 및 카톨릭 교회 건물이 전혀 없었다. 1988 년 11 월 평양 교외의 한 동네 이름을 딴 봉수 교회가 세워졌다. 알려진 대로 그곳에는 250~350 명의 신자들이 있다.

역시 1988 년에 장충 성당이 문을 열었다. 북한은 유엔에 800 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으나 신부는 없다고 보고했다. 장충 성당은 바티칸 교황청과 직접 관계는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황청은 북한의 천주교를 교회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천주교 서울 교구 산하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으로 간주한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교황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¹⁸³ 캐나다 기독교협의회 방북 보고서(1988 년 11 월 4 일~13 일), 캐나다-아시아 실무 그룹 에큐메니컬 잡지, *Currents* (현재 정간) 1989 년 1 월호 p. 5

¹⁸⁴ 유엔 문서(UN Doc. No. ICCPR/CO/PRK/Add.1), 5 2002 년 8 월.

¹⁸⁵ 2005 년 통일연구원 인권 백서에서 인용.

¹⁸⁶ *Currents*, op. cit., p. 6.

과거에 없었던 이 두 개의 새로운 교회가 문을 연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다. 인터뷰에 응했던 한 재미 교포 교회 간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언급했다. 하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는 외국 방문객들의 요구였고, 다른 하나는 중국정부의 영향인데, 중국은 1977-78년 문화대혁명 당시 몰수한 교회 건물들을 공식 인가된 교회 조직에 모두 반환하였다.¹⁸⁷ 북한인들은 중국을 자주 방문했었기 때문에 모택동 사후에 일어난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잘 알고 있었다. 한 고위 탈북자는 이러한 정책변화가 1988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축전은 한국의 1988년 올림픽 게임에 대항해서 생긴 것으로, 이 축전 행사 기간 많은 외국인들이 평양을 찾을텐데 교회나 사찰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철골 교회는 두 번째 생긴 교회로 봉수 교회보다 규모가 좀 더 작다. 1992년에 건립되었고 평양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터에 세워졌다고 한다. 90명의 신자가 있고 예배는 봉수 교회보다는 덜 형식적이라고 한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라는 이유 외에 북한의 다른 도시도 아닌 평양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운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2005년 중반 러시아 정교회 건축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한 인터뷰 응답자는 김정일이 러시아 기차 방문 길에 하바로프스크에서 러시아 정교회 건물을 본 뒤 평양에 이와 같은 교회가 있으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라 추측한다.¹⁸⁸ 이 교회 건축은 한국의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다.¹⁸⁹ 한 러시아 한국학 학자도 지적했지만 이상한 점은 “북한에 60여 년 동안 정교회 신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1945년에도 정교회 신자 숫자는 기껏해야 수백 명을 넘지 않았다.)”¹⁹⁰ 그럼에도 조선정교위원회는 모스크바의 러시아 정교회와 접촉하였고 여러 명의 북한인들을 러시아 정교 공부를 위해 유학시켰거나 시킬 예정이다.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의 상징적 중요성이 있다고 탈북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것은 북한에 존재하는 제단 형태로 생긴 건물 중에 교회에만 단상 정면에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신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현존 교회에서의 예배 현황

평양의 교회들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냐 하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한국의 한 NGO는 “봉수, 철골 교회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¹⁸⁷ 이승만 교수와 인터뷰, 버지니아 리치몬드, 2005년 4월.

¹⁸⁸ 언론에 따르면 김정일은 비행기 여행을 싫어한다.

¹⁸⁹ 이 지원은 교회 종을 침탈에 올릴 수 있는 기증기를 배에 실어 북한에 보낼 정도이다.

¹⁹⁰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 아시아 타임즈 인터넷판 서울, 2005년 3월 16일

아니라 교회 참석 지시를 받은 노동당 당원이라고 주장했다.”¹⁹¹ “지방 주민들은 교회 참석이 금지되어 있으며 예배는 오직 외국인들의 방문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¹⁹²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획득한 정보들은 위 주장과는 다르다. 봉수, 칠골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노동당이 통제하고 있는 듯 하다. 또 그 교회의 신자 등록 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¹⁹³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사회, 정치적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평양의 시민들은 단순 호기심에서 교회에 출석할 수는 없다.¹⁹⁴ 그러나 현재의 정보에 따르면 가정 교회 신도들처럼 평양의 세 교회 신도들도 해방 이전부터 교회에 다닌 구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결정적 증언은 평양 출신이자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서 한국 전쟁 후에 도미한 이승만 교수로부터 나왔다. 그가 봉수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전쟁 전 교회 청소년부에 다니던 사람들을 보았다고 한다.¹⁹⁵ 분명 교회 신도들 몇 명은 평양의 가정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평양의 구호지원 활동가에 따르면 몇몇 가정 교회 신자들은 가정 교회에서 격식 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여 봉수 교회를 나가지 않고 따로 소 그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평양을 수 차례 다녀온 세계교회협의회 전직 간부 한 사람도 신중하지만 비슷하 이야기할 한다. 이 사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자는 해방 이전부터 기독교 집안이었던 사람들이거나 일부는 노동당이나 안전부에서 보낸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¹⁹⁶ 그의 말을 들어보자.

“물론 사람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북한의 현 정치 체제 때문에 소수의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당 안전부 요원들 때문에 북한에도 진실한 기독교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¹⁹¹ “탈북자와 인터뷰 제 2부”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발간한 이메일 뉴스레터, 2005년 5월 11일

¹⁹² 통일연구원 백서 2005.

¹⁹³ 고위급 탈북자 진술, 워싱턴 DC, 2005년 7월.

¹⁹⁴ 이승만 교수와 인터뷰, 버지니아 리치몬드, 2005년 4월.

¹⁹⁵ 이 교수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전 공산당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많은 가족이 평양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교수는 한국으로 넘어와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갔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신학 공부를 하여 아버지처럼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예일대에서 신학 석사를 받고 시카고 신대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장로교 최고위직인 총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가족 상봉을 위해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인도주의 지원과 남북 화해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교수는 현재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유니온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는 2005년 4월에 이루어졌다.

¹⁹⁶ 이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탈북자들은 그 공산당원이나 안전부 요원들 중에도 “성경이 진실이다”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 물론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교회들은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자신의 지혜와 독특한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¹⁹⁷

과거에는 봉수, 칠골 교회의 예배가 간헐적으로만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995년 이후부터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구호 활동가들은 정기적으로 봉수, 칠골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교회는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참석하면 예배 때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없을 때는 정치적 메시지 없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을 설교한다고 한다.

II. 천도교

5장에 언급한 것처럼 천도교는 1890년대 중반 강력한 농민 대중 운동이었던 동학 항쟁의 파생물이다. 남북을 통틀어 천도교인들의 숫자는 해방 이후 급락했지만 남쪽 천도교 지도자인 최인국은 현재 한국의 5개 교구에 15만의 교인과 2만 7천의 교사가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천도교는 여전히 가장 큰 공식 종교이다.¹⁹⁸ 북한 당국은 북한에 1만 5천의 교인과 800개의 아파트 내 교당이 있다고 한다.¹⁹⁹ 하지만 남한의 천도교 지도자들은 북한의 교인, 교당 숫자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있다.

1946년 급진적 토지 개혁 이후 북한의 많은 천도교 농민들과 주민들은 노동당으로 흡수되었다고 한국 학자들은 말한다. 남쪽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공장노동자가 됨에 따라 천도교 교인들이 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천주교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천도교 지도자들은 남북 양쪽에서 모두 교세가 약화된 이유를 한반도의 분단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천도교의 교리는 한국민의 민족성에 맞고 따라서 천도교는 한반도의 통일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통일 이후 천도교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천도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순교한 창시자의 전근대적인 유교 도덕 정치 질서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 천도교 교인들은 한반도가 남, 북으로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정치가 좌, 우, 즉 공산주의 반공산주의로 갈라진 것 자체도 거부하고 두 정치

¹⁹⁷ 박경서, *화해/통일: 한반도에 대한 에큐메니컬적 접근(Reconciliation/Reunification: The Ecumenical Approach to Korean Peninsula)*, 아시아 기독교 회의, 홍콩, 1988년, p 26.

¹⁹⁸ 이 인터뷰는 2005년 4월이었다. Choe, Lee, du Barry는 *한국 전통의 근원(Sources of Korean Tradition)*이라는 책(vol. II, p. 377)에서 남한에 100,000의 천도교 가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995년 통계는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에서 천도교 교인이 28,000명 정도라고 말한다. op. cit., p. 170.

¹⁹⁹ 유엔인권상설위원회가 지적한 우려 사항에 대해 북한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유엔 문서(UN Doc # CCPR/CO/PRK/Add 1), 5 2002년 8월.

세력이 통일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²⁰⁰ 최근 한 천도교 지도자는 남과 북에서 둘 다 고위직에 올랐다. 현재 한국 천도교의 한 지도자는 북한 천도교 지도자의 아들이다.

종교로서 천도교는 아주 민족주의적이다. 천도교는 북한의 핵 무기를 거부하기 보다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통일 이후 한국이 4대 강국 안에서도 훨씬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쪽의 천도교 지도자들은 “김일성 대학에서 천도교를 공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북한에서 천도교를 전파할 자유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다른 남쪽의 종교인들처럼 남북의 화해는 북한에 자유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III. 현대 불교

유엔 인권상설위원회에 보고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는 60 개의 사찰, 200 명의 스님, 10,000 명의 불교 신도가 있다고 한다.²⁰¹ 일본에 있는 북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10,000 명 중 70%는 여성이라고 한다.²⁰²

평양에 있는 광범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절들은 산 속에 있다. 조선 시대 불교 억압 정책 이후 스님들은 일반인들이 접촉하기 힘든 산 속으로 내몰렸다. 한국 전쟁 이전 500 개 정도의 사찰이 있었다. 북한의 공식 주장은 이러한 “절들이 미국이 폭격에 의해 파괴되었고 스님들은 살해 되었다”는 것이다.²⁰³ 1946 년 토지 개혁이 불교계 성직자들에게 미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결과, 종교신자들에 대한 식량배급제도의 차별적 적용, 60 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식적인 종교억압정책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많은 탈북자들은 평안북도의 묘향산 보현사처럼 유명한 사찰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이 절들은 단순한 ‘문화 유적’일 뿐이며, 사찰을 지키기 위해 노부부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 사찰에서 불교 예식, 불법 학습, 명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²⁰⁴ 한국의 한 스님에 따르면 그가 북한 묘향산에 갔을 때 스님들이 법복을 입고 있었으며 팔만 대장경 사본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참고로 팔만대장경은 13 세기에 80,000 장의 목판에 불법(佛法)을 새겨 넣은 경전이다.

²⁰⁰ 천도교(Chondokyo), op. cit., p. 144.

²⁰¹ 유엔 인권상설위원회가 지적한 우려 사항에 대해 북한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op. cit., 유엔 문서(UN Doc. ICCPR/CO/DPRK/Add 1), 5 2002 년 8 월

²⁰² “인민 조선(The Peoples Korea),” 104 호 (104th issue) (www.korea-np.jp.pk).

²⁰³ 같은 책

²⁰⁴ 결혼을 하고 세속 옷을 입는 대처승은 일제 시대에 한국으로 도입되었다. 한국에는 천태종이 대처승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 사찰에 있는 사람들이 승려인지 아니면 문화재 관리원인지는 실제 그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교 의식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다.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1989 년 개설된 종교학과에 불교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불교도연맹이 운영하는 3년과정의 대학원 수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격을 갖춘 불교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8 년의 시간이 걸린다.²⁰⁵

조선불교도연맹은 1946 년에 처음으로 창설되었다. 이 연맹은 1980 년대에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여 1986 년 세계불교연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현재 조선불교도연맹의 위원장은 박태화로, 그는 연맹의 부위원장, 서기장과 마찬가지로 일제 시대 때 승려의 자격을 획득했다. 물론 지금은 모두 결혼하고 속세 옷을 입고 있다.

한국의 주요 종단인 조계종과 천태종은 북한의 사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절 중의 하나는 금강산 신계사이다. 이 곳은 남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데 지금은 북한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장이 쳐져 있다. 복원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찰은 개성에 있다. 개성은 DMZ 바로 건너에 있는 산업 공단으로서 현재 한국의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IV. 북한의 인가된 종교 단체: 종교 연맹

북한의 인가된 종교는 각각의 연맹 조직을 갖는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²⁰⁶,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²⁰⁷,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그리고 최근에 조선정교위원회가 있고, 각 연맹 지도자들의 협의 단체가 있다. 1940 년대 중반 북한 정권이 출범할 당시 조선유교연맹도 있었다. 이 단체들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들은 1950 년대 후반까지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0 년대 중반 이후 조선유교연맹을 제외하고 서서히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다. 조선정교위원회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와 당으로부터의 독립?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유엔에 “국가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국가는 어떤 종교도 간섭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²⁰⁸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북한의 종교 활동은 정부가 통제하는 종교 연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는 당과 정부의 외부 선전 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북한에서 허용되는 종교 활동은 해당 종교 연맹의 통제와 지도 하에 이루어지고

²⁰⁵ “인민 조선(The Peoples Korea),” (www.korea-np.jp.pk).

²⁰⁶ 1999 년 2 월 이전에 이 조직은 조선기독교도연맹이라고 불렸다.

²⁰⁷ 1999 년 6 월 이전에 이 조직은 조선천주교인협회라고 불렸다.

²⁰⁸ 유엔인권상설위원회가 지적한 우려 사항에 대해 북한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op. cit., 유엔 문서(UN Doc. ICCPR/CO/DPRK/Add 1), 5 2002 년 8 월,

있다. 여성, 청소년, 직능 단체들처럼 종교 연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조국전선)의 산하 조직으로서 통제를 받고 있다.²⁰⁹

이 조국전선은 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당은 북한의 여러 국가기관과 부문들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과거와 같은 교조적인 맑스-레닌주의적 정치 체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당-국가체제로 작동하는 국가이다.²¹⁰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노동당은 (김일성과 김정일 수령으로 대표되는) 뇌와 심장을 조선 인민의 “몸”으로 연결시켜 주는 ‘중추’ 또는 ‘척수’이다. 그리고 조국전선의 가맹 기관 단체들은 팔과 다리라고 할 수 있다.”

평양을 방문한 뒤 돌아온 독일의 교계 인사에 따르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은 전 루마니아 대사, 말타 대사였고 중앙재판소 소장을 지냈다. 이 독일인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다. 이 조직은 북한 정부의 외교 채널 중 하나로써 기능한다.” 고 말했다.²¹¹

북한 종교 연맹의 구조와 역할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직의 실체를 안다면 이들 연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그련은 각 도에 도 위원회와 50 개의 군 위원회, 그리고 500 개 (좀 더 정확한 수치로 513 개)의 가정 예배 처소와 두 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그련에는 총회가 있고 총회 사이에는 서기장과 사무국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사무국에는 선교부, 조직부, 재정부, 국제부가 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 아래 단위 조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위원장은 강영섭 목사로서 김일성의 삼촌이자 조그련 창시자인 강양욱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인터뷰 응답자는 강영섭 목사는 자신에게 이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한다.²¹² 조그련 사무실은 봉수 교회 옆에 있으며, 조그련 중앙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평양신학원도 그 옆에 있다.

²⁰⁹ 이 조직은 남북이 분단된 뒤 개명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계승한 것이다. 원래 북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평양에 본부를 두고 북한 정부에서 통제했지만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이었다.

²¹⁰ 노동당 대회는 더 이상 소집되지 않고 있다. 한국학 학자들에 의하면 김정일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가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보다 더 강력한 조직이라고 한다. 전통적 맑스-레닌주의에서는 당이 군대 통제권을 가진다.

²¹¹ Lutz Drescher, “위협은 일종의 지원 호소를 위한 제스처: 북한의 고정 이미지에 대한 문제 제기(Threatening Gestures as Cries for Help: Questioning an Overly Fixed Image of North Korea),”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Online*, 2004년 9월 21일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434B_ReligionII.html).

²¹²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영섭 목사도 김정일의 친척일 것이다.

1988 년 조그런 간부들은 캐나다 교회 방문단에게 자신들의 주요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기독교도들이 조국 발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 (2) 신도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정당, 사회 단체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 (4) ‘평화와 민족 화해를 위한 투쟁’에 복무할 것.²¹³

조그런의 역할 하나: 신자들의 권리를 옹호한다

“신자들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하는 조그런 간부들의 주장은 조그런 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탈북하여 중국 조선족 교회에 다녔거나 한국 또는 재미 교포 선교사와 만나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북한 사람들이 송환된 후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는 본 보고서 앞 부분에 잘 나와 있다. 조그런 간부들에게 탈북자 중 성경을 가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다 잡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에 대해서 묻자, 탈북자의 그러한 성경유입은 불필요한 위법 행위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1981 년경 조그런은 공개적으로 ‘인권 침해 중단과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주장했다.²¹⁴ 물론 이 주장은 북한의 숙청된 종교인이나 수감된 정치범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향한 것이었다. 1994 년에 조그런은 세계종교협의회에 한국의 비전향 장기수를 석방해야 하며 그들은 수감 기간 동안 “남한 정부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호소문을 보냈다.²¹⁵

조그런의 또 다른 역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

조그런의 다른 사회 단체와의 연대 활동과 ‘평화통일 투쟁’에 있어서 조그런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정보가 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조그런의 활동 사례는 1981 년 비엔나 알버트 슈바이처 하우스에서 열린 유럽, 북미 거주 한국 교회 단체들과의 회의를 들 수 있다.²¹⁶ 이 회의는 거의 매년 비엔나, 헬싱키, 아놀드샤임(Arnoldsheim,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처)에서 1991 년까지 지속되었다.²¹⁷

이 비정기적 모임이 1984 년부터는 정기적 에큐메니컬 협의회로 바뀌었다. 이 협의회는 일본 도시 이름을 따서 ‘도잔소(Tonzanso) 프로세스’로 불렸다. 이 곳에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는 유럽, 북미, 남, 북한을 망라하는 에큐메니컬 협의회에 대한 그들의 남한 지부 조직인

²¹³ *Currents*, op. cit., p. 5.

²¹⁴ 강위조, *현대 한국에서 그리스도와 시저(Christ and Caesar in Modern Korea)*, op. cit., p. 131 에서 인용.

²¹⁵ 조그런의 김인서, 함세환, 김용태를 위한 호소문 전문은 Park, *화해와 통일(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p. cit., pp. 91-93 에 있다.

²¹⁶ *Christian Century*, 1982 년 1 월 20 일, p. 48; 강위조, *Christ and Caesar*, op. cit., p. 131 에서 재인용. 위에 언급한 인권 문제 결의안 이외에도 이 모임에서는 남한에서 미군 철수와 미국의 남한 내정 간섭 중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반대도 주장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반대는 중국과 소련이 한국의 세계 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 계속되어왔던 북한의 입장이다.

²¹⁷ 강위조, p.13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지원을 얻어냈다.²¹⁸ 1985년 세계교회협의회 산하의 각 국가 지부 기독교인들은 평양을 방문했다. 1986년에는 에큐메니컬 협의회가 스위스 글리온(Glion)에서 연속적으로 열렸다. 남북한 간의 화해와 통일을 촉진할 목적의 교파간 회합이 도쿄, 워싱턴, 뉴욕,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열렸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대기근이 닥치자 남한의 종교인들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1997년까지 남북의 종교 모임은 북경, 금강산(현대그룹이 북한의 동해안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관광단지로 조성한 지역), 인천(남한의 서해안 항구도시) 등지에서 열렸다. 이러한 남북 교회 사이의 모임은 가끔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6.15, 8.15 광복절, 3.1절 등 기념일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V. 연맹이 존재하지 않는 종교

북한 종교 연맹 조직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는 종교 연맹으로 포괄되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는 그 종교를 허용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 절차 등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속 신앙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허가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연맹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점술과 궁합 등 무속 행위는 인간의 운명이 자연 현상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본다, 오늘날 북한의 이러한 무속행위는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며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유교에 대한 연맹 조직도 없다. 따라서 점을 보는 등의 무속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이나 유교의 의식을 거행하려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자기 신앙을 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원불교 같은 전통 신앙이나 통일교 같은 신흥 종교는 연맹 조직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남한에는 한민족의 시조 단군을 섬기는 종교인 대종교가 있다. 단군 신화 내용은 이렇다. 한민족의 건국 신화를 보면 환웅이 그의 아들 환인을 한반도로 내려 보낸다. 한반도의 북쪽 산에서 환인은 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만나고, 그 꿈은 마늘과 쪽을 먹고 사람이 되어 환인과 결혼을 한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이며 기원전 2457년 고조선의 첫 왕이 된다.²¹⁹

남한의 대종교는 7,000~11,000명의 신자가 있으며 109개의 교당이 있다. 북한에는 1993년 공식적으로 단군의 무덤과 유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종교

²¹⁸ KNCC는 한국의 양대 교파 연합 조직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CCK)이다. 이 두 조직은 잠정적으로 2007년까지 통합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다.

²¹⁹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 op. cit., p. 124.

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²²⁰ 동학의 한 갈래로서 또 다른 소수 종교인 증산교의 상황도 대종교와 유사하다. 원불교라는 종교도 있는데, 원불교는 부처님 상 대신에 완벽한 깨달음의 상징으로 일원상이라 불리는 완전 원형을 신봉한다.²²¹ 85,000~90,000 정도의 신자가 있고 500 개의 교당, 2,500 명의 교무가 있다.²²²

북한에 무속 신앙, 유교, 대종교, 증산교, 원불교 등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종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²²⁰ Armstrong, “우리식 사회주의: 냉전 후 북한의 이데올로기(A Socialism of Our Style: North Korean Ideology in a Post-Communist Era)” in Kim,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관계(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 Cold War Era)*, op. cit., p. 44.

²²¹ *한국의 종교(Religion in Korea)*, op. cit., p. 135.

²²² 같은 책, p. 170.

제 9 장

결론 및 정책 권고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결론

탈북자 40 명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북한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실상을 충분히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 인구가 2,200 만명임을 고려하면 이 40 명은 아주 적은 숫자다. 게다가 이 40 명은 그 어렵고 위험한 탈북의 과정을 견디어 내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북한 주민의 평균 수준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북한의 엄혹한 현실에 대한 무수한 미확인 정보가 있었지만 북한 내부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인들과 자유로운 의사 소통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언론인, 인권 조사관 등은 북한에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탈북자 40 명이 전하는 정보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전체 그림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폐쇄 사회를 보는 창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 그 창을 활짝 열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일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북한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감시와 국제법 상의 의무를 회피해 왔다. 과거 국제 기구는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문제도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를 꺼려했다. 다시 말해 북한 정부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자기 나라의 정보를 차단해 온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 당국은 수많은 탈북자가 증언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회피해 왔다.

다른 북한 인권 관련 자료들과 또 본 보고서의 탈북자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의 인권 정책과 실태는 명백히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 공식 이데올로기이자 유일 사상, 신념 체계인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의 강압적 확산과 강제 주입은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다른 사상,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이다.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공화국헌법도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종교

연맹들을 통해 종교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4개의 종교단체는 (곧 5개가 됨) 이들 종교 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대중 종교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속신앙이나 토속 한국 신앙을 위해서는 따로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이들 신앙인들은 자신의 종교 및 신앙을 표현할 수 없다. 게다가 종교연맹조직은 다른 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여러 기독교 교파나 불교 종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연맹체제는 북한 천주교와 바티칸의 교황이 왜 공식적인 접촉이 없는지, 또 왜 북한에 신부가 없는지도 잘 설명해준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면,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주관하는 활동은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 범위도 북한이 가맹국으로 있는 국제 종교 자유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는 턱 없이 미치지 못한다. 국제법은 종교 의식, 예배, 교육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종교 및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2005년 중반까지 북한에는 세 곳의 기독교회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교회는 모두 평양에 있다. 평양에는 북한 전체 2,200만 인구 중에 2백만 인구가 산다. 과거 한국 전쟁 전에는 북한의 여러 도시에 상당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다. 한편 북한 정부는 북한에 60여 개의 불교 사찰이 있다고 하지만 40명의 탈북자 누구도 거기서 스님을 보거나 불교 의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탈북자들은 그곳이 단지 문화 유적일 뿐이라고 했다.

국제 규범에서 보장된 다른 종교 활동도 북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종교 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한다거나 종교 서적을 출판, 배포하거나 교회 건물 밖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등의 활동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가 종교기관이나 허가받은 종교활동 이외의 사적 종교활동이나 인정받지 않은 종교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형, 고문, 구금, 수감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된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 주로 한국 전쟁 전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탈북한 뒤 중국에서 조선족이나 한국의 선교 단체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종교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는 종교 공동체를 인정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합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된 단체들에게만 종교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최근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이 언급했듯이, 국가의 종교 인정이나 국가가 조직한 종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적이거나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²²³

²²³ Para. 58, 유엔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특별 보고관 Asma Jahangir가 제출한 보고서, 유엔 문서(UN Doc. E/Cn.4/2005/61), 2004년 12월 20일

탈북자들 다수는 자신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라디오와 TV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 받고 들었던 반종교 선전에 대해 증언했다.²²⁴ 이러한 반종교 선전은 차별과 불관용을 거부해야 하는 모든 국가들의 국제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²²⁵

탈북자의 면담과 이 보고서의 다른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북한 당국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범과 부합하는 종교 및 신념의 자유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정책 권고

본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여 북한 당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해야 한다. 이 조치들은 북한 당국이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종교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 인가 종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또는 중국에서 외국 선교 단체와 접촉한 북한인들을 구속하거나 사형하는 등의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
 - 15호 요덕 수용소의 ‘완전 독재 대상 구역’이라고 불리는 ‘관리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다 다른 수용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
 - 주체사상/김일성주의 이외의 신념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의 강압적인 집행을 중단할 것
 - 유교 및 무속 신앙 등 현존하는 종교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종교 및 토속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종교 및 신념을 행사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²²⁴ 이런 반종교 선전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6장에서 검토할 것임

²²⁵ ‘1981년의 종교나 신념에 관한 모든 종류의 불관용, 차별 철폐에 대한 유엔 선언’ 제 4 조는 “종교 및 여타 신념에 대한 불관용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26조 2항에서는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CPR 20 조에 대한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11호에 따르면 “차별, 적대감,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이나 민족, 인종,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존 관제 종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할 종교 협의회가 없는 종교 단체가 평양 이외의 지역에도 자신의 종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기존 헌법 조항을 준수할 것
 - 해외로부터 종교 서적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탄압과 처벌을 금지할 것
 - 개인이나 종교 단체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종교 단체가 청소년, 성인들에게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가 고등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해외 유학하고 인력이 부족한 부문에 외국의 성직자가 북한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세계인권선언과 북한이 가입국으로 있는 국제 인권 조약에 대한 조선어 번역본과 여타 정보들을 배포할 것
- 북한인권법 106 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1975년 헬싱키 최종 협정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것
 - 핵 문제에 대한 현재의 6자회담을 확대하여 인권, 인간 안보(human security) 등의 문제들도 별도로 논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 협상을 통해 인도주의 지원의 모니터링, 난민 재정착, 이산가족 재결합, 납북자, 그리고 종교 자유를 포함한 여타 절박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할 것
-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북한인권 특사는 2004년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북한 난민 지원, 새로운 인권, 민주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 외교 프로그램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것
- 중국 정부가 1) UNHCR 과 협력하여 탈북자들에게 최소한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고 2) UNHCR 이 중국 내 탈북자들을 제한 없이 면담할 수 있도록 하고 3) 중국이 가입한 1951년 난민 협약 및 1967년 난민 의정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촉구하여 북-중 양자 협정에 의해 송환되는 경제 이주자가 잠재적 난민신청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중국, 러시아, 몽고 및 동북아 지역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와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하고 재정착 절차를 지원하는데 정책적 중요성을 부여할 것
- 미국 및 여타 국가들에서 탈북자들이 재정착하는데 대한 기술적, 법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미 국무부, 국토 안보부 및 한국을 포함한 역내 우방들 사이의 협력을 가일층 증대시킬 것
- 중국 정부로 하여금 국제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좀 더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즉 아동, 성 매매와 강제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
-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과 협상할 때 종교 자유 및 다른 인권 문제를 포함하도록 격려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특별 보고관 및 여타 적절한 유엔 기구를 초청하여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고,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제대로 분배하는지 감시하며, 개혁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하도록 촉구할 것
- 합당한 유엔 기구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키는 등 국제 무대를 활용하여 북한의 인권 참상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인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추구할 것
-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라디오, TV, 인터넷, 출판물 등을 확대할 것
 - 자유아시아방송과 미국의 소리 방송이 대북 단파, 중파 방송 시간을 연장하여 매일 총합 12 시간을 방송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
 - 미국민주주의기금(NED), 미 국무부 인권민주주의 기금을 활용하여 글, 디지털 프로그램, DVD 등의 형태로 북한 내에 종교의 자유 등 인권 정보를 확산시킬 것

그 뿐 아니라 의회는 (a) 북한 인권법에서 책정한 예산을 민간 외교, 난민 지원, 민주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할당하고, (b) 북한 인권과 난민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의회 내 협의체를 만들며 한반도의 안보 협상에 대한 헬싱키 협정식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c) 2004 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에게 북한이 약속한 대로 미 의회 대표단의 북한 수용소 시설에 대한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부록 1

국제 인권 기준: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국제 조약 발취

이 문서는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 보호 국제 기준에 관한 정보 및 국제 기구의 관련 조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A: 만인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신앙교육, 의식, 예배에 있어서 단독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ICCPR) 18 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종교나 신념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신앙교육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종교나 신념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강제로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수행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ICCPR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조약기구인 유엔 인권상설위원회(HRC)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ICCPR 18 조는:**

유신(有神), 비신(非神), 무신(無神)론적 신념과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 ‘신념’, ‘종교’라는 개념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18 조 적용은 전통적인 종교나 전통적인 종교와 유사한 특징이나 의식을 가진 종교와 신념에

국한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사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신흥 종교, 또는 기성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적대의 대상일 수 있는 소수 종교를 포함하여 어떤 종교나 신념을 차별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가진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General Comment) 22 호

- **1981년 종교나 신념에 관한 모든 종류의 불관용, 차별 철폐에 대한 유엔 선언 (1981년 12월) 1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나 신념을 스스로 선택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신앙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질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종교나 신념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 **1951년 난민 지위 관련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제 4 조(1951): **종교**: 체약국은 그 영역 내의 난민에게 그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 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제 33 조(1951):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자신의 종교 및 신념을 바꿀 자유[세계인권선언 18 조]**

2. **종교 및 신념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지거나 채택할 자유[ICCPR 18 조 1 항]**

- 반드시 자신의 현재 종교나 신념을 다른 것으로 바꿀 자유 또는 무신론을 받아들일 자유 또는 자신의 기존 종교나 신념을 유지할 자유를 수반한다.
- 이 자유에는 어떤 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 어떤 개인도 강제로 자신의 사상 또는 종교, 신념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paras. 3, 5)

3. 종교나 신념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 [ICCPR 18 조 2 항, UN 1981 년 선언 1 조 2 항]

- 이 자유에는 어떤 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 비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중에 허용할 수 없는 경우는
 - (a) 물리력 위협이나 형사 제재 방법을 사용하여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을 특정 신념을 받아들이게 강제하거나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취소하거나 전향하게 할 경우, 그리고
 - (b) ICCPR 의 25 조 이하에서 보호되는 권리나 교육, 의료, 고용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의도 또는 효력을 가져오는 정책이나 관행을 포함한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para. 5)

4. 예배, 의식, 행사 및 신앙교육에 있어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
-[유엔인권선언 18 조., ICCPR 18 조 1 항, UN 1981 선언 1 조]

- 이러한 자유는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행사될 수 있다.
- 이 자유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유가 포함된다.
 - (a) 종교 및 신념과 연계된 의식 또는 회합을 하고 의식을 행할 건물을 포함하여 이런 목적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장소를 마련하고 유지할 자유
 - (b) 적절한 자선 또는 인도주의 기관, 신학교, 종교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할 자유
 - (c) 종교 상징, 규정된 음식, 적절한 의복, 모자 착용, 특정 연령 단계와 연관된 의식, 특정 언어 사용 등 종교, 신념에 관한 의식 또는 관습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물품과 장비를 만들고, 획득하고 사용할 자유
 - (d) 이 분야 관련 출판물을 저술, 발행, 배포할 자유
 - (e)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장소에서 가르칠 자유
 - (f)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금전적 및 여타 지원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유
 - (g) 어떤 종교나 신념의 필요와 규정에 따라 요청되는 적절한 지도자, 성직자, 교사를 조직, 훈련, 임명, 선거, 승계에 의한 지명,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자유
 - (h) 안식 기간을 준수하고 특정 종교, 신념의 계율에 따른 휴일이나 의식을 경축할 수 있는 자유
 - (i) 국가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종교와 신념 문제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들 간에 의사 소통 채널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자유.²²⁶

²²⁶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6 조 Para. 4, UN 1981 Dec. 6 조 참조

5.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한 허용 가능한 제한

[ICCPR 18 조 3 항, UN1981 선언 1 조 3 항]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훼손²²⁷ 될 수 없다. (ICCPR, 4 조 2 항, 세계인권선언 29, 30 조)
-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에 의해야만 하고 18 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 18 조 3 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비록 다른 종류의 권리에는 가능한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18 조 3 항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가령,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명시된 목적 하에서만 가능하고 구체적인 요구에 직접적으로 부합해야만 한다.
- 자유에 대한 제한은 차별적인 목적이나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 도덕을 수호할 목적으로 종교 및 신념을 제한하는 것은 개별 전통이나 종교가 아닌 일반적 원칙들에 근거해야 한다.
- 죄수들처럼 적법한 제약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제약의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충분히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para. 8)
-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 30 조)

B. 종교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할 권리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ICCPR, 27 조,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 1,2, 4 조]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²²⁷ 권리의 훼손은 제한과는 차이가 있다. ICCPR 아래에서, 전쟁이나 심각한 공식 비상사태의 경우 국가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 특정권리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경우에는 허용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뛰어 넘어서 집행될 수 있다.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ICCPR, 27 조

- 국가는 자신의 개별 영토 안에서 민족, 인종, 문화, 종교, 언어 소수 집단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홍보할 조건을 구비하며 이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법적 및 여타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유엔 소수자 권리에 대한 선언

C. 만인은 법이나 신념에 대한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ICCPR 2 조 1 항, 26 조]

이 권리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ICCPR)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ICCPR 2 조 1 항)

2.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ICCPR, 26 조]

3.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종교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ICCPR, 26 조]

- ICCPR 26 조에 포함된 비차별 원칙은 ICCPR 에 명시된 권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법에 의한 차별을 금하는 즉 사실상 공공 기관에 의해 보호되고 규제되는 그 어떤 분야에도 모두 적용된다.
- ICCPR 에서 사용되는 ‘차별’이란 용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동등한 조건에서 인지, 향유, 행사하는 것을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킬 목적으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견, 국적,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신분에 기초한 구별, 배제, 제한, 편애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 동등한 조건 하에서 권리와 자유의 향유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똑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평등의 원칙은 때로 ICCPR 에서 금하고 있는 차별이 지속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가 차별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러한 대우의 차이가 합당하고 객관적이며 그 목적이 ICCPR 아래서 정당한 취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대우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18 호 (paras. 7, 8, 10, 12, 13)

4. 종교 및 여타 신념을 근거로 국가, 기관, 조직,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한 보호

[UN 1981 선언, 2 조 1 항과 4 조]

- 국가는 시민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의 인간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인정, 행사, 향유하는 데에서 종교나 신념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가는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입안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국가는 종교 및 여타 신념에 대한 불관용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UN 1981 선언, 4 조 1 항, 4 조 2 항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 세계인권선언 26 조 2 항

D.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ICCPR, 20 조]

- 종교나 신념의 표명이 차별, 적대감 폭력을 부추기는 전쟁에 대한 선동이나 민족, 인종,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para.7)
- 국가는 ICCPR 20 조에 포함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러한 어떤 선전이나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11 호 (para. 2)
- ICCPR 20 조는 미국이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어떤 입법이나 조치를 취할 것을 인가 또는 요청하지 않는다.
 - ICCPR 20 조에 대한 미국의 유보 조치

E.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부모들의 권리

[ICCPR 18 조 4 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수행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ICCPR 18 조 4 항

- 부모나 보호자가 종교, 도덕 교육을 수행할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 종교와 윤리의 통사(通史)와 같은 주제의 공공 교육 강의는 그것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 공공 교육에서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강의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희망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 조치나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으면 ICCPR 의 18 조 4 항에 어긋난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22 조 (paras. 6 & 8)

-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자신들의 종교나 신념에 따라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가 있다.
- 아이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교육의 지도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종교 및 신념 교육을 받고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희망에 반하여 강제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아이들은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어떤 형태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 아이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교육의 지도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함께 있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종교나 신념의 문제에 대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명시적 희망이나 그런 희망의 근거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아이가 자라날 때 받는 종교 및 신념 관련 의식들이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충분한 발육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고 1981 년 유엔선언의 1 조 3 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UN 1981 선언 , 5 조

F. 일부 조항에 대한 부가 상술

1. 권리 보장/ 침해 구제책 제공에 대한 의무

[ICCPR 2 조 2 항, 3 항, 세계인권선언 8 조, UN 1981 선언 7 조]

이 규약(ICCPR)의 각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한다.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 받은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확보할 것
- 그러한 구제조치는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의하여 결정될 것
-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

2. 종교와 국가의 관계

- 종교가 국가 종교, 공식 또는 전통적 종교이거나 인구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라고 하더라도 ICCPR 상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어떤 침해를 가져와서도 안 되고 다른 종교나 비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 특히 지배적 종교 구성원들에게 정부 서비스 자격을 제한하거나 또는 특혜를 주거나 다른 종교 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가하는 것들은 ICCPR 26 조 하의 동등 보호 보장과 종교, 신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일단의 신념 체계가 헌법, 법률, 집권당의 강령 또는 실제 집행 과정 상의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더라도 ICCPR 의 18 조 또는 다른 권리 상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 공식 이데올로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유엔 인권상설위원회 총평 22 호 (para. 9)

3. 종교 공동체 및 조직의 등록 및 인정

[paras 56, 58, 유엔인권위, 종교적 불관용 문제를 포함한 시민, 정치적 권리-종교 및 신념의 자유 특별 보고관 Asma Jahangir 가 제출한 보고서 E/CN.4/2005/61, 2004 년 12 월 20 일]

56. 특별보고관은 종교 등록은 종종 특정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8. 종교 등록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점은
 - 종교 등록은 의무 사항, 즉 어떤 사람의 종교 행위를 하는 전제 조건이어서는 안되며, 다만 개인의 법적 신분을 획득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혜택을 받는 목적 하에서만 인정된다는 것
 - 후자의 목적일 경우, 종교 등록은 간편하고 신속해야 하며 종교 구성원의 구체적인 숫자나 그 종교가 지속되었던 시기 기록 등과 같은 필수 기재 요건들이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는 점
 - 종교 등록은 그 종교의 내용, 조직, 성직자 등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 어떤 특정 종교 그룹이 다른 종교 그룹의 등록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다.

부록 2

북한 공식 문헌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발췌)²²⁸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 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 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 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번영과 주체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 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²²⁸ 이 발췌문은 1998년 9월 5일 제 10차 인민 대의원 대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인민조선(The People’s Korea)” 참조 (<http://www.korea-np.co.jp/pk>), 2005년 11월 10일 접속함.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적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빨럭 불가담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사상 리론과 령도 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룡성 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제 1 장 정치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1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 3 장 문화

제 4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제 4 2 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 6 7 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 6 8 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 8 1 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2)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 대 원칙²²⁹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 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며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1)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세우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보위하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5) 전 세계에서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 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여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2) 한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 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며 수령님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도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 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²²⁹ 유일사상체계 10 대 원칙 영문은 Joanna Hosaniak의 *그들 나라의 죄수들: 증언자의 눈으로 본 북한 (Prisoners Of Their Own Country: North Korea in the Eyes of the Witnesses)*, 북한인권시민연합 발간, 2005년 서울, pp. 58-64 에서 발췌. 10 대 원칙은 1974년 발표되었으며 김정일의 후계자 승계 시기와 일치한다. 이 10 대 원칙이 북한의 왕조 승계를 확립한 것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옹호하며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며 현대 수정주의와 온갖 원수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을 견결히 보위하여야 한다.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 사건화하여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 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 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 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 력사와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당의 유일 사상 교양의 거점인 ‘김일성 동지 혁명 사적관’과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 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을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 같은 신조로 삼아야 한다.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료하여 모든 것을 재어 보며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들과 교시들,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 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 체득하여야 한다.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 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여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율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침투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전달 침투하여야 하며 왜곡 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7)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린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수령님의 교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 보고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에는 즉시 문제를 세우고 투쟁하여야 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발언 내용을 ‘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 정책에 대하여 시비 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동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화 묵과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 사상, 봉건 유일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 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수령님의 혁명 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 요구이며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려를 덜어 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수령님께서 결론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집권제 원칙에 따라 자그마한 트팀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 정책을 접수하면 곧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 정치 사업을 짜고 들며 속도전을 벌여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 대장을 만들어 놓고 교시 집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 없이 심화시켜 교시를 중도 반단 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 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 2)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대렬의 사상 의지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여 수령님께 불성실하고 당의 유일 사상 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야 한다.
- 4) 개별적 간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 아첨하며 개별적 간부들을 우상화하거나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간부들이 선물을 주고 받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 5) 당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고 쪼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 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품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 품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따라 배우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수령님의 혁명 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 1) 당의 노동 계급과 인민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 노동 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 2)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 정신과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로 억세계 싸워 나가야 한다.
- 3)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격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고 간지게 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 4)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여 나가야 한다.
- 5) 혁명적 군중 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여야 한다.

- 6) 이신작칙의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언제나 앞장서야 한다.
- 7)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검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 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 주신 정치적 생명을 지닌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수령님의 정치적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 1) 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
- 2) 혁명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3) 조직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 4) 조직의 결정과 위임 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5) 2일 및 주 조직 생활 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을 자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 검토 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 투쟁을 벌이고 사상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
- 6) 혁명 과업 수행에 투신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혁명적 실천 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 7)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 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높은 지적 열성을 발휘하며 정치 이론 수준과 기술 실무 수준을 높여 언제나 수령님께서 맡겨 주신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 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과 전투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근본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 2)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 체계의 의거하여 조직 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 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 3)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국가, 경제 기관 및 근로 단체 일군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 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해 나가야 한다.
-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여기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
- 5) 개별적 간부들이 아래 단위의 당, 정권 기간 및 근로 단체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자의대로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 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 붙이며 당 중앙의 승인 없이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일체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6) 개별적 간부들이 월권 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람용하는 것과 같은 온갖 비 원칙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 척도로 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 관계와 같은 정실, 안면 관계에 의하여 간부 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별적 간부들이 제멋대로 간부들을 떼고 등용하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며 간부 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적 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8) 당, 국가 및 군사 기밀을 엄격히 지키며 비밀을 누설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 9) 당의 유일 사상 체계와 당의 유일적 지도 체계에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율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제때에 당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 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 지도 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 1)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 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 밑에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 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 혁명 투쟁 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 발전시키며 혁명 전통을 혈뜬거나

말살하려는 반당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 자그마한 표현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3)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 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 4)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께 충성 다하며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당 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 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한다.

부록 3

연구 자료

1) 연구 방법론

본 연구를 위해 데이비드 호크가 준비하고 종교자유위원회가 검토한 설문지를 기초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40 명을 인터뷰했다. 한국어로 진행된 인터뷰는 포항 한동대학교 국제법률 대학원 원재천 교수와 서울 아신대학교 김병로 교수의 지도 하에 법학, 사회학, 북한학 대학원생들이 맡았다. 인터뷰는 2004 년 11 월에서 2005 년 4 월까지 이루어졌다. 개별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대개 수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5 명의 인터뷰는 데이비드 호크 자신이 진행했다.

완성된 인터뷰는 영어로 번역되어 데이비드 호크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인터뷰 응답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영어 인터뷰 기록은 번역의 실수나 오역이 없도록 원재천 교수, 김병로 교수가 꼼꼼히 검토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질문에 응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실 자체가 반역 행위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자신의 서울 거주가 알려져 북에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인터뷰 응답자들은 숫자로 명명했다. 하지만 종교자유위원회는 탈북자들의 이름을 보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익명을 전제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의 답변은 참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먼저 20 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한 뒤 그 내용이 면밀히 검토, 평가되었다. 그리고 난 뒤 추가 20 명의 탈북자를 더 인터뷰했다. 추가 20 명을 인터뷰한 뒤 인터뷰 응답의 명확한 패턴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이 인터뷰는 통계적 임의성이 보장된 조사는 아니다.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종합 명부는 확보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한 탈북자들 중 일부는 한국에 있는 인권 단체들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어떤 탈북자들과 인터뷰는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올 때까지 지원을 했던 단체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탈북자 조직을 통해 인터뷰가 마련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뷰는 이루어졌고 특정 탈북자들만을 선별하지는 않았다.

한국에 있는 전체 탈북자들처럼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1990 년대 중반에 식량난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북한의 동북지역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주로 중국 국경을 통해 넘어 왔다. 중국 국경을 통하는 것이 탈북하기 제일 쉽기 때문이다.

탈북자들 응답의 대부분은 3장에 실려 있다. 북한의 종교 ‘협의회들’과 평양에만 제한된 종교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종교인들을 만나본 한국, 유럽, 미국의 불교, 기독교, 천도교 관계자들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탈북자들처럼 이들도 대부분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2) 주요 저자들의 약력

데이비드 호크 씨는 저명한 인권 조사관이자 운동가이다. 그는 1996 년에서 1997 년까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캄보디아 사무소 책임자로 근무했다. 1980 년대 초, 중반에는 콜롬비아 대학 인권연구센터와 함께 크메르 루즈의 인종 학살 문제를 조사했다. 1980 년대 후반과 1990 년대 초반에 그는 뉴욕에 캄보디아 자료 위원회를 설립하여 크메르 루즈 지도부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과 캄보디아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 1991 년 캄보디아 평화 조약의 인권 조항과 절차를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

1994 년 가을 미국난민위원회 위촉을 받고 르완다에 가서 대학살을 조사했다. 그리고 1995 년에 국제사면위원회 활동을 위해 키갈리를 방문했다. 그는 미국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사를 역임했고 휴먼 라이츠 와치 아시아 지부 자문위원회 활동도 했다. 2003 년 그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춰진 수용소-수감자 증언과 위성 사진」을 발표했다.

원재천 교수는 포항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및 형사절차법, 그리고 국제인권법을 가르치고 있다. 원교수는 버지니아 주립대(Virginia Tech.)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한 후, 브루클린 사법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뉴욕주 브루클린 검찰청(King’s County) 검사를 역임했다.

김병로 교수는 경기도에 위치한 아신대학교의 북한학 조교수이며 북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Indiana State Univ.)에서 사회학 석사를, 럿거스대학(Rutgers Univ.)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93 년부터 2003 년까지 통일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2002-2003 년)으로 근무했으며, 북한 평양을 네 번 방문한 바 있다.

부록 4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대해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안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 활동은 국제종교자유법안과 국제 인권 관련 선언 및 조약에 의거하여 사상,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감시하고 대통령, 국무부 장관, 의회에 정책 권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위원회는 전 세계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안에 설립된 것으로는 최초의 조직이다. 위원회의 활동은 해외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성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신뢰할만한 정보와 분석, 그리고 면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본 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세계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1995년 5월에 출범한 본 위원회는 국무부 내부 부서는 아니고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세 명은 상원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중 둘은 상원의 소수당 대표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나머지 세 사람은 하원 의장이 임명하고 그 중 둘은 하원 소수당 대표가 추천한다. 이 임명 절차에 의하면 집권당에서 5명을 임명하고 야당에서 4명을 뽑는 것이 된다. 국무부 내의 국제종교자유를 위한 전권 대사는 투표권 없는 직권 위원이 된다.

본 위원회는 외교 업무, 인권, 종교 자유, 국제법에 관해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 위원회 회원 구성은 미국 사회 종교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미국 국무부의 ‘인권 현실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반영한다. 본 위원회는 미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 미국 해외 공관, 외국 정부, 종교 단체, 인권 단체, NGO,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을 위해 컨설팅 업무도 한다. 종교 자유에 대한 일차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청문회와 브리핑, 원탁 토론회도 개최한다.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 권고 내용을 상의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를 포함한 행정부 장관들과 만나 협의한다. 위원회는 상, 하원 의원, 해외 미국 대사, 국제 기구 관리들에게 설명회를 갖기도 한다. 또 의회 증언에도 참석하며 국제 회의 등 모임에 미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한다. 미국 외교관과 미국 정부 관리들을 교육 시키고 행정, 입법 업무에 대해 행정부, 의회에 정책 조언을 한다.

본 위원회는 대중 강연회, 기자 회견, 원탁 토론회 및 브리핑, 출판, 웹 사이트, 여타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정책 권고를 외부에 알린다. 본 보고서는 몇몇 언론만 거명하자면 *Christian Science Monito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iami Herald*, *Los Angeles Times*,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Washington Times*, National Public Radio, PBS 와 여러 통신사들에 의해 홍보 되었다.

위원들의 거주 지역은 미국 전역에 걸쳐 있다. 위원회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대중 강연회, 모임 등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한다. 위원회 활동은 일년 내내 이루어지지만 위원회의 정책 권고 연례 보고서는 매년 5월 대통령, 국무 장관, 의회에 보고된다.